

발 간 등 록 번 호

11-1192000-001660-14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2022. 6.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2022. 6.



< 일러두기 >

- 본 관리계획(도면포함)에 표기된 해양공간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역의 해양용도구역 등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 해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관리계획의 도면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행정구역의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의 참고자료로 주장·활용할 수 없고, 어업권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 등 「해양공간계획법」의 소관사항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목 차 ...

- 제1장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3**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 2. 목적 및 성격 4
 - 1) 계획의 목적 4
 - 2) 계획의 성격 4
 - 3. 범위 5
 - 1) 시간적 범위 5
 - 2) 내용적 범위 5
 - 3) 공간적 범위 6
 - 4. 수립 절차 7
 - 5. 추진 경과 9

- 제2장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 방향 13**
 - 1. 환경적·생태적 특성 13
 - 1) 조석 및 조류 13
 - 2) 해안선 13
 - 3) 유·무인도서 14
 - 4) 연안습지 15
 - 5) 연안·해양보호구역 15
 - 6) 해양생태계 현황 17
 - 7) 해양수질 현황 19
 -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21
 - 1) 인구 21
 - 2) 사업체수 22
 - 3) 수산 24
 - 4) 광업권 27
 - 5) 해양관광 28
 - 6) 항만·항행 31
 - 7) 군사활동 37

8) 공유수면 점·사용	37
9) 안전관리	39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42
1) 분석 개요	42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45
4. 해양공간관리 현안	60
1) 일반주민 설문조사	60
2) 해양공간관리 현안	64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65
제3장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71
1. 해양공간특성평가	71
1)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71
2) 기초자료 조사·수집	72
3) 평가항목	74
4)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76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82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97
1) 어업활동보호구역	98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03
3) 해양관광구역	106
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09
5) 연구·교육보전구역	112
6) 항만·항행구역	114
7) 군사활동구역	117
8) 안전관리구역	118
9) 에너지개발구역	120
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25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125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27
1) 전북 시·군 사전설명회	127
2) 전북 시·군 설명회	128
3) 제1차 전북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129
4) 제2차 전북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129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130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130
2) 해양공간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132
부 록	135
1. 전북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수요	137
2. 전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141
3.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153
4. 전북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54
5. 공청회 결과	162
6. 관계기관 협의결과	163
7. 전북 지역위원회 운영 결과	170
8.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결과	171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설명서	173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도	181

표 목 차

〈표 2-1〉 전라북도 해안선 길이(2021년)	13
〈표 2-2〉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 현황	14
〈표 2-3〉 전라북도 절대보전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	15
〈표 2-4〉 전라북도 연안습지 면적 변화	15
〈표 2-5〉 전라북도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16
〈표 2-6〉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현황	16
〈표 2-7〉 전라북도 특정도서 지정 현황	16
〈표 2-8〉 전북 해역의 수질환경 현황(1999-2019년 평균)	20
〈표 2-9〉 전북 인구 현황	21
〈표 2-10〉 전북 사업체 현황	23
〈표 2-11〉 전국 및 전북 어업생산량 비교	24
〈표 2-12〉 전국 및 전북 어업생산량 비교	25
〈표 2-13〉 전북 면허어업 현황	26
〈표 2-14〉 전북 어항 현황	27
〈표 2-15〉 전북 광업권 설정 현황	27
〈표 2-16〉 전북 해수욕장 및 방문객 현황	28
〈표 2-17〉 전북 연안·해양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29
〈표 2-18〉 전북 마리나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30
〈표 2-19〉 전북 어촌체험마을 현황	30
〈표 2-20〉 전북 유어장(체험어장) 현황	31
〈표 2-21〉 군산항 현황	32
〈표 2-22〉 새만금신항 개요	34
〈표 2-23〉 상왕등도항 현황	34
〈표 2-24〉 전북 연안여객선 항로별 취항 선박현황	36
〈표 2-25〉 유형별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38
〈표 2-26〉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39
〈표 2-27〉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40
〈표 2-28〉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40
〈표 2-29〉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42
〈표 2-30〉 전북 연안·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특성 분석(해양용도구역별)	43
〈표 2-31〉 전북 연안용도해역(안) 및 기능구(안) 지정 현황	45
〈표 2-32〉 전북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50

〈표 2-33〉 군산항 개발 수요	51
〈표 2-34〉 새만금 신항 개발 수요	52
〈표 2-35〉 상왕등도항 개발 수요	52
〈표 2-36〉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항만	52
〈표 2-37〉 국가어항 신규 개발	53
〈표 2-38〉 어청도항 국가어항 개발 계획	54
〈표 2-39〉 관광개발계획	55
〈표 2-40〉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55
〈표 2-41〉 갯벌 복원 대상지 상세 현황	59
〈표 2-42〉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62
〈표 3-1〉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72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74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84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85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89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89
〈표 3-7〉 항만·항행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90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92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93
〈표 3-10〉 해양관광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94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94
〈표 3-12〉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01
〈표 3-13〉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05
〈표 3-14〉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09
〈표 3-1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12
〈표 3-16〉 전북 항만구역 내 양식장 현황	115
〈표 3-17〉 항만·항행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17
〈표 4-1〉 전북 지역협의회 1차 구성(안)	127
〈표 4-2〉 전북 지역협의회 2차 구성(안)	127
〈표 4-3〉 전북 시·군 사전설명회 주요내용	127
〈표 4-4〉 전북 시·군 설명회 주요내용	128
〈표 4-5〉 제1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129
〈표 4-6〉 제2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130
〈표 4-7〉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133
〈표 4-8〉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134

〈부록표 1-1〉 전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1	138
〈부록표 1-2〉 전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2	138
〈부록표 1-3〉 전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140

그림 목 차

<그림 1-1>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범위 6

<그림 1-2> 관리계획(안)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7

<그림 2-1> 선유도 흰발농게 서식 현황 19

<그림 2-2> 전북 인구 현황 및 변화 22

<그림 2-3> 전북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어업생산량 변화 25

<그림 2-4> 군산항 계획평면도 33

<그림 2-5> 상왕등도항 계획평면도 35

<그림 2-6> 전북 연안여객선 항로 현황 36

<그림 2-7> 전북 해역 해상사격 훈련구역 현황 37

<그림 2-8>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39

<그림 2-9> 전북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위치(북측) 44

<그림 2-10> 전북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위치(남측) 44

<그림 2-11> 전북 연안용도해역(안) 현황 46

<그림 2-12> 전북 연안용도해역(안) 현황(계속) 47

<그림 2-13> 전북 연안해역기능구(안) 현황 48

<그림 2-14> 전북 연안해역기능구(안) 현황(계속) 49

<그림 2-15> 전북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51

<그림 2-16> 개야도항 개발 계획 평면도 53

<그림 2-17> 전북 연안 관광거점 및 개발방향 54

<그림 2-18>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풍황자원 측정위치 56

<그림 2-19>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개요 57

<그림 2-20> 전북 연안 국가지질공원 현황 58

<그림 2-21> 주민 거주만족도 및 바다 이용현황 60

<그림 2-22> 바다 고유 자원의 유형 및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 61

<그림 2-23> 응답자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61

<그림 2-24>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62

<그림 2-25> 향후 전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 AHP 63

<그림 2-26> 전북 바다 향후 지향 발전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현안 63

<그림 2-27>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65


<그림 3-1> 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71

〈그림 3-2〉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76
〈그림 3-3〉 일반격자(연안:1.5'×1.5', 영해내측: 3'×3', 영해외측: 15'×15')만 적용한 격자 구성	76
〈그림 3-4〉 전북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77
〈그림 3-5〉 전북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78
〈그림 3-6〉 전북 에너지개발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78
〈그림 3-7〉 전북 연구·교육보전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79
〈그림 3-8〉 전북 군사활동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79
〈그림 3-9〉 전북 항만·항행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0
〈그림 3-10〉 전북 환경·생태계관리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0
〈그림 3-11〉 전북 안전관리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1
〈그림 3-12〉 전북 해양관광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1
〈그림 3-13〉 해양용도구역 지정 목적	82
〈그림 3-14〉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88
〈그림 3-15〉 용도구역별 1:1 공간분석을 통한 중첩공간	95
〈그림 3-16〉 용도구역별 관리구역 도출 결과	96
〈그림 3-17〉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어종별 공간 분포 현황	100
〈그림 3-18〉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101
〈그림 3-19〉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04
〈그림 3-20〉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105
〈그림 3-21〉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109
〈그림 3-22〉 환경·생태관리구역	110
〈그림 3-23〉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112
〈그림 3-24〉 연구·교육보전구역	113
〈그림 3-25〉 항만·항행구역	115
〈그림 3-26〉 항만·항행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117
〈그림 3-27〉 군사활동구역	118
〈그림 3-28〉 안전관리구역	119
〈그림 3-29〉 에너지개발구역	121
〈그림 4-1〉 전북 시·군 설명회 회의장면	128
〈그림 4-2〉 제1차 전북 지역협의회 회의장면(대면협의)	129
〈그림 4-3〉 제2차 전북 지역협의회 회의장면	130



제1장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및 성격
 3. 범위
 4. 수립 절차
 5. 추진 경과
- 

제1장 /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양 이용개발의 다양화, 부처별 해양공간 선점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해양생태계 가치 저하 및 이용-보전 간, 이용 간 갈등 심화
 - 해양자원은 공유재로 비합리적 입지선정은 타 분야 활용 가능성 훼손
 - 바다골재 채취와 어민과 갈등, 선박 통행과 양식해양에너지 단지조성으로 어장 축소, 양식어장과 선박 운항 간 갈등, 어로활동과 해양레저 활동 간 충돌 등 해양공간 이용의 갈등 광범위
- 해양생태계의 가치,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핵심용도와 관리 방향을 사전 설정하는 실효적 계획체제 도입 필요
 - '17년 EU 해양수산국과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Marine Spatial Planning(이하 "MSP")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MSP 목표(전 세계 해양의 1/3, 2025년까지 MSP를 통해 관리)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 우리나라도 '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계획체제를 도입·시행
- 「해양공간계획법」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공간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토록 명시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관리함
 - 해양수산부장관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시·도지사 : 그 외 해양공간(영해 내)
 - 다만,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5조)

-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용도구역제 등 해양공간의 객관적 평가 수단 도입 및 적용 필요
 - 해양용도구역제 도입으로 해양공간의 용도를 미리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핵심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보호
 -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목적 및 성격

1) 계획의 목적

- 해양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개발·보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 해역의 특성과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현재 활동 및 미래 수요에 맞는 계획의 수립
-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민·관·산·학·연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참여의 장 마련

2) 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 및 이용·개발하기 위한 법정계획임.

□ 실천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용도 구역을 결정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실천계획임.

□ 협력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민·관·산·학·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협력계획임.

3. 범위

1)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적용: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수시 변경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여건 변화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
 - 향후 발생하는 해양공간에 대한 보전 및 이용·개발에 대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
 - * 「해양공간계획법」제7조제7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2) 내용적 범위

-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이하, 대상 해양공간)
-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3항
 -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3) 공간적 범위

○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5,265.36km²

* 면적은 관할해역 주장 범위(현재 판결, 관습적 경계, 연안관리지역계획 범위 등)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해역이 포함되는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도면)과는 다를 수 있음.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74.79km²)
- 전라북도 : 영해 중 항만구역 제외 해양공간(5,090.57km²)

〈그림 1-1〉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범위



4. 수립 절차

□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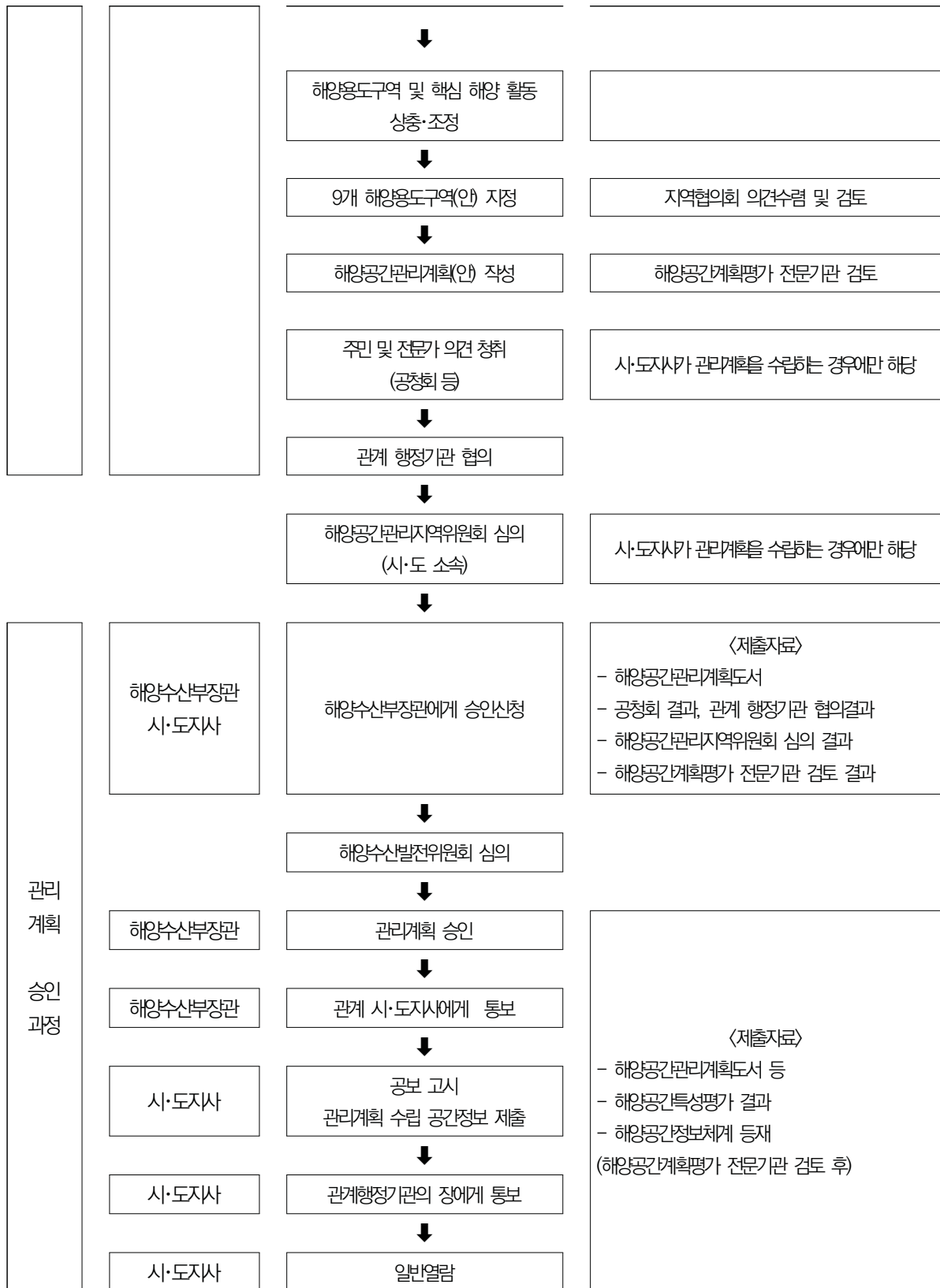
-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안) 마련
- 관리계획(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

□ 관리계획의 승인 과정

- 이후 관리계획(안)은 시·도지사 소속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신청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승인

〈그림 1-2〉 관리계획(안)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구분	주체	세부 절차	비고
관리 계획 (안) 작성 과정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사전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 작성팀 구성과 작업 일정
		↓	
		이해관계자 분석 참여·협력 기반 마련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설정
		↓	
		대상 해양공간 범위 설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기존 현황 분석</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미래 수요 분석</div> </div>	해양공간관리 현안 확인 핵심활동 분석 및 지도화 중요 생태지역 분석 및 지도화 향후계획 및 정책수요 분석		
↓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가 검토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및 검토		
↓			
해양용도구역 구획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64호)


5. 추진 경과

-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착수 : '20. 3월
- 전북도 시·군 사전설명회 : '20. 6월
- 지자체 설명 및 의견수렴 : '20. 9월, 10월 (2회)
- 공간계획 초안 마련 : '20. 10월
- 전북 시·군 의견수렴 : '20. 11월, 12월 (2회)
- 전북 시·군 설명회 : '21. 6월
-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개최 및 의견수렴 : '21. 7월, 9월 (2회)
-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공청회 개최 : '21.11.22.
- 관계기관 협의 : '21.11.15.~12.15.
- 전북 지역위원회 심의 : '22.5.2.~5.6.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확정 : '22.6월



제2장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 방향

1. 환경적·생태적 특성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4. 해양공간관리 현안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 

제2장 /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 방향



1. 환경적·생태적 특성

1) 조석 및 조류

- 전북 해안은 반도와 만이 연속해서 분포하여 해안선이 복잡함.
 - 새만금 방조제가 군산시와 부안군을 연결하고 있으며, 방조제 가운데 고군산군도가 존재함.
 - 대륙붕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심 분포는 서쪽으로 갈수록 깊어짐.
- 조석은 남해와 동해보다 크고, 아산만을 중심으로 가장 큰 조차가 나타남
 - 조석 특성은 반일주조형으로 통상적으로 1일 2회조이고 일조부등은 매우 작음.
- 조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한 조류가 발생하며, 일부 해역에서는 유속이 약하며 복잡하게 나타남.
 - 창조류(밀물)는 대체로 북향하며 낙조류(썰물)는 남향함(해양수산부, 2019).

2) 해안선

- 전북의 해안선 길이는 총 548.58km이며, 전국 해안선 길이의 3.6%를 차지
 - 연안 시·군별로 군산시(277.7km), 부안군(178.0km), 고창군(82.0km), 김제시(10.9km) 순

〈표 2-1〉 전라북도 해안선 길이(2021년)

(단위 : km, %)

구분	총 해안선 길이		자연 해안선		인공 해안선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전국	15,281.68	100.0	9,821.77	64.3	5,459.91	35.7
전라북도	548.58	100.0	328.65	59.9	219.93	40.1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21년 해안선 통계 공표 자료

- 인공해안선 비율이 40.1%로 전국 평균(35.7%)보다 다소 높으며, 자연해안선 비율은 59.9%로 전국 평균(64.3%)에 비해 낮음
- 전라북도 인공해안선의 길이는 총 219.93km로 전체 해안선 길이의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35.7%)보다 높은 인공화 경향을 보임

3) 유·무인도서

- 유·무인도서는 총 73개소로, 유인도서는 25개소,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는 48개소가 존재
 - 유인도서는 전체 도서의 34.2%를 차지하며, 군산시 16개소, 부안군 7개소, 고창군 2개소가 분포¹⁾
 -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는 전체 도서의 65.8%를 차지하며, 군산시 33개소, 부안군 13개소, 고창군 2개소가 존재²⁾
 - 절대·준보전 유형이 6개소로 12.5%, 이용·개발가능 유형은 42개소로 87.5%를 차지
 -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 중 면적을 기준으로 절대·준보전 유형이 178,758㎡로 13.3%, 이용·개발가능 유형은 1,163,131㎡로 86.7%를 차지
 -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군산시 3개소, 고창군 1개소 존재하며, 총면적은 165,596㎡

〈표 2-2〉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 현황

구분	개소	비율(%)	면적(m ²)*	비율(%)
절대보전	4	8.3	165,596	12.3
준보전	2	4.2	13,162	1.0
이용가능	36	75.0	827,887	61.7
개발가능	6	12.5	335,244	25.0
총계	48	100.0	1,341,889	100.0

* 일부 면적 통계가 미 제시된 무인도서가 존재
 자료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2021.7.31 기준)

1) 행정안전부, 유인도서 현황(2018.12.31 기준)
 2)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2021.7.31 기준)

〈표 2-3〉 전라북도 절대보전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

행정구역	도서명	소재지	면적(㎡)	관리유형
고창군	쌍여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산1-1	12,298	절대보전
군산시	직도1(소피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78-2	14,650	절대보전
	직도2(피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78-3 외 3필지	103,738	절대보전
	흑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43	34,910	절대보전
	광대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50	68,406	개발가능
	사당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산80	39,939	개발가능
	소야미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산142 외 29필지	186,842	개발가능
	송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85	6,040	개발가능
	취도(취도)	군산시 옥도면 죽도리 산10	13,488	개발가능
	치두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산78	20,529	개발가능

자료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2021.7.31. 기준)

4) 연안습지

□ '18년 연안습지 면적은 총 110.5km²로 '08년에 비해 6.1% 감소

○ '18년 연안습지 면적은 '08년에 비하여 7.2km² 감소하여 총 110.5km²로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4〉 전라북도 연안습지 면적 변화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전국	2,489.4	100.0	2,487.2	100.0	2,482.0	100.0
전라북도	117.7	4.7	118.2	4.8	110.5	4.5

자료 : 해양수산부, 연안습지면적현황, 2018

5) 연안·해양보호구역

□ 습지보호지역 2개소, 국립공원 1개소 지정·관리

○ 전라북도에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은 부안출포만 갯벌, 고창 갯벌 2개소가 있으며,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전라북도 부안군 일원에 지정되어 있음

〈표 2-5〉 전라북도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구분	명칭	위치	지정년도	면적(km ²)
습지보호지역	부안줄포만 갯벌	부안군	2006	4.9
	고창 갯벌	고창군	2007	64.66
국립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	부안군	1988	총 153.9 (육상 136.71, 해면 17.23)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현황(2020. 2. 기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지정 현황(2020. 2. 기준)

□ 천연기념물 1개소, 명승 2개소 등 연안·해양에 총 3개소 분포

〈표 2-6〉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현황

명칭	구분	분류	지정일	관리자
군산 말도 습곡구조	천연기념물 제501호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지구과학기념물 / 지질지형	2009.06.09.	군산시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	명승 제13호	자연유산 / 명승 / 문화경관	2004.11.17.	부안군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명승 제113호	자연유산 / 명승 / 역사문화경관	2018.06.04.	군산시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 특정도서 16개소가 지정·관리 중이며 전국 특정도서의 6.4%가 전북 연안·해양에 분포

- 전라북도에 지정된 특정도서의 면적은 1.64km²로서 전국 특정도서 면적의 11.9%를 차지함
- 전라북도에 지정된 특정도서 16개소 중 9개소가 군산시에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7개소는 부안군에 해당

〈표 2-7〉 전라북도 특정도서 지정 현황

행정 구역	도서명	지정 사유	면적(m ²)	소재지	지정 차수
군산	보농도	• 풍화지형, 해식동, 해식에, 해식터널 발달	43,434	옥도면 말도리	3차
군산	소횡경도	• 해식애, 해식동, 풍화지형 발달	189,917	옥도면 말도리	3차
군산	횡경도	• 타포니, 해식애, 해식동, 기암괴석 발달	644,726	옥도면 말도리	3차

행정 구역	도서명	지정 사유	면적(㎡)	소재지	지정 차수
군산	십이동파도1	• 육상곤충류 높은 군집밀도 및 다양한 해조류 서식	85,260	옥도면 연도리	7차
군산	십이동파도2	• 조망점 등 지형·경관 우수	12,377	옥도면 연도리	7차
군산	십이동파도4	• 팽나무군락분포 및 다양한 해조류 생육	182,489	옥도면 연도리	7차
군산	십이동파도9	•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 분포	17,673	옥도면 연도리	7차
군산	십이동파도6	• 주상절리로 구성된 해식애와 박리 발달 등 지형경관이 우수	64,701	옥도면 연도리	16차
군산	석도 (누에도)	• 주상절리, 시스택, 식곡 등 지형경관	234,144	옥도면	17차
부안	내조도	• 해식노치, 타포니 발달	16,352	위도면 대리	3차
부안	달루도 (판달래섬)	•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 발달	21,322	위도면 진리	3차
부안	대형제도	• 해안선 복잡, 기암괴석	20,355	위도면 치도리	3차
부안	판정금도	• 해식애, 타포니, 해식동	6,545	위도면 정금리	3차
부안	외치도 (큰판치도)	• 파식대, 타포니, 풍화호	87,868	위도면 치도리	3차
부안	외조도	• 해안선이 다채롭고, 파식대, 해식애, 타포니 등 해안경관이 우수	12,788	위도면 대리	14차
부안	세향도	•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포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 풍부	2,181	위도면 정금리	14차

자료 : 환경부, 2021, 특정도서 지정현황

6) 해양생태계 현황

□ 해양생태계

- 우리나라 해역은 5개의 생태구역으로 구분가능하며, 서해안에는 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과 물범-상괘이 보전축이 존재³⁾
 - 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의 기능은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이동로 보전으로, 인천 강화에서 전남 광양까지 총 길이 671.1km
 - 부안줄포만 갯벌, 고창 갯벌이 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의 거점해역에 포함되며, 갯벌 생물다양성 유지 및 관리가 목표
 - 물범-상괘이 보전축의 기능은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이동로 보전으로, 인천 백령도에서 전남 신안까지 총 길이 486.9km

3) 해양환경공단, 2021, 2020년 국가 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생태총서(통합)

□ 해양생물다양성⁴⁾

- 전북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간대 및 조하대 저서동물 출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식물플랑크톤 출현종수는 춘계 9~20종, 하계 9~26종의 범위를 보이며, 개체수는 춘계 8~59cells/mL⁻¹, 하계 15~338cells/mL⁻¹의 범위를 보임
 - 서해 해역의 동물플랑크톤의 출현종수는 춘계 28종, 하계 30종으로, 전북 해역 동물 플랑크톤의 습중량은 18.8~232,59mg·wet·wt·m⁻³, 건중량은 13.5~30.29 mg·wet·wt·m⁻³의 범위를 보임
 - 중형 저서동물의 개체수는 춘계 46~5,195ind.·10cm⁻², 하계 110~4,556 ind.·10cm⁻²의 범위를 보임
 - 서해 해역의 대형 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춘계 440종, 하계 446종, 서식밀도는 춘계 1.631ind.·m⁻², 하계 1.691ind.·m⁻², 생체량은 춘계 50.9 g·m⁻², 하계 54.5g·m⁻²를 보임
- 중형 저서동물과 대형 저서동물의 종 다양성(H')⁵⁾은 다음과 같음
 - 전북 해역의 중형 저서동물의 종 다양성은 춘계 1.76~2.55, 하계 1.79~2.49의 범위를 보임
 - 서해해역의 대형 저서동물 종 다양성은 춘계 1.7~3.3, 하계 1.7~3.1의 범위를 보임

□ 해양보호생물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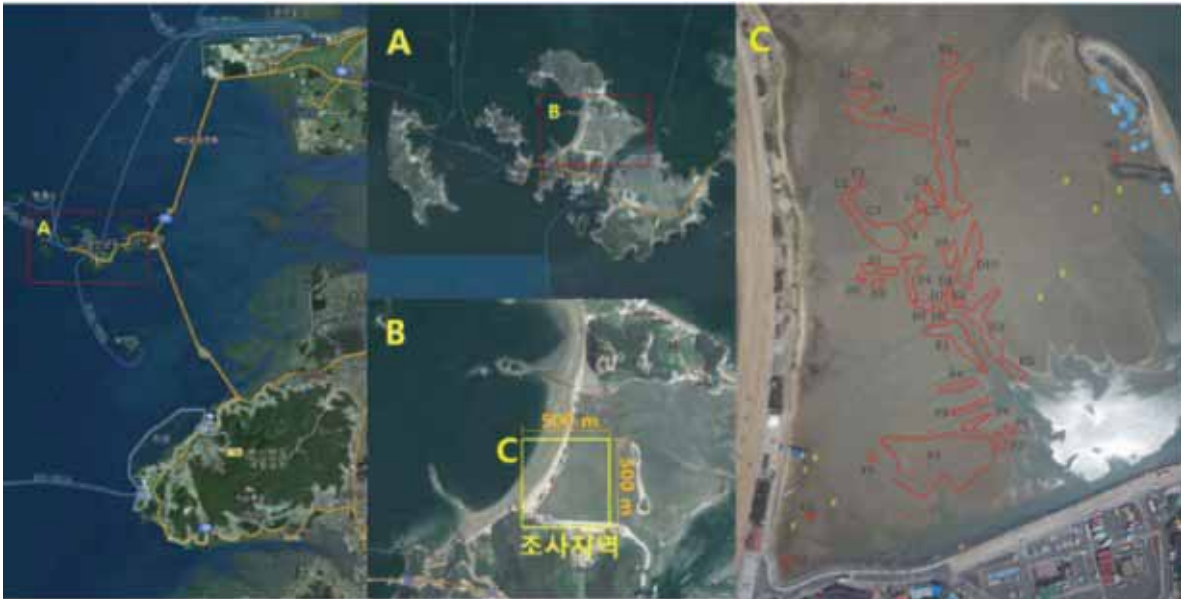
- 선유도 내 선유도 해수욕장 및 그 인근지역에서 해양보호생물(멸종위기종 II급) 흰발농게가 분포함
 -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서식면적은 10,914.1㎡, 전체 개체수는 약 427,642개체로 추정
- 선유도 외 변산반도 국립공원, 부안줄포만 갯벌, 고창 갯벌 일부에 흰발농게 분포 추정

4)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2019) 자료

5) Shannon-wiener 지수 : $H' = -\sum p_i * \ln(p_i)$ ($p_i = i$ 종의 개체수/ 총 개체수)

6) 국립생태원, 2019, 선유도해수욕장 인근 흰발농게(멸종위기종 II급)의 분포현황 조사 자료

〈그림 2-1〉 선유도 흰발농게 서식 현황



자료 : 국립생태원, 2019, 선유도해수욕장 인근 흰발농게(멸종위기종 II급)의 분포현황 조사 자료

7) 해양수질 현황

□ 전북 해역의 해양환경측정망 해수수질평가지수(WQI⁷⁾)는 전반적으로 양호⁸⁾⁹⁾

○ 전북 해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¹⁰⁾ 농도는 표층 1.58mg/L, 저층 1.63mg/L, 용존산소(이하 “DO”)¹¹⁾ 농도는 표층 8.98mg/L, 저층 8.77mg/L로 관측됨
- 총질소(이하 “TN”)¹²⁾ 농도는 표층 382.19 μ g/L, 13)총인(이하 “TP”) 농도는 표

7) 해수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는 우리나라 종합적인 해역수질상태를 알기 위해 해역을 해류, 조석, 탁도, 수심 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의 생태구(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 생태구)로 구분하고 부영양화의 원인항목(용존 무기질소(DIN), 용존 무기인(DIP)과 일차반응항목(클로로필(Chl-a), 투명도(SD))과 이차반응항목(저층 용존산소 포화도(DO))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으로 계산

※ 생태계기반 해수수질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

등급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I(매우 좋음)	23 이하
II(좋음)	24 ~ 33
III(보통)	34 ~ 46
IV(나쁨)	47 ~ 59
V(아주 나쁨)	60 이상

8) 전북 해역에 위치한 총 21개 정점 중(군산 정점 10개, 전주포 정점 3개, 고창 3개), 담수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군산 9, 10, 전주포 1-8, 고창 1-2 정점 등 총 12개 정점의 관측 결과를 제시함

9)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관측 결과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전북 해양수질의 장기간 상태를 기술함

10)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 또는 mg/ℓ로 나타낸 것임

11) 용존산소(DO)는 물 속에 용해해 있는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으로 유기물에 의하여 오염된 수역일수록 낮은 농도를 보임

- 층 42.62 μ g/L, 저층 46.27 μ g/L의 범위를 보임
- 수온은 표층 14.92 $^{\circ}$ C, 저층 14.49 $^{\circ}$ C로 표층이 약 2.9% 높고, 염분은 표층 30.96psu, 저층 31.30psu로, 표층과 저층 간 차이는 거의 없음
- 투명도는 평균 2.09m, 동계 1.35m, 춘계 2.66m, 하계 2.36m, 추계 2.00m로 춘계에 가장 높고 동계에 가장 낮음
- WQI는 평균 1.98 등급, 동계 2.11 등급, 춘계 1.75 등급, 하계 2.18 등급, 추계 1.88 등급으로 동계에 가장 높고 춘계에 가장 좋음

〈표 2-8〉 전북 해역의 수질환경 현황(1999-2019년 평균)

내용	구분	수치	내용	구분	수치
수온 ($^{\circ}$ C)	표층	14.92	엽록소-a (μ g/L)	표층	3.72
	저층	14.49		저층	4.09
염분 (psu)	표층	30.96	용존무기질소 (μ g/L)	표층	130.54
	저층	31.3		저층	124.22
용존산소 (mg/L)	표층	8.98	용존무기인 (μ g/L)	표층	16.93
	저층	8.77		저층	18.56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표층	1.58	총질소 (μ g/L)	표층	382.19
	저층	1.63		표층	42.62
부유물질 (mg/L)	표층	18.91	총인 (μ g/L)	저층	46.27
	저층	19.73	투명도	2.09	
-	-	-	WQI	1.98	

자료 : 해양환경측정망 자료(1999-2019)

12) 총질소(TN)는 유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및 질산성 질소 등 수중에 포함된 모든 질소화합물의 총량으로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과 같은 인위적인 유입에 따라 증가함
 13) 총인(TP)은 하천, 호수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함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1) 인구

- 전북연안의 인구는 2020년 기준 457천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변화는 -0.48%로 2009년 보다 감소하였음.
- 2020년 전북연안은 전국 인구의 0.88%인 457천명이 거주하며, 2010년 488천명에 비해 약 4% 감소함.
 - 전북연안 중 김제시와 부안군의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변화는 모두 연평균 -1.3% 수준으로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임. 이에 비해 군산시의 인구수는 0.04% 증가함.
- 전북연안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48%로, 전라북도의 -0.25%, 전국의 0.37%와 비교할 때 높은 감소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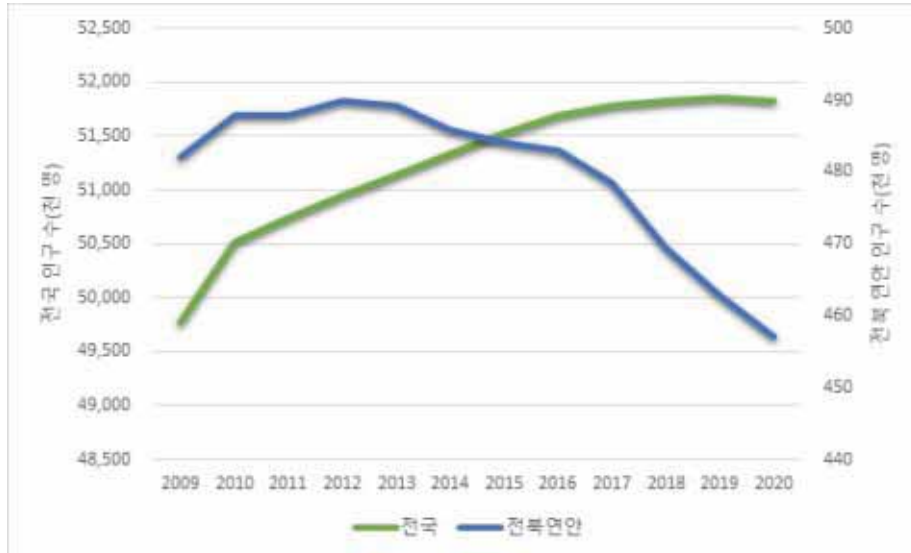
〈표 2-9〉 전북 인구 현황

(단위 : 천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49,773	50,516	51,529	51,829	0.37
연안인구	12,393	13,145	13,703	14,161	1.22
전라북도	1,855	1,869	1,870	1,804	-0.25
전북연안	482	488	484	457	-0.48
군산시	267	273	278	268	0.04
김제시	95	94	89	82	-1.31
고창군	60	61	60	55	-0.80
부안군	60	60	57	52	-1.32
전북연안 / 전국	0.97	0.97	0.94	0.88	-

자료 : 행정안전부, 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재구성(2009~2020)

〈그림 2-2〉 전북 인구 현황 및 변화



자료 : 행정안전부, 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재구성(2009~2020)

2) 사업체수

- 전북연안의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40,077개로 전국 사업체 수의 약 0.98%를 차지
 - 전국 대비 전북연안의 산업별 비율을 살펴보면, 농·임·어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4.76%)을 보였으며, 운수 및 창고업에서 가장 낮은 비율(0.83%)을 나타냄.
 - 2008년에 비해 2018년의 전북연안 사업체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군산시의 사업체 수가 큰 폭(25.5%)으로 증가함.
 - 전국의 사업체 수에 대한 전북연안의 각 산업별 비율의 경우 농·임·어업의 증가(1.12%) 외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표 2-10〉 전북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 산업		광업		기타		농·임·어업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업		운수업		제조업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2008	2018
전국	3,264,782	4,103,172	1,757	1,916	2,112	4,261	859,794	1,027,110	623,915	766,855	340,522	400,282	320,053	437,024	1,116,629	1,465,724
전라북도	120,062	151,011	81	108	182	488	34,263	40,128	21,606	27,692	11,706	13,286	9,471	12,933	42,753	56,376
전북연안	32,410	40,077	38	50	77	203	9,432	10,855	6,242	7,590	2,995	3,339	2,667	3,957	10,959	14,083
군산시	17,749	22,283	7	7	11	26	5,134	5,995	3,550	4,456	1,669	1,913	1,236	1,913	6,142	7,973
김제시	6,207	7,468	0	1	24	75	1,729	1,940	932	1,050	722	760	704	1,087	2,096	2,555
고창군	4,049	5,367	17	27	21	74	1,221	1,503	756	867	278	356	378	524	1,378	2,016
부안군	4,405	4,959	14	15	21	28	1,348	1,417	1,004	1,217	326	310	349	433	1,343	1,539
전북연안 / 전국	0.99%	0.98%	2.16%	2.61%	3.65%	4.76%	1.10%	1.06%	1.00%	0.99%	0.88%	0.83%	0.83%	0.91%	0.98%	0.9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8, 2018), 전라북도 사업체조사(2008, 2018)

3) 수산

- 2020년 기준 전북의 어업생산량¹⁴⁾은 약 83천 톤으로 전국 어업생산량(3,240천 톤)의 2.56%를 차지함.
- 전북 어업생산량 중 일반해면 어업생산량은 25천 톤, 천해양식 어업생산량은 56천 톤으로 천해양식 어업생산량이 많음.
- 2009년 이후 전북의 일반해면 어업생산량은 2013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증가 추세로 변하였고, 천해양식 어업생산량은 2015년까지 감소한 후 2016년부터 증가 추세로 변화되었음.

〈표 2-11〉 전국 및 전북 어업생산량 비교

(단위 : 천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일반해면	1,227	1,133	1,235	1,091	1,045	1,059	1,058	908	927	1,012	912	932
	천해양식	1,313	1,355	1,478	1,489	1,515	1,547	1,668	1,872	2,316	2,250	2,410	2,308
	소계	2,540	2,488	2,713	2,580	2,560	2,605	2,726	2,780	3,243	3,261	3,322	3,240
전북	일반해면	35	33	30	19	18	23	21	21	20	23	25	25
	%	2.86	2.90	2.46	1.74	1.68	2.13	1.98	2.29	2.17	2.26	2.69	2.63
	천해양식	47	43	35	24	31	26	16	35	51	48	51	56
	%	3.56	3.15	2.38	1.61	2.03	1.71	0.98	1.84	2.21	2.13	2.12	2.42
	소계	85	78	68	45	50	51	39	58	74	73	78	83
	%	3.33	3.15	2.50	1.73	1.95	1.96	1.44	2.07	2.27	2.24	2.36	2.56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W0004&conn_path=I3), 재구성

14)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의 생산량을 합한 값임

〈그림 2-3〉 전북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어업생산량 변화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해양수산통계

- 어종별 생산량은 2020년 기준 해조류가 41,458톤(51.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패류 20,613톤(25.6%), 어류 9,906톤(12.3%)로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
- 해조류는 연도별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패류와 어류의 경우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2〉 전국 및 전북 어업생산량 비교

(단위 :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소계	2540321	2487536	2713085	2579984	2559907	2605314	2726191	2779980	3242716	3261139	3321892	3240471
	어류	905018	816308	915062	780095	767600	774107	796088	688448	751789	830175	752586	771661
	갑각류	102019	110980	104588	108053	109364	106773	95529	89404	81150	79998	71888	79881
	패류	416736	436079	461389	428130	341660	413400	402627	413976	483980	504762	525972	493885
	연체동물류	223212	187777	197415	207409	178423	187645	182024	147779	115523	75619	88010	84606
	기타수산동물	23884	21727	27526	23248	22959	26003	37233	45000	40626	48765	37217	41368
	해조류	869502	914715	1,007,070	1,082,449	1,139,871	1,096,786	1,212,690	1,395,373	1,769,698	1,721,820	1,851,224	1,769,040
전북	소계	81,805	75,469	65,491	42,918	48,310	48,989	37,300	55,319	71,386	70,729	75,617	80,478
	어류	18,361	16,468	17,294	11,286	11,697	15,810	12,304	9,430	10,833	12,373	10,945	9,906
	갑각류	3,999	3,497	2,920	2,037	2,853	3,053	2,997	2,776	3,880	5,252	5,722	5,520
	패류	23,780	21,678	24,468	8,667	2,701	4,712	6,888	17,468	11,394	18,074	23,308	20,613
	연체동물류	1,330	2,338	1,530	1,421	1,259	1,118	2,465	2,049	2,422	1,987	2,465	2,845
	기타수산동물	1	0	2	3	3	34	30	39	28	212	192	136
	해조류	34,274	31,458	19,187	19,504	29,797	24,262	12,636	23,557	42,829	32,881	32,985	41,458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W0004&conn_path=13), 재구성

- 전북연안의 면허어업권은 638개이며, 이에 해당하는 면적은 12,916ha임.
- 해조류양식이 가장 많은 면적(35.7%)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패류양식(31.6%)과 마을어업(15.7%)이 높게 나타남.
 - * 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일정한 수심이내의 패류·해조류·정착성 수산 동물을 관리하여 포획
- 시군별로 보면, 면허어업(한정어업 포함) 건수 기준으로는 고창군(227건), 면적 기준으로는 군산시(7,782ha)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표 2-13〉 전북 면허어업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마을어업		복합양식		어류등양식		정치망어업		패류양식		해조류양식		한정어업		합계		비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군산시	65	1,237	14	940	9	135	-	-	77	1,551	39	3,920	-	-	204	7,782	32.0	60.3
부안군	66	662	3	28	13	193	15	102	92	1,152	18	503	-	-	207	2,640	32.4	20.4
고창군	8	128	-	-	45	291	-	-	153	1,373	5	184	16	520	227	2,494	35.6	19.3
전북도	139	2,026	17	968	67	618	15	102	322	4,076	62	4,607	16	520	638	12,916	100	100
비율 (%)	21.8	15.7	2.7	7.5	10.5	4.8	2.4	0.8	50.5	31.6	9.7	35.7	2.5	4.0	100	100		

자료 : 지자체, 2019; 어장이용계획 적합성 자료, 2020

- 국가어항 7개소를 포함하여 총 42개의 어항이 전북연안에 입지하고, 주로 군산시와 부안군에 분포함
 - 국가어항 7개소를 비롯하여 지방어항 10개소, 어촌정주어항 16개소, 소규모어항이 9개 지정됨.
 - 국가어항은 고창군(구시포항), 군산시(말도항, 어청도항, 연도항, 개야도(2019년 승격)항), 그리고 부안군(격포항, 위도항)에 위치함.
 - 지방어항은 고창군(동호항), 군산시(방축도항, 무녀도항, 비안도항, 선유도항), 부안군(곰소항, 궁항항, 성천항, 송포항, 식도항)에 소재
 - 부안군이 20개소(4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산시가 19개소(44.2%)로 두 지역이 전북 어항의 대부분을 차지
 - 어촌정주어항(38.1%)과 소규모어항(21.4%)이 다수를 차지하며, 전북연안에 마을공동어항은 지정되어 있지 않음.

〈표 2-14〉 전북 어항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국가어항			지방 어항	어촌 정주어항	마을 공동어항	소규모 어항	합계	비율
	연안	도서	소계						
군산시	0	4	4	4	11	-	0	19	45.2%
부안군	1	1	2	5	5	-	8	20	47.7%
고창군	1	0	1	1	0	-	1	3	7.1%
합계	2	5	7	10	16	-	9	42	100%
비율	4.8%	11.9%	16.7%	23.8%	38.1%	-	21.4%	100%	

자료 : 해양수산부, 2022, 법정어항현황; 전라북도, 시군별 어항수 재구성

4) 광업권

- 전북연안에는 총 9개 광구에 광업권과 채굴권이 등록되어 있으나 탐사권은 없음.
 - 군산시 장자도 지적 및 부안군 하왕등도 지적, 고창군 위도 지적 등 광업권 5건, 채굴권 4건이 설정되어 있음.
 - 광업권이 설정된 면적은 총 1,538ha로, 이중 광업권의 면적은 1,001ha(65.1%), 채굴권의 면적은 537ha(34.9%)임.

〈표 2-15〉 전북 광업권 설정 현황

구분	지적명	지적호수	등록번호	면적(ha)	존속기간	소재지	비고
고창군	법성포	11	66394	262	2017.11.01. ~ 2037.10.31.	해리면	채굴권 (고령토)
	위도	10	67372	70	2019.02.01. ~ 2039.01.31.	해리면	채굴권 (고령토)
	위도	20	67373	66	2019.02.01. ~ 2039.01.31.	해리면	채굴권 (규석, 고령토)
군산시	함열	150	78924	30	2010.09.30. ~ 2030.09.29.	성산면	광업권 (규석)
	장자도	21	75085	139	2005.11.22. ~ 2025.11.21.	옥도면	광업권 (고령토)
부안군	하왕등도	72	78940	279	2010.10.07. ~ 2030.10.06.	위도면	광업권 (철광)
	하왕등도	81	78941	274	2010.10.07. ~ 2030.10.06.	위도면	광업권 (철광)

구분	지적명	지적호수	등록번호	면적(ha)	존속기간	소재지	비고
	하왕등도	82	78942	279	2010.10.07. ~ 2030.10.06.	위도면	광업권 (철광)
	출포	105	100176	139	2015.06.16. ~ 2035.06.15.	진서면	채굴권 (고령토)
합계				1,53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2020, 내부자료

5) 해양관광

□ 전북연안에는 국가지정 해수욕장 8개소 운영 중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운영 중인 해수욕장은 총 8개소가 있으며, 부안군에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해수욕장이 다수 분포.

- 전북연안에서 부안군의 변산, 위도해수욕장과 고창군의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의 규모가 넓게 나타남.

□ 2021년 해수욕장 방문객수는 약 320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격포해수욕장의 방문객은 72,684명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나타내고, 다음으로 선유도해수욕장, 구시포해수욕장, 변산해수욕장 순임.

〈표 2-16〉 전북 해수욕장 및 방문객 현황

구분	명칭	지정일	백사장		방문객수(명)		
			길이(m)	면적(m ²)	2019	2020	2021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04.7.26.	1,200	6,000	64,400	54,222	71,094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16.6.21.	721	116,874	31,130	56,654	46,290
	고사포해수욕장	'16.6.21.	996	43,824	6,808	28,033	23,359
	격포해수욕장	'16.6.21.	229	19,809	30,910	51,960	72,684
	모항해수욕장	'16.6.21.	249	19,547	24,603	29,538	30,863
	위도해수욕장	'16.6.21.	544	100,422	23,780	7,135	5,717
고창군	구시포해수욕장	'04.8.23.	1,750	315,000	28,596	62,045	41,655
	동호해수욕장	'04.8.23.	1,560	296,400	49,553	28,372	28,457
					259,780	317,959	320,119

주 : 방문객수는 2021년 9월 기준

자료 : 전북도청, 2021, 내부자료

- 해수욕장 외 연안·해양 관광지는 약 14개소에 연간 7,640천명(2019년 기준)이 방문
- 전북도 내 14개의 관광지인 (부안군) 대명리조트변산 아쿠아월드, 변산반도국립공원, 새만금전시관, (김제시) 새만금2호방조제, (고창군)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새만금2호방조제의 관광객 수가 5,340천명(2019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음.

〈표 2-17〉 전북 연안·해양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명칭	관광객 수	
		2018년	2019년
부안군	대명리조트변산 아쿠아월드	247,816	244,087
	모항해나루가족호텔야외풀장	3,486	3,960
	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	101,398	95,903
	변산반도국립공원(내소사)	605,040	669,565
	변산반도국립공원(원암)	13,938	13,684
	부안누에타운	106,681	123,100
	상록해수욕장	29,939	27,549
	새만금전시관	287,653	281,779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58,668	50,424
	영상테마파크	72,613	56,761
	위도	77,021	58,725
	출포만갯벌생태공원	391,149	315,727
김제시	새만금2호방조제	5,641,529	5,340,662
고창군	람사르고창갯벌센터	3,242	4,124
합계	14개소	7,640,173	7,286,050

자료 : 지자체, 2020, 지자체 내부자료

-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곳은 1개소, 예정구역은 4개소임.
- 운영 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안군 격포마리나 1개소임.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군산시 고군산과 비응, 부안군 궁항, 김제시 심포 마리나항만 총 4개소임.

〈표 2-18〉 전북 마리나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구분	마리나항만	위치	예정면적 (육·해상포함, m ²)	단계	규모(척)
군산	고군산 마리나항만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 일원	200,000m ²	예정구역	200척
	비응 마리나항만	비응도동 36-5 일원	40,000m ²	예정구역	100척
부안	격포 마리나항만	격포 격포항 내	3,950m ²	운영 중	37척
	궁항 마리나항만	변산면 격포리 산71-8 일원	88,245m ²	예정구역	80척
김제	심포 마리나항만	진봉면 심포리 1666-14 일원	212,000m ²	예정구역	(수상계류)100척 (육상계류)50척
합계		5개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전북연안은 2002년 이래로 어촌체험마을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전북연안 어촌체험마을은 고창군 3개소(장호, 하전, 만돌), 군산시 3개소(선유도, 신시도, 장자도), 부안군 1개소(모항)의 총 7개소임.
- 어촌체험마을에서는 바다낚시체험장, 야외수영장, 갯벌체험장 등 여러 체험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표 2-19〉 전북 어촌체험마을 현황

구분	마을명	주소	선정연도	체험 종류	비고
고창군	장호	상하면 명사십리로 282-42	2011년	바다낚시체험장	운영
	하전	심원면 서전길 30	2002년	야외수영장, 갯벌체험장	운영
	만돌	심원면 애향갯벌로 320	2003년	갯벌체험장	운영
군산시	선유도	옥도면 선유도3길 43	2010년	바다낚시체험장, 관광체험어장, 자전거하이킹코스	운영
	신시도	옥도면 신시도길 83-7	2012년	바다낚시체험장, 갯벌체험장	운영
	장자도	옥도면 장자도리 115	2005년	갯벌체험장, 관광체험어장	미운영
부안군	모항	변산면 모항길 107	2004년	갯벌체험장, 소공원	미운영 (취소 '21.8월)

자료 : 전라북도, 2021, 내부자료

□ 전북연안에는 총 7개소의 유어장(맨손, 체험어장)이 있음.

- 군산시 선유 3구, 신시도 갯벌체험장, 부안군 모항, 두포, 대항 갯벌체험장 등이 운영 중

〈표 2-20〉 전북 유어장(체험어장) 현황

구분	명칭	주소	면적(ha)		면허 또는 허가 어업의 종류	지정기간
			전체어장	유어장		
군산시	선유3구 갯벌체험	옥도면 선유도	18	8	마을어업 5331호	'20.9.4.~'25.7.20.
	선유3구 갯벌체험	옥도면 선유도	44	21	마을어업 5330호	'20.9.4.~'25.7.20.
	신시도 갯벌체험	신시도	38	18	마을어업 5327호	'20.9.4.~'25.7.20.
	신시도 갯벌체험	신시도	39	18.5	마을어업 5326호	'20.9.4.~'25.7.20.
부안군	모항갯벌체험장	변산면 도청리	10	4.9	패류양식 제3620호	'20.4.9.~'23.4.8.
	두포마을 갯벌체험장	변산면 도청리	10	4.8	마을어장 제3680호	'20.4.9.~'23.4.8.
	대항어촌갯벌 체험장	변산면 대항리	20	9.9	마을어장 제3753호	'19.5.31~'22.8.15

자료 :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 내부자료

6) 항만·항행

(1) 항만

- 전북연안에는 무역항 1개소(군산항), 신항만 1개소(새만금신항-개발 중), 연안항 1개소(상왕등도항)가 위치하고 있음.
 - 군산항은 군산시에 위치한 무역항(국가관리항)으로 기존에 금강하구에 위치하였으나, 금강하구 퇴적과 금란도 조성으로 현재는 비응도와 오식도를 육지화해 항구로 조성됨.
 - 새만금신항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33.9km)를 외부 고군산군도와 신항만 등을 개발함.
 - 상왕등도항은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에 위치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그동안 경제성 부족으로 개발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항만계획에 포함되어 부두 및 선착장 등 기반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음.¹⁵⁾

□ 군산항 항만육성 및 현황

- 군산항은 국가관리항인 무역항으로 면적은 191,386천㎡이며, 접안능력은 37선석, 하역 능력은 30,070천RT/년임.

〈표 2-21〉 군산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 항종 : 무역항(국가관리항) • 항만구역 : 현 면적 191,386천㎡(수상 : 1885,730천㎡, 육상 : 5,656천㎡) • 항만시설 현황 					
안벽(m)	물양장(m)	잔교(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
7,806	3,236	16	4,323	-	1,4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능력 : 39선석(여객 및 유류포함) - 하역능력 : 30,070천RT/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무역항기본계획(2021-2030)

- 군산항의 항만육성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항만	세부 육성 목표
군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지역 배후산업 및 해양레저 지원항만으로 육성 • 준설과 부두기능 재배치를 통한 항만물류기능 강화와 친수공간 확대 추진

○ 항만개발 기본방향

- 물류거점항만으로 내항 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조성
- 배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발생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
- 내항지역의 친환경·고부가가치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군산항 항만기능 재정립

- 관리부두 접안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수심 및 부두기능이 저하된 1·2부두를 해경·소형선 및 관리부두로 전환하여 항만운영여건 개선
- 1·2부두, 신역무선 부두를 소형역무선 부두로 전환하여 소형 관리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기능 재정립

○ 군산항 항만 환경개선

- 고도화된 하역시설 확보로 환경오염 발생 방지, 내항 재개발을 통한 항만 친수 공간 조성 예정

15) 해양수산부, 2020,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 항만국 통제(PSC) 강화 및 선박통항정보서비스시스템(VTS) 운영을 통한 기준 미달선의 입항금지 및 개선방안 강구
-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차단을 위한 추가 방사능 감시기 설치를 통해 수입화물의 감시 강화

〈그림 2-4〉 군산항 계획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2021-2030)

□ 새만금신항 항만육성 및 현황

-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 및 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
- 새만금 배후 생명공학·식품·관광 등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항만·물류 기반 인프라 적기 조성
- 토사의 매몰·퇴적으로 인한 군산항의 기능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선박대형화, 크루즈 활성화 등에 대비하여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 정립
-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원기반시설 개발, 친수시설·개방형 워터프런트, 랜드마크 건설 등 친수도시형 항만 건설

〈표 2-22〉 새만금신항 개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공유수면
- 항종 : 신항만(국가관리 무역항-예비항)
- 항만구역 : 현 면적 57,241천㎡
- 접안능력/하역능력 : 9선석/15,781천RT/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2019-2040),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해양수산부)

□ 상왕등도항 항만육성 및 현황

- 상왕등도항은 국가관리항인 연안항으로 면적은 382천㎡이며, 항만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23〉 상왕등도항 현황

-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 항종 : 연안항(국가관리항)
- 항만구역 : 현 면적 382천㎡(수상 : 382천㎡, 육상 : -)
- 항만시설 현황

안벽(m)	호안(m)	소형선 부두(m)	선착장(m)
165	60	80	6(폭)
- 접안 및 하역 능력 :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2021-2030)

- 상왕등도항의 항만육성 기본방향은 서해중부 영해관리 거점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임.
- 항만기능 재정립
 - 국가관리연안항 기능(해상경계업무 및 어업질서 유지 등) 확보, 소형선 부두 및

선착장 시설물 보호(방파제 시설계획 등), 차도선 운항여건 개선

○ 항만운영 및 관리

- 해상안보, 어업질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경·국가어업지도선 공용부두 개발
- 외곽시설 확충으로 항내정온도 향상 및 기상 악화 시 칠산어장 어선 피항 기능 강화

○ 항만 환경개선

- 방파제 및 호안설치 등 공사 중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항내 미관 향상, 항만개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
- 기존 방파제 보강 165m, 방파제 신설 151m, 호안 95m, 선착장 14m, 준설 등 개발 계획이 있음.

〈그림 2-5〉 상왕등도항 계획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2021-2030)

(2) 항로

□ 전북의 연안여객항로는 총 4개 항로(5척)로 일반항로 1개(2척), 보조항로 3개(3척)임.

- 연안여객항로는 해상관광 활성화보다는 육로 교통의 연장으로서 도서민과 여객 수송, 농수산물이나 산업용 기자재를 이동시키는 운송수단임.

〈표 2-24〉 전북 연안여객선 항로별 취항 선박현황

항로명 (항로구분)	선명 (선사명)	선종 (속력)	총톤수 (정원)	항로거리 (운항시간)	기항지
격포-위도 (일반)	대원카훼리	차도선 (11노트)	322G/T (350명)	19km	식도-상·하왕등도
	파장금카훼리	차도선 (11노트)	322G/T (346명)		
군산-개야도 (보조)	개야카훼리	차도선 (13노트)	187G/T (65명)	20km	-
군산-말도 (보조)	고군산카훼리	차도선 (12노트)	217G/T (118명)	46km	장자도-관리도-방축도-명도
군산-어청도 (보조)	뉴어청훼리	고속선 (15노트)	121G/T (140명)	70km	연도

자료 : 한국해운조합, 2021, 2021 연안여객선 업체현황

〈그림 2-6〉 전북 연안여객선 항로 현황



자료 : 한국해운조합, 2021, 2021 연안여객선 업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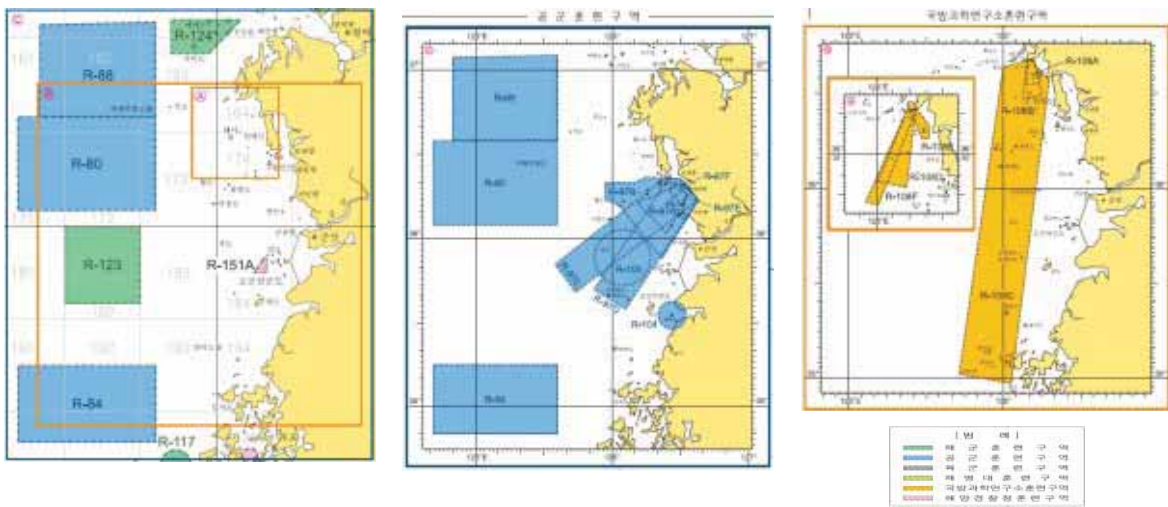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23,621명으로 이 중 도서민이 70,877명(32%), 비도서민이 152,744(68%) 이용¹⁶⁾

16) 한국해운조합, 2021, 2021 연안 여객선 업체현황

7) 군사활동

- 전북 해상에는 지정된 해상사격 훈련구역은 해군훈련구역, 공군훈련구역, 국방과학연구소훈련구역, 해양경찰훈련구역 등 4가지 유형의 훈련구역이 분포함.
- 해군훈련구역(R-123), 해경훈련구역(R-151A), 공군훈련구역(R-97B, R-97C, R-97D, R-104, R-105), 국방과학연구소훈련구역(R-108C)이 전북 해상에 위치함.

〈그림 2-7〉 전북 해역 해상사격 훈련구역 현황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20, 항행통보연보

8) 공유수면 점·사용

- 2020년 5월 기준 전북연안에서 허가된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총 523건으로 면적은 약 18.2km²을 차지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용과 사용의 형태에 따라 11가지 유형으로 구분¹⁷⁾

구분	내용
1호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호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호내지 11호

구분	내용
3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호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호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호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호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호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호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 점사용의 유형은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이 382건으로 가장 많고, 면적은 흙 또는 돌을 버리는 행위로 13.7km²을 차지함.

〈표 2-25〉 유형별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단위 : m²)

구분	무역항		연안항		어항		기타해역		전체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1호	64	1,694,641	40	424,182	2	36	276	771,120	382	2,889,979
2호	-	-	-	-	-	-	1	721	1	721
3호	1	21,600	2	6,596	-	-	1	638	4	28,834
5호	-	-	2	12,362	-	-	15	3,610	17	15,972
6호	-	-	-	-	-	-	1	-	1	-
8호	-	-	2	13,736,439	-	-	-	-	2	13,736,439
9호	-	-	-	-	-	-	1	211	1	211
10호	-	-	-	-	-	-	1	25,000	1	25,000
11호	-	-	5	10,315	-	-	109	516,577	114	526,892
합계	65	1,716,241	51	14,189,894	2	36	405	1,317,877	523	17,224,048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현황 내부자료(2020년 5월 19일 기준)

- 전북연안 지자체 중 점·사용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군산시로 272건의 허가가 이루어졌고 점용면적은 전북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6.57km² 달함.

〈표 2-26〉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단위 : m²)

구분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전체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1호	28	486,542	198	2,272,122	156	131,315	382	2,889,979
2호	-	-	1	721	-	-	1	721
3호	-	-	3	28,196	1	638	4	28,834
5호	8	1,948	2	12,362	7	1,662	17	15,972
6호	1	-	-	-	-	-	1	-
8호	-	-	2	13,736,439	-	-	2	13,736,439
9호	-	-	-	-	1	211	1	211
10호	-	-	1	25,000	-	-	1	25,000
11호	6	2,584	65	497,303	43	27,004	114	526,892
합계	43	491,074	272	16,572,143	208	160,830	523	17,224,048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현황 내부자료(2020년 5월 19일 기준)

〈그림 2-8〉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9) 안전관리

□ 전북해역에서 2020년 한해 3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함

- 2015년 이후 사고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6.5%(9건)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30건으로 감소함.

〈표 2-27〉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843	1,971	2,285	2,392	2,688	2,847
장항, 군산항 및 진입수로	12	23	24	34	43	30

자료 : 해양안전심판원, 2020,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 전북해역에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구역은 4개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16개소가 위치함.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제1항

- 「해사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은 총 4개소로, 군산시 군산항, 부안군 격포항, 위도항, 구시포항 인근지역임.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군산시 관할(5개소)의 선유도 해수욕장, 신시도 배수갑문 해상 등, 부안군 관할(11개소)의 변산해수욕장,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변산 대명리조트 앞 해상 등
 - 이 구역 내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혹은 연중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이 금지됨.

〈표 2-28〉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구분	위치	금지구역	금지대상	금지기간
군산 해경	선유도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수역 및 외측 20m 수역	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 중
	선연리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 인근 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 중
	비응항 주변 해상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주변 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 중
	직도 주변 해상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3해리권 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 중
부안	변산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수역 및	모든 동력수상	해수욕장

구분	위치	금지구역	금지대상	금지기간
해경	격포 해수욕장	외측 20m 수역	레저기구	개장기간
	고사포 해수욕장			
	모항 해수욕장			
	상록 해수욕장			
	위도 해수욕장			
	동호 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	연 중
	변산 대명(소노벨) 리조트 앞 해상	변산 대명(소노벨)리조트 앞 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 중
	미여도(쌍여도) 주변 해상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주변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 중

자료 :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3호,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3호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1) 분석 개요

(1) 분석 방법 및 절차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과 수요 조사
 - 국가계획: 국토종합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광역시 및 도 계획: 광역시 및 도 종합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
-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수요 중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사업만 선별
 - 공유수면매립, 점용·사용 등을 기반으로 해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를 확인
 - 도서관광개발사업은 직접적인 이용 대상을 해양공간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서로 접근을 위해서 해양공간을 활용하게 되므로 해양공간 이용·개발 수요로 반영
 - 다수의 계획에 중복적으로 반영된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는 가장 최근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

〈표 2-29〉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기관명	계획명	근거법령	비고
국가계획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2021-2030)	항만법 제5조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기관명	계획명	근거법령	비고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0-2024)	어촌·어항법 제4조	어촌뉴딜 사업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제28조	
전라북도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국토기본법 제13조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관광진흥법 제51조	
	2020년 전라북도 발전 시행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제7조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도서개발사업계획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도정주요업무계획(2017-2020)	-	
기초 자치단체 (군산시·김제시 부안군·고창군)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업법 제4조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제9조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어촌·어항법 제4조	
	주요 업무계획(2017~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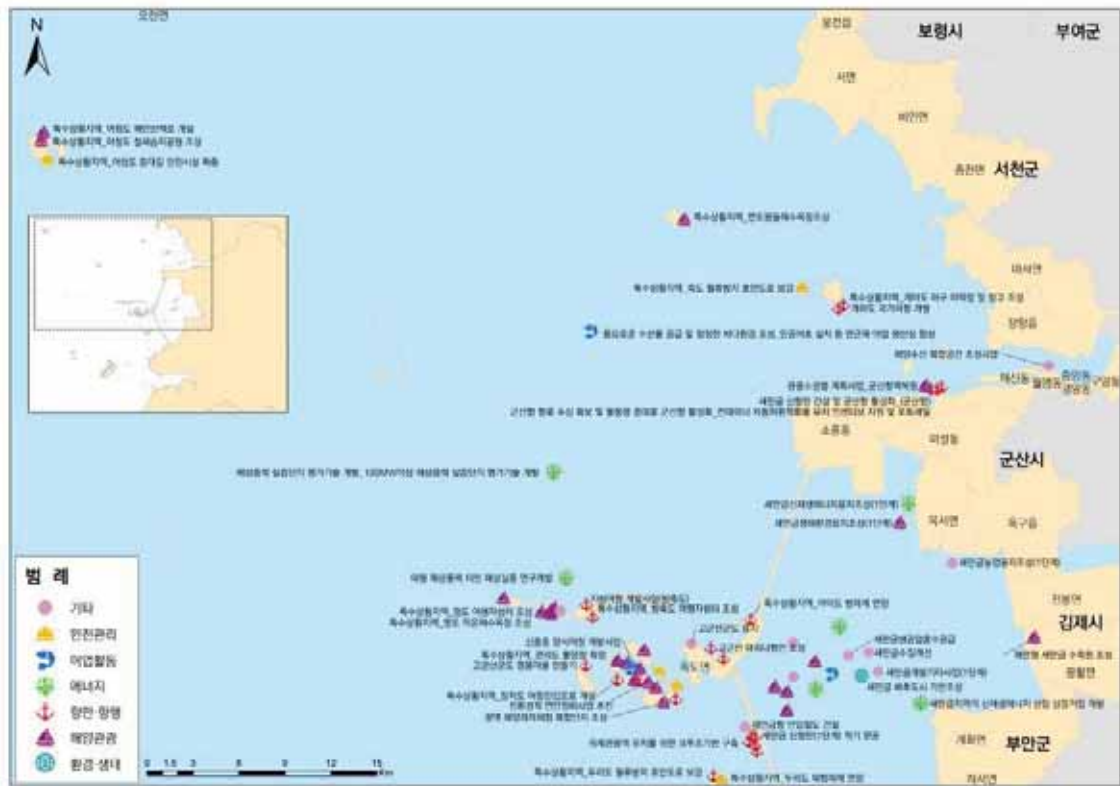
(2) 수요 분석 결과

- 수산 관련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가 전체 200건, 면적은 51.9km², 예산 규모는 약 41조1,863억 원
- 해양관광이 101건으로 가장 많고, 면적은 어업활동이 22.0km²로 가장 크며, 소요 예산은 기타와 에너지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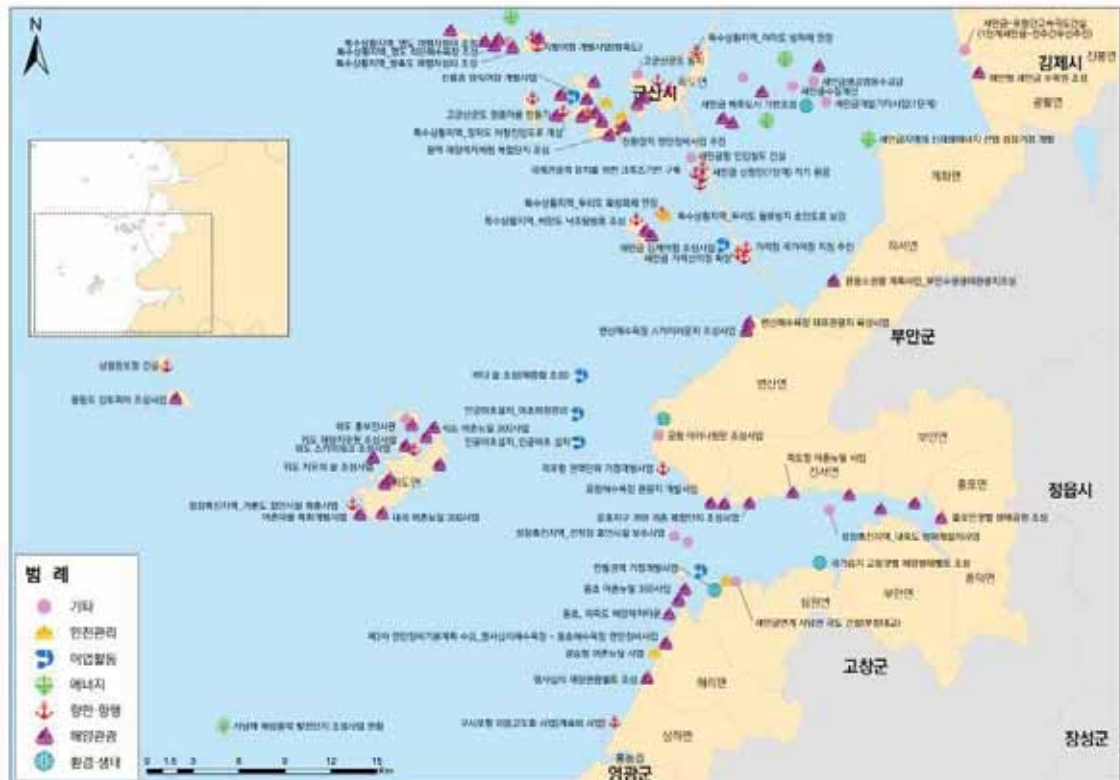
〈표 2-30〉 전북 연안·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특성 분석(해양용도구역별)

구분	안전관리	어업활동	에너지	항만·항행	환경·생태	해양관광	기타	총 합계
개수	8	11	12	36	4	101	28	200
면적(m ²)	-	22,010,000	1,322,314	310,896	1,400,000	18,182,599	8,671,412	51,897,221
예산 (백만원)	25,204	41,867	13,610,634	6,473,230	2,975,800	3,592,915	14,466,700	41,186,350

〈그림 2-9〉 전북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위치(북측)



〈그림 2-10〉 전북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위치(남측)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1) 연안관리

- 전북의 4개 연안 기초 지자체 모두 연안관리지역계획(안) 수립 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계획이 확정되지 못함.

* 연안 시·군의 계획구역 중첩과 중첩된 해역에 서로 다른 용도해역이 설정되는 등 각 지역계획 내용의 이견이 발생하여 심의 절차 진행이 어려웠음.

- 연안관리지역계획(안)에 따른 연안용도해역(안)은 관리해역(안)이 1,654.75km²로 가장 많고, 이용연안해역(안)이 1,280.36km²로 대부분을 차지

- 연안해역기능구는 광물자원구(안)와 군사시설구(안)가 많은 면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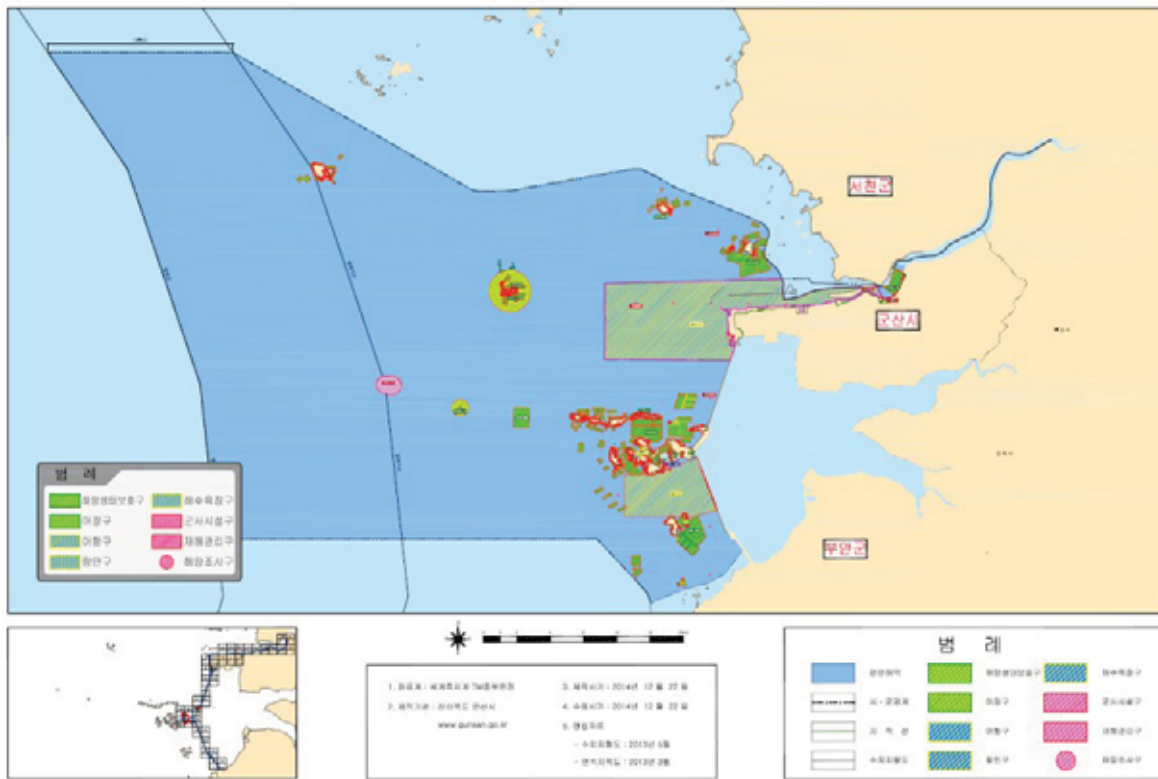
* 광물자원구는 부안군 해역에 해저광구로 인한 것임.

〈표 2-31〉 전북 연안용도해역(안) 및 기능구(안) 지정 현황

연안용도해역(안)		연안해역기능구(안)					
구분	면적(km ²)	유형	면적(km ²)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합계
이용연안해역	1,280.36	항만구	236.5*	57.37	-	57.61	351.48
		항로구	-	-	-	7.18	7.2
		어항구	3.42	-	0.94	1.83	6.2
		레저관광구	-	-	2.62	24.81	27.4
		해수욕장구	0.51	-	0.31	4.10	4.9
		광물자원구	-	-	2.26	931.31	933.6
		해중문화시설구	-	-	-	-	0.0
특수연안해역	908.45	해양수질관리구	-	-	11.50	-	11.5
		해양조사구	0.25	-	7.13	3.54	10.9
		재해관리구	0.16	-	0.08	-	0.2
		군사시설구	5.43	-	692.11	-	697.5
		산업시설구	-	-	189.81	-	189.8
		해양환경복원구	-	-	0.02	-	0.0
보전연안해역	326.56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	-	10.62	10.6
		해양생태보호구	22.08	-	64.66	11.55	98.3
		경관보호구	-	-	-	0.16	0.2
		공원구	-	-	-	17.22	17.2
		어장구	87.86	-	74.56	88.87	251.3
		해양문화자원보존구	-	-	-	-	0.0
관리연안해역	1,654.75		3.14	482.34	205.14	964.13	1,654.7

주 : 기능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고 기능구가 지정되지 않은 해역이 있어 기능구 면적 합과 연안용도해역 면적 합이 일치하지 않음.

〈그림 2-11〉 전북 연안용도해역(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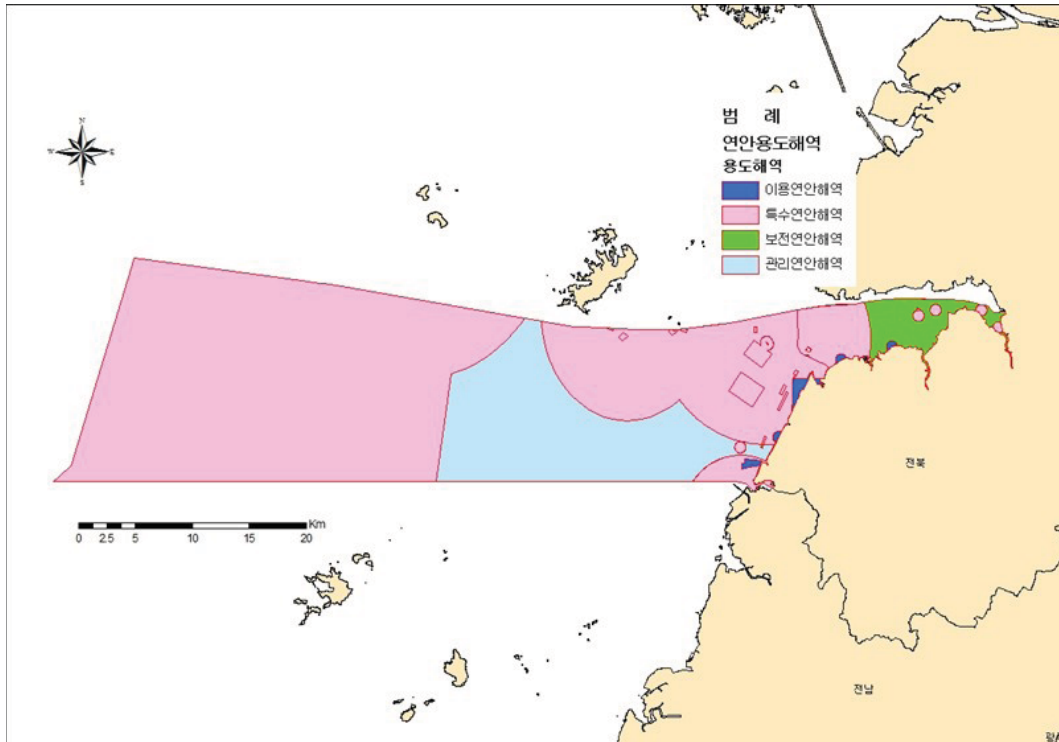


자료 : 군산시, 2015, 군산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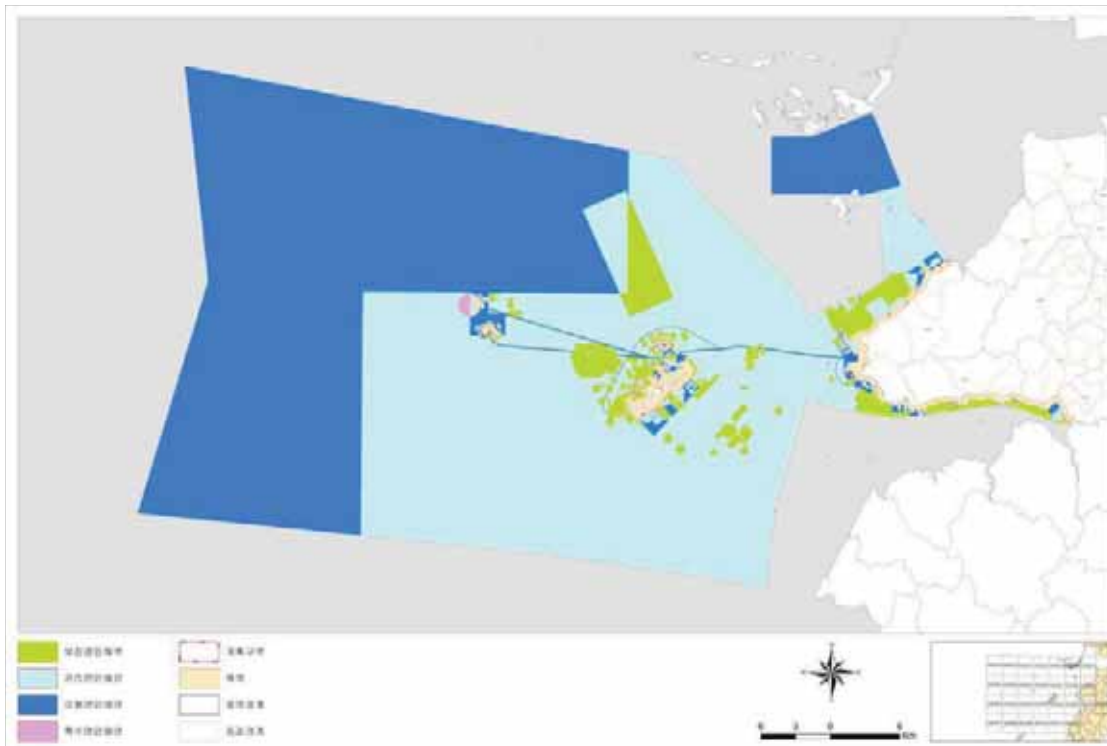


자료 : 김제시, 2014, 김제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그림 2-12〉 전북 연안용도해역(안)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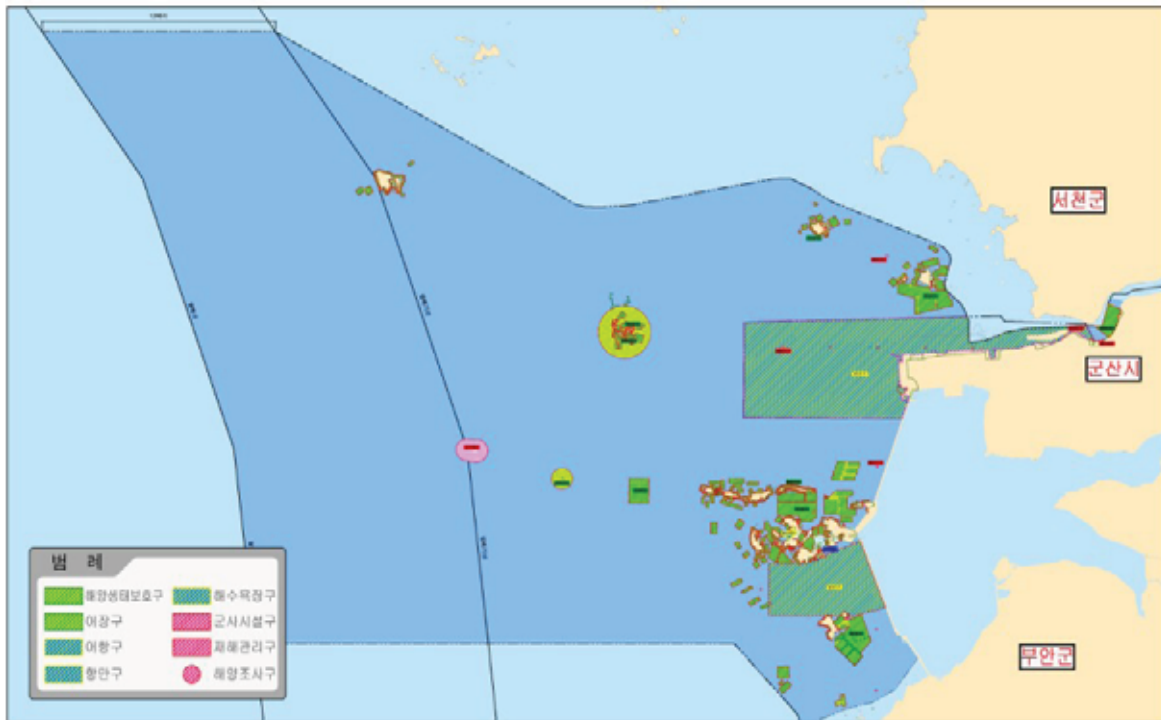


자료 : 고창군, 2018, 고창군 연안관리지역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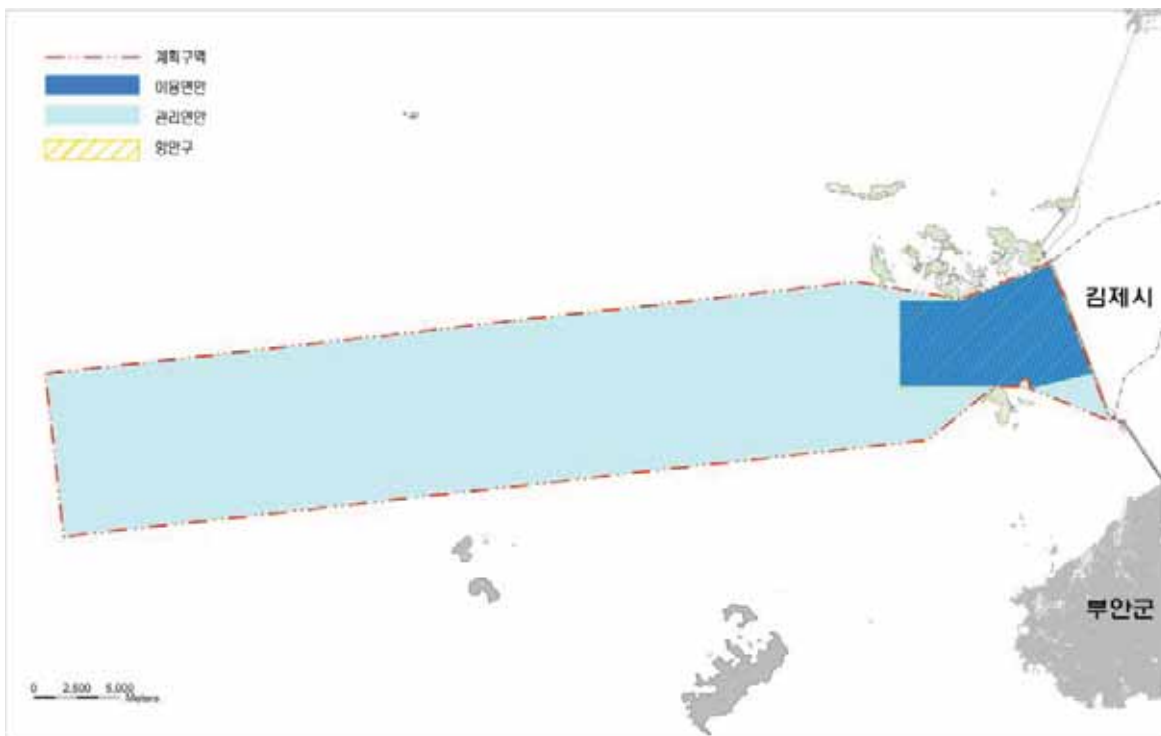


자료 : 부안군, 2014, 부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안)

〈그림 2-13〉 전북 연안해양기능구(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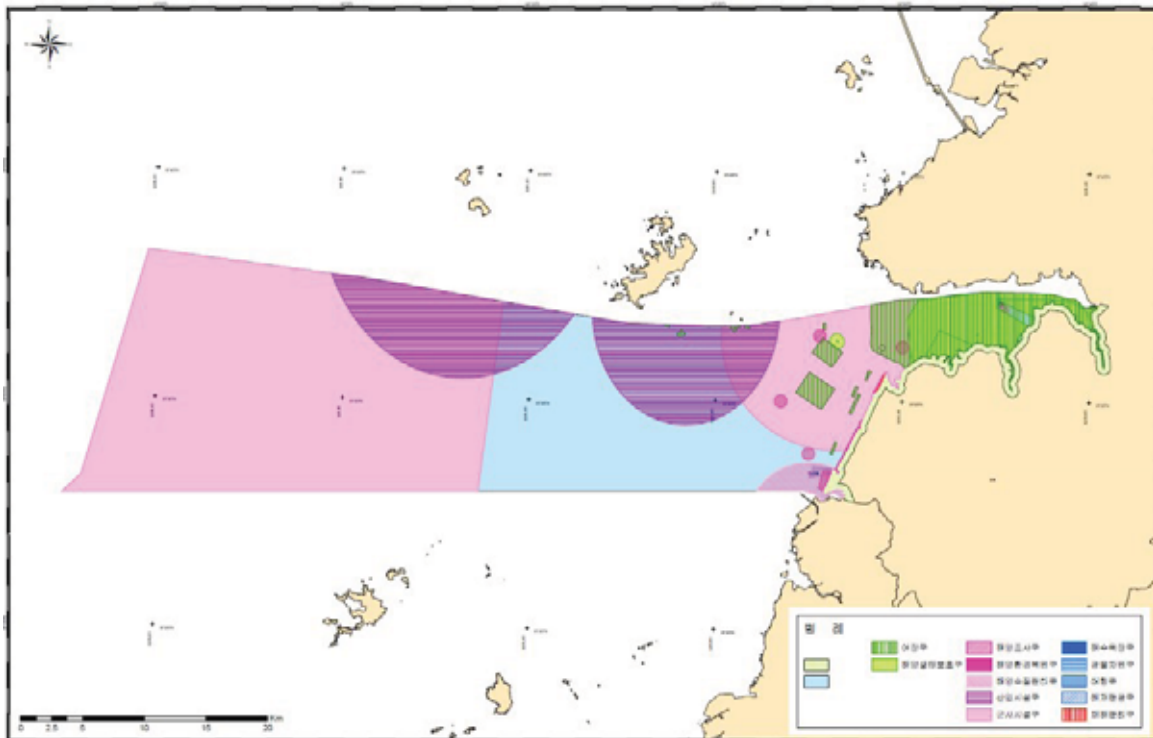


자료 : 군산시, 2015, 군산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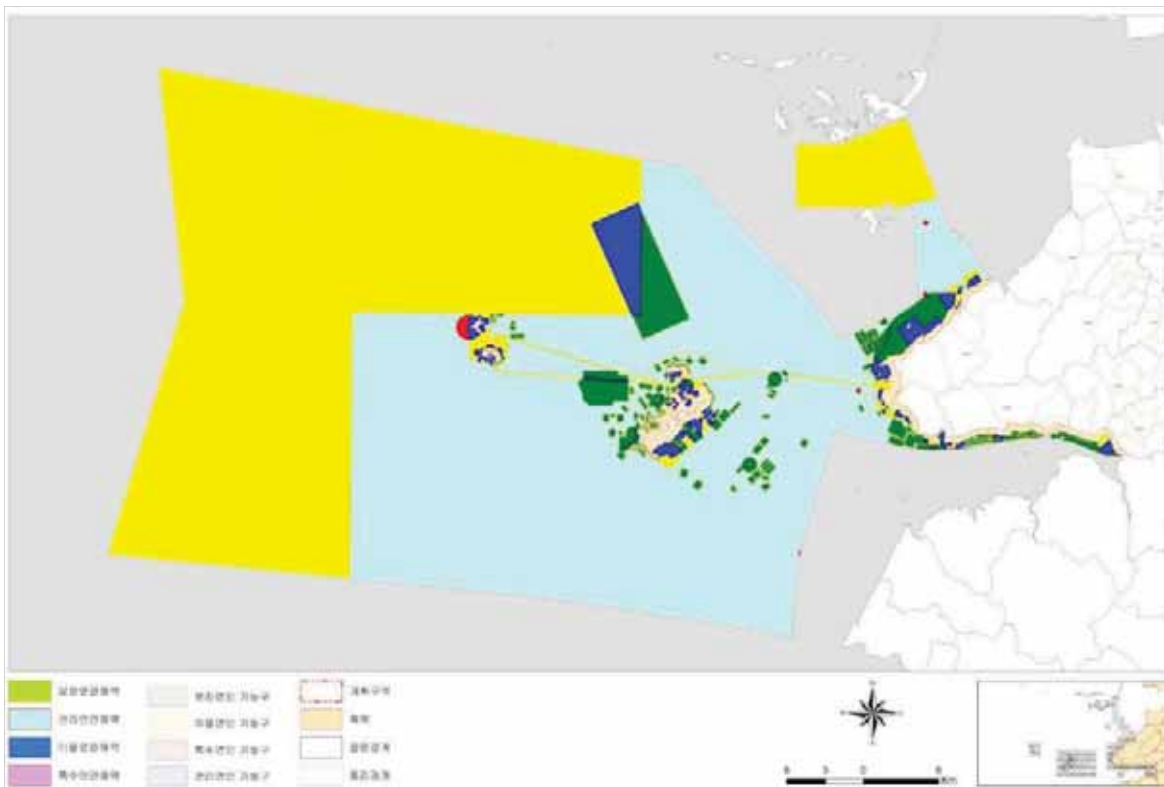


자료 : 김제시, 2014, 김제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그림 2-14〉 전북 연안해역기능구(안) 현황(계속)



자료 : 고창군, 2018, 고창군 연안관리지역계획(안)



자료 : 부안군, 2014, 부안군 연안관리지역계획(안)

(2) 공유수면 매립

□ 전북연안에 위치하는 공유수면매립계획은 36개소, 461.23km²에 달함.

- 36개소 중 기본계획 반영지구는 22개소, 454.69km²이며, 타법 의제에 따른 매립 사업은 14개소, 6.54km²임.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립면허를 관리하는 항만구역 내 매립예정지구는 총 15개소로 그 면적이 8.30km²이며, 항만구역 외 매립수요는 21개소로 452.93km²의 면적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표 2-32〉 전북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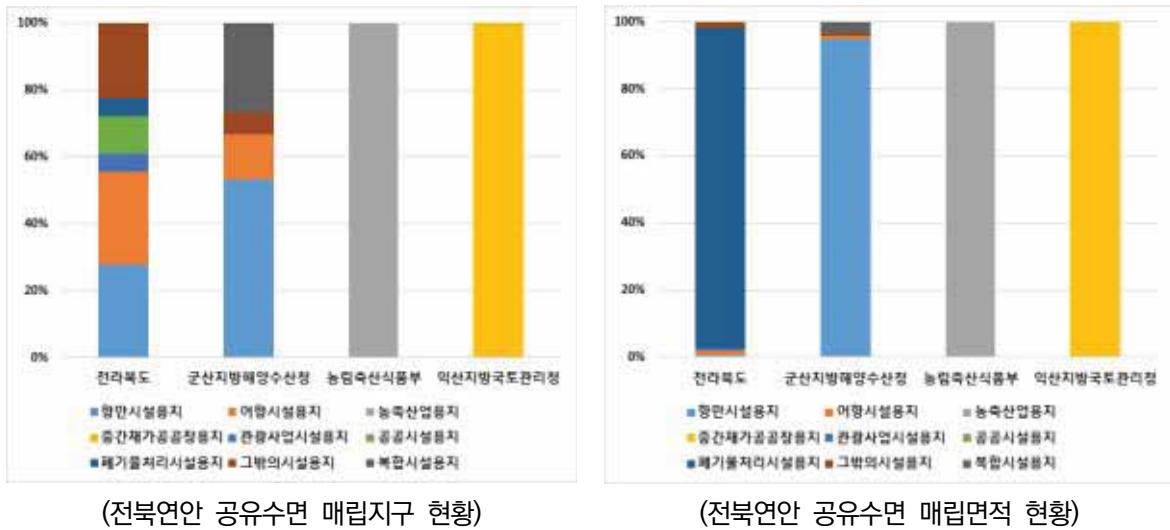
매립목적**	면허관청									
	전라북도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농림축산 식품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합계	
	개소	면적 (km ²)	개소	면적 (km ²)	개소	면적 (km ²)	개소	면적 (km ²)	개소	면적 (km ²)
항만시설용지	5	0.03	8	7.87	-	-	-	-	13	7.90
어항시설용지	5	0.05	2	0.08	-	-	-	-	7	0.13
농축산업용지	-	-	-	-	2	429.00	-	-	2	429.00
중간재가공 공장용지	-	-	-	-	-	-	1	19.64	1	19.64
관광사업 시설용지	1	0.03	-	-	-	-	-	-	1	0.03
공공시설용지	2	0.01	-	-	-	-	-	-	2	0.01
폐기물처리 시설용지	1	4.09	-	-	-	-	-	-	1	4.09
그밖의 시설용지	4	0.08	1	0.05	-	-	-	-	5	0.13
복합시설용지	-	-	4	0.30	-	-	-	-	4	0.30
합계	18	4.29	15	8.30	2	429.00	1	19.64	36	461.23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 타당성 검토 연구

* 공유수면 매립수요현황의 건수 및 면적은 실효된 지구를 제외한 결과임

** 매립목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관련) 1~17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르되, 법률상 열거하는 2개 이상의 매립목적에 포함할 시 복합시설용지로 구분함

〈그림 2-15〉 전북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3) 항만 개발

□ 무역항인 군산항, 연안항인 상왕등도항, 새만금신항 개발이 추진 중

- 군산항 육성의 기본 방향은 전북지역의 물류거점항만이자 내항 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항만 조성으로 설정
 - 배후 산업단지 발생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배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
 - 내항지역의 친환경고부가가치 항만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표 2-33〉 군산항 개발 수요

외곽시설	접안시설	친수시설	임항교통시설	기타시설
방파제 250m 준설토 투기장 호안 4,170m	비응항 어선접안시설 1식	금란도 친수시설 2,027천㎡	-	다목적 관리부두 1식 소형역무선부두 1식 내항 침수방지시설 1식 육상전원공급설비 1식 군산항 항입구 준설 1식 1~3부두 항로준설 1식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2021-2030) 재구성

-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을 목표로 항만·물류 기반 인프라를 적기에 조성하고,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을 정립, 침도시형 항만 건설을 방향으로 설정하여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임.

〈표 2-34〉 새만금 신항 개발 수요

외곽시설	접안시설	항만배후부지	임항교통시설	기타시설
방파제 0.4km 호안 16.301km	9선석 2.97km	4,514천㎡	도로 4.085km	관리부두 1식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재구성

- 연안항인 상왕등도항은 서해중부 영행관리 요충 항만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편의 시 설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표 2-35〉 상왕등도항 개발 수요

외곽시설	접안시설	항만시설용부지	임항교통시설	기타시설
방파제 151m 호안 95m	해경부두 110m 선착장 14m(폭)	-	-	준설 및 매립 1식 오폐수 처리시설 1식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2021-2030) 재구성

- 마라나항만은 총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격포 마라나(부안, 운영중)를 제외한 4개항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2-36〉 마라나항만 개발 대상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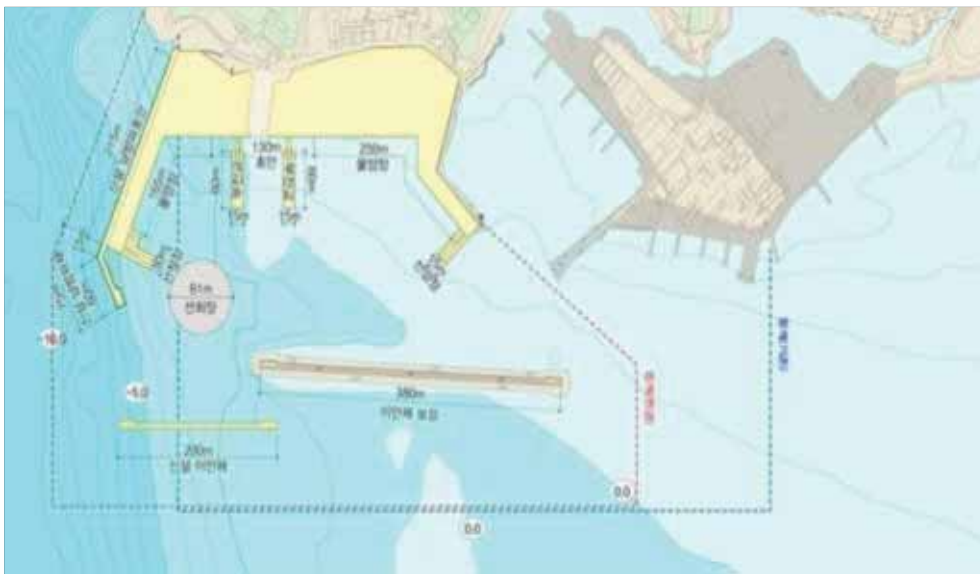
명칭	위치	항만 및 어항구역	비고
격포 마라나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16 일원	기타연안	기존(운영중)
고군산 마라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 17-1 일원	항만	기존
비응 마라나	군산시 비응도동 36-5 일원	항만	기존
궁항 마라나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 71-8 일원	기타연안	추가
심포 마라나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 일원	내수면(새만금)	추가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2차 마라나항만 기본계획(2020 ~ 2029)

(4) 어항 개발

-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개야도항과 어청도항 2개소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2018년 군산시 개야도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수산물 생산거점 어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선부두 확충, 어구보관창고 및 위판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함.

〈그림 2-16〉 개야도항 개발 계획 평면도



〈표 2-37〉 국가어항 신규 개발

(단위 : 백만원)

명칭	위치	구분	국가어항 지정시기	사업비	비고
개야도항	전라북도 군산시	국가어항	2019	85,300	설계용역 2021년 추진 예정

자료 : 전라북도, 2019, 개야도항 국가어항 지정 보도자료

- 어청도항은 기상 악화 시 긴급대피 어선의 안전한 수용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출어선의 선수품 공급과 도서민의 생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

〈표 2-38〉 어청도항 국가어항 개발 계획

(단위 : m,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까지		2020시행		잔사업비		2021예산(안)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8,686		-		555		18,131		3,737
1.시설비		16,361		-		500		15,861		3172
물양장	180	7,449						7,449		1,021
호안	37	565						565		-
기존시설보강	1식	874						874		-
부잔교	정비1식	1,533			1식	450		1,083		1,083
부대공	1식	4,203						4,203		634
사후환경조사	1식	1,737				50		1,687		434
2.감리비	1식	2,284		-		50		2,234		559
3.시설부대비	1식	41		-		5		3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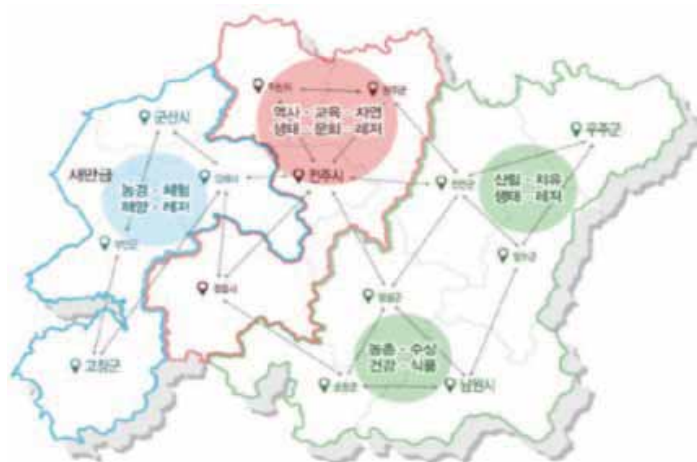
자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18, 어청도항 국가어항 개발계획

(5) 해양관광 및 레저

□ 새만금해양관광권 개발이 제6차 전북권 권역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

-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등 연안 시군이 새만금해양관광권으로 설정되어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거점 육성, 해양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특화 개발, 역사문화 자원의 융합관광, 지역특산물 연계 웰빙 관광지역으로 특성화 등 4대 추진전략에 따라 개발될 예정임.

〈그림 2-17〉 전북 연안 관광거점 및 개발방향



자료 : 전라북도, 2017, 제6차 전라북도 권역 관광개발계획

-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된 해양관광·레저 관련 계획은 총 5건이 있으며, 어항, 해수욕장, 새만금, 도서, 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계획 수립
- 5건의 해양공간 대상 관광개발사업 중 3건이 부안군에 집중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비는 군산시 고군산군도 해양관광거점 조성 사업에 배정되어 있음

〈표 2-39〉 관광개발계획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모항 관광지	부안군	143,082	2000~2020	15,012
위도해수욕장관광지	부안군	148,077	1994~2021	50,352
새만금 아리울 레이싱 파크	부안군	미정	219~2021	30,000
고군산군도 해양관광거점 조성	군산시	미정	2013~2025	155,476
국가습지 고창갯벌 해양생태벨트 조성	고창군	1,400,000	2019~2023	40,000

자료 : 전라북도, 2017, 제6차 전라북도 권역 관광개발계획, 재구성

(6) 신재생에너지 개발

- 고창~부안 해상을 대상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1단계)을 마치고 시범단지 조성사업(2단계)을 추진 중
- 총사업비 12조 4,573억 원을 투입하여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2-40〉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구 분	1단계(실증단지)	2단계(시범단지)	3단계(확산단지)	
사업위치	고창·부안	고창·부안	고창·부안	
사업규모	60MW (3MW×20기)	400MW (5.5MW×73기)	2,000MW (8MW×250기)	
사업기간	'11~'19년	'20~'24년	'21년 이후	
사업비	4,573억원	약 2조원	약 10조원	
주관사	한국해상풍력	한국해상풍력	한전, 민간발전사	

자료 : 전라북도, 2020, 서남권 실증단지 공사 추진 및 발전현황

- 실증단지는 2012년 12월 특수목적법인(SPC)설립하고 2019년 10월 20기의 풍력 터빈에서 발전을 시작함.
 - 한국해상풍력(주) SPC설립 : '12.12월

-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인·허가 협의 완료 : '14.10월
- 실증단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산업부) : '16. 3월
- 실증단지 공사 착공 : '17. 5월
- 실증단지 해상변전소 설치 완료 : '18. 5월
- 실증단지 풍력터빈 10기 설치완료 : '18.12월
- 실증단지 풍력터빈 20기 설치완료 및 3기 발전개시 : '19. 7월
- 실증단지 풍력터빈 20기 발전개시 : '19.10월

□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의 풍황자원 측정, 해양환경 조사,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조사 수행

○ 2020년부터 2년간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공동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굴사업 선정 : '20.9월
- 공공주도 해상풍력 상생협의회 구성 및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 : '21.3월
-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 승인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점사용 등) : '21.5월
- 풍황계측기 설치 및 자원조사, 지역 커뮤니티 조사 수행 : '21.상반기
-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추진(약 1.5GW) : '22.

〈그림 2-18〉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풍황자원 측정위치



자료 : 국가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2021년도) 내부자료

- 전북 서남권(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지정
 - 2021년 12월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공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49호)
 - 사업명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 실시기관 : 전라북도
 - 설비용량 및 계통전압 : 2,400MW, 345kV
 - 총사업비 및 사업자 : 14조원/ 한국해상풍력, 한전, 추후공모
 - 사업기간 : '20.1월 ~ '28. 12월(9년)

〈그림 2-19〉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개요

자료 : 2021년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 제공

(7)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수요

- 새만금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을 농업용지 구간은 Ⅳ등급, 도시용지 구간은 Ⅲ등급 달성을 위해 2조 8,905억원 투자
- 상류 수질대책
 - (점오염원 저감 대책) 총인처리시설(21개소), 마을하수도(139개소),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6개소), 하수관거 확충(914km) 등

-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7개소), 생태하천 복원(22개소), 제외경작지 초지조성(7개소) 등
- (축산분뇨 영향 저감대책) 공공축산분뇨처리장 증설 및 자원화(4개소), 축산단지 바이오순환립 조성(익산 왕궁), 축사시설 현대화(김제 용지), 왕궁 환경개선대책 등
- (하천유지용수 확보 대책) 하수처리수 재이용, 저수지 증고, 어우보 운영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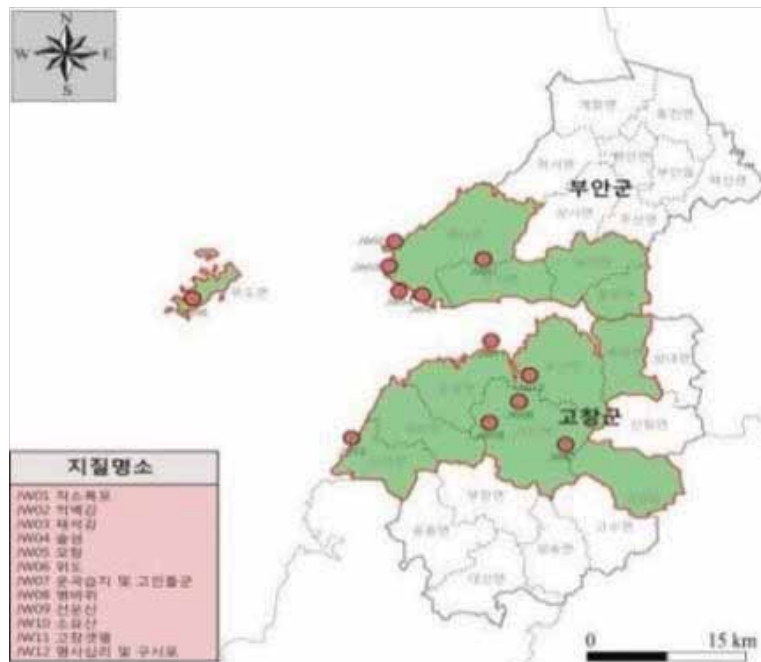
○ 호내 수질대책

- (유입수질 오염도 저감) 호내에 침전지, 인처리시설 설치 등
- (호소관리) 쓰레기 수거, 적녹조 대책, 오염우심지역 준설 등
- (기타 환경관리대책) 하·폐수 호내 유입방지, 매립토 유출방지 등

□ 고창-부안 권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지정 이후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 관점으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
- 고창-부안 권역을 대상으로 환경부 인증(2017년) 이후 UNESCO가 후원하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그림 2-20〉 전북 연안 국가지질공원 현황



자료 : 데일리전북, 2017.08. 30. '고창갯벌·부안적벽강 등 전북 서해안 12개소 국가지질공원 확정'

- 전국 갯벌복원사업 실시('10~) 이후 총 11개소, 1.5km² 면적 복원 및 0.5km 해수 소통 사업을 수행하였음.¹⁸⁾
- 전북연안은 고창연안에만 2개소(1.35km²)가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음.
 - 전북의 갯벌복원사업 대상지는 곰소만 일원에 분포하는 염전과 축제식 양식장 시설이 존재하는 공간임.
 - 염전 및 양식장 내부 해수가 자연 유입되도록 개선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갯벌 재생형 사업을 추진

〈표 2-41〉 갯벌 복원 대상지 상세 현황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지원 (70%)	복원규모 면적(m ²)	특이사항
완료	고창	'10~'13	7,143	5,000	675,000	갯벌재생형
완료	고창 곰소만	'17~'21	4,430	3,100	236,000	갯벌재생형
합계		-	11,573	8,100	911,000	-

자료 : 해양수산부, 2021.9,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현황; 전라북도, 2021, 내부자료

18) 해양수산부, 2021,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4. 해양공간관리 현안

1) 일반주민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전북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공간활동 및 해양공간관리 인식을 조사하였음.
 - 조사 대상 : 전북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포함 총 374명
 - * 전북의 해안을 접하고 있는 시·군의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 354명, 공무원 : 20명)
 - 조사 기간 : 2019년 12월 15일~2020년 1월 6일 (약 3주)
 - 조사 방법 : (지역주민)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전문가 혹은 공무원) e-mail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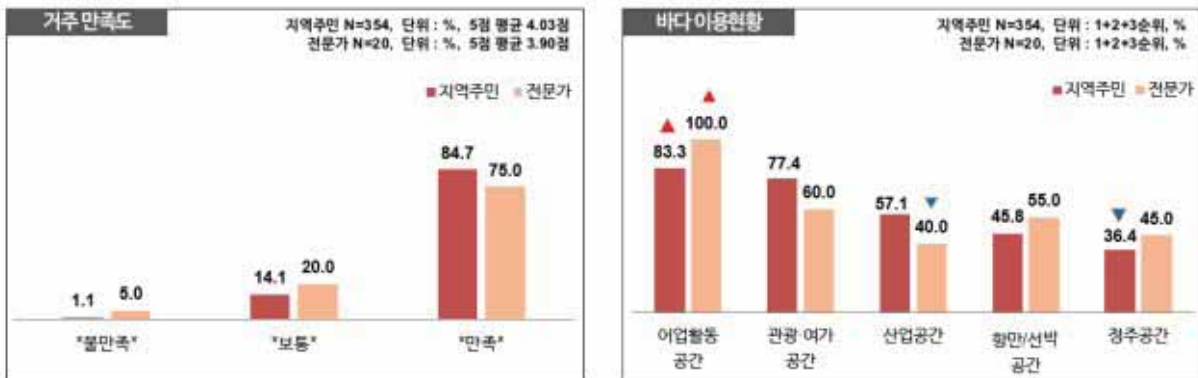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가. 해양공간인식

□ 거주 만족도 및 전북 바다 이용현황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거주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4.03점, 3.90점으로 나타남
- 바다 이용 현황의 경우, 지역주민은 바다를 ‘어업활동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100%가 바다를 ‘어업활동 공간’으로 인식함

〈그림 2-21〉 주민 거주만족도 및 바다 이용현황



□ 바다 고유자원 및 바다 공간 지역주민 혜택 인식도

- 바다 고유자원에 대한 의견은, 지역주민은 ‘해양생태 경관자원’이 63.3%, 공무원은 ‘해양역사·문화자원’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바다공간 혜택 인식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주민 3.73점, 공무원 3.95점으로 나타남
- 바다공간이 주는 혜택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대다수 긍정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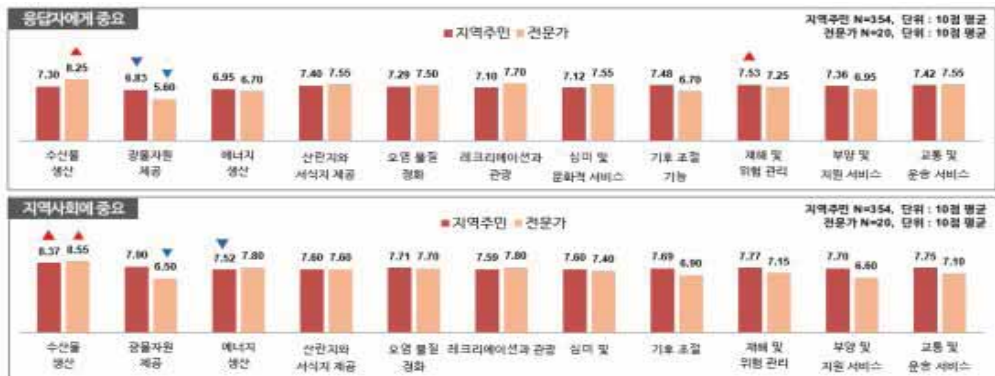
〈그림 2-22〉 바다 고유 자원의 유형 및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



□ 바다로부터의 혜택

- 응답자에게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에 관하여 지역주민은 ‘재해 및 위험 관리’를 7.53점으로, 공무원은 ‘수산물 생산’을 8.25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
-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에 관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 모두 ‘수산물 생산’을 각각 8.37점, 8.55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3〉 응답자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나. 주요 해양활동 간 갈등

□ 과거 10년 전 대비 전북 바다 이용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45점, 4.30점으로 나타남
-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복잡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주민 3.65점, 공무원 4.00점으로 나타남

〈그림 2-24〉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 해양공간 이용 갈등 : 지역주민

- 지역주민에게 해양공간 활동들이 서로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 알아본 결과, 어업 활동의 경우 '연구·교육'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갈등이 예상됨

〈표 2-42〉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해양공간 용도	어업 활동	공재·경유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공재·경유	3.06점							
(3) 에너지개발	3.13점	3.16점						
(4) 해양관광	3.16점	3.15점	3.10점					
(5) 환경·생태	3.03점	2.94점	3.00점	3.04점				
(6) 연구·교육	2.84점	2.89점	2.86점	2.92점	2.90점			
(7) 항만·항행	3.07점	3.06점	3.10점	3.21점	3.08점	3.12점		
(8) 군사활동	3.20점	3.04점	3.10점	3.07점	3.10점	3.20점	3.05점	
(9) 안전관리	3.19점	3.05점	3.06점	3.11점	3.11점	2.98점	3.02점	2.8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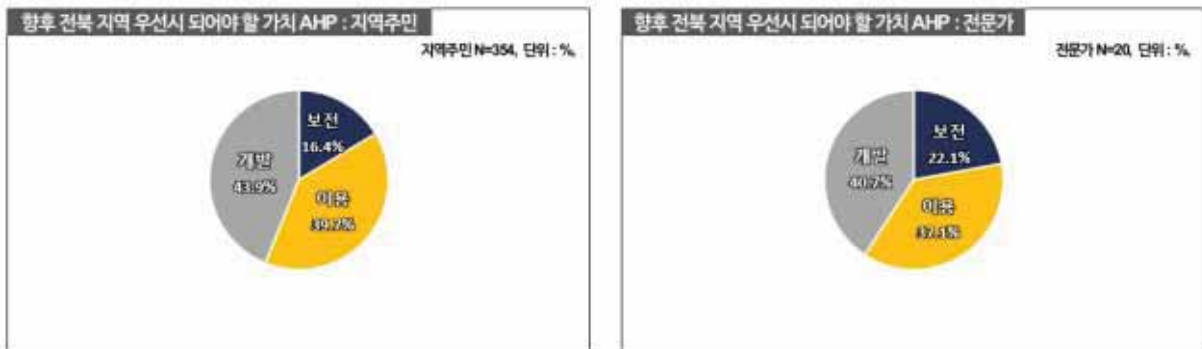
* 주) 1점에 가까울 수록 '갈등 없음', 5점에 가까울 수록 '갈등 클 것' 응답으로, 3점 이상인 경우 '갈등 예상'으로 분류

다. 해양공간계획 제도 및 전북 해양공간관리 방향

□ 향후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

- 지역주민의 경우, 향후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시 되어야하는 바다의 가치에 대한 의견은 ‘개발’ 43.9% > ‘이용’ 39.7% > ‘보전’ 16.4%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경우, 향후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시 되어야하는 바다의 가치에 대한 의견은 ‘개발’ 40.7% > ‘이용’ 37.1% > ‘보전’ 22.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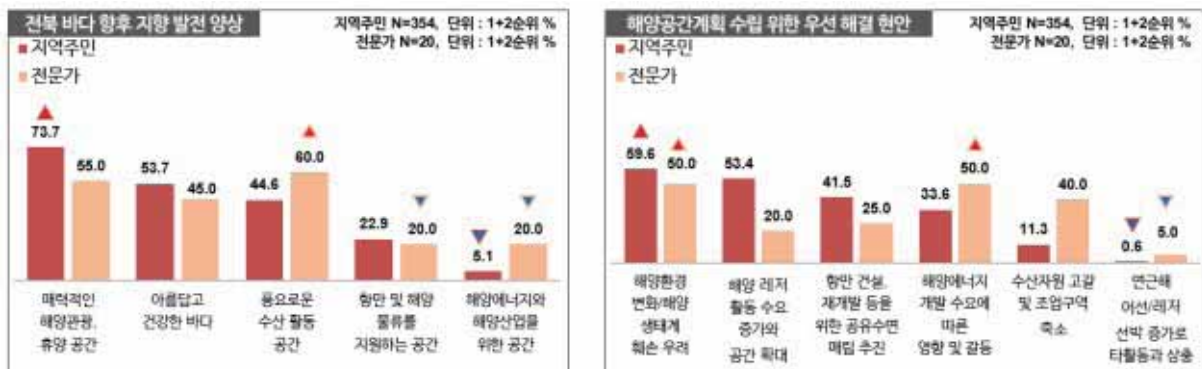
〈그림 2-25〉 향후 전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 AHP



□ 전북 바다 향후 발전 양상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해결 현안

- 전북 바다의 향후 지향 발전 양상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매력적인 해양관광, 휴양 공간’ 73.7%로 가장 높고, 공무원은 ‘풍요로운 수산활동 공간’ 60.0%로 응답함
- 해양공간관리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해양환경 변화,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가 각각 59.6%,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26〉 전북 바다 향후 지향 발전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현안



2) 해양공간관리 현안

□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로 공간경쟁 및 환경영향 문제 제기

- 당초 1단계 실증사업(2012-2015), 2단계 시범사업(2015-2017), 3단계 확산사업(2018-2020)으로 총 2.5GW 생산 계획
-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사업 1단계(실증단지)* 완료 후 2단계(시범단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조업감소로 인한 주민수용성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늦은 1단계 실증단지 준공 완료('19.12.)
-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2.4GW)*
 - * 집적화단지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고창, 부안) 개최, 환경입지 컨설팅 및 산업부 지정 신청 절차 진행

□ 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 등)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세계 최대 규모(3GW급)의 태양광 발전설비, 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고, 제조기업, 연구기관 유치 등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곰소만 갯벌 보전, 복원 및 생태관광자원 활용 수요

-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 습지보호지역 등록으로 곰소만 내 갯벌에 대한 생태관광 수요 발생하고, 다양한 생태관광사업(고창 세계프리미엄갯벌 생태관광지 조성 등) 추진 중

□ 항만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및 준설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우려

- 새만금신항(1단계 '09~'30), 고군산마리나항만, 비응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과 통항 선박의 항로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 수요 발생
- 3개 항만이 고군산 군도 인근 해역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환경의 변화 우려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 정책방향의 성격

- 해양공간계획은 공간에 분포하는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는 제도적 수단이지만, 특정 자원 또는 환경에 특화된 계획이 아닌, 다양한 해양수요가 상충 없이 조화롭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임.
 - 즉, 다양한 해양수요가 상충 없이 조화를 이루어 각 수요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통합적 계획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해양공간계획에 반영된 각 수요별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 해양공간계획은 현재의 공간관리구조를 파악하여 기능을 배분하고 조정한 결과물인 해양용도구역으로 실현됨으로, 정량적 정책목표 설정이 불가능하지만 행위주체들의 행동을 결정할 이정표 설정은 필요함.
 -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은 ‘정책방향’을 통해 각 행위주체들의 용도구역별 공간할당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최소상충과 조화의 원칙’을 기초로 해양공간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정책방향의 성격

- 행위주체들의 공간할당에 대한 인식증진 및 최소 상충과 조화의 원칙을 기초로 현재의 해양공간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 정책방향 도출 과정과 구성요소

- 행위주체들의 공간할당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행위결정과정에서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과 정책방향에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음.

〈그림 2-27〉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틀로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 대상 공간의 특성을 분석해야 함. 계획대상 공간특성 분석 대상은 자연환경 특성, 사회경제 이용특성, 국가정책 및 계획 수요 등임.
- 다음 단계는 공간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각 수요별 상충현황(상충내용과 수준)과 현재의 관리자원·역량(자료, 정보, 인력,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는 과정임.
- 마지막으로 공간특성, 상충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해상충 조정방향, 해양공간 배분'을, 관리자원·역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제시함.

□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

- 상기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음.

- ① 항만, 에너지, 관광, 어업 등 해양활동 공간의 합리적 배분과 복합적 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
 - 해양공간에서 다양한 항만, 에너지, 레저·관광, 수산업 활동의 잠재성과 지역 경제에 가져올 이익을 고려한 공간 할당
 - 해양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과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용도 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활동의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 ② 갯벌 등 해양생물서식지 유지와 해양생태·경관 가치 보전을 위한 환경·생태계관리 구역 지정
 -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지원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가치창출의 기반으로 활용 가능
 - 새만금 남측 자연해안 및 양호한 갯벌생태계 유지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 검토
- ③ 항만·항행 관련 갈등방지를 위해 항만·항행구역 실효적 관리 및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안전관리구역 지정

- 항만구역 내에서 다른 공간이용수요는 항만 운영 및 항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가능하나, 대형선박과 어선·유어선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
- 상층 활동(조력발전-유어선)이 존재하거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공간(대형선박-낙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구역 지정


④ 신규 개발 수요에 따른 기존 행위와 갈등 사전 조정 기제 구축

- 신규 개발에 따른 어업 등 타 활동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
- 지역협의회를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협력 체계 마련 및 의사소통 개선 강화



제3장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 해양공간특성평가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제3장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 해양공간특성평가

1)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 해양공간특성평가(이하, “특성평가”)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임.

* 「해양공간계획법」제2조제7항 :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함.

- 해양공간의 환경·생태, 자원, 이용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양의 핵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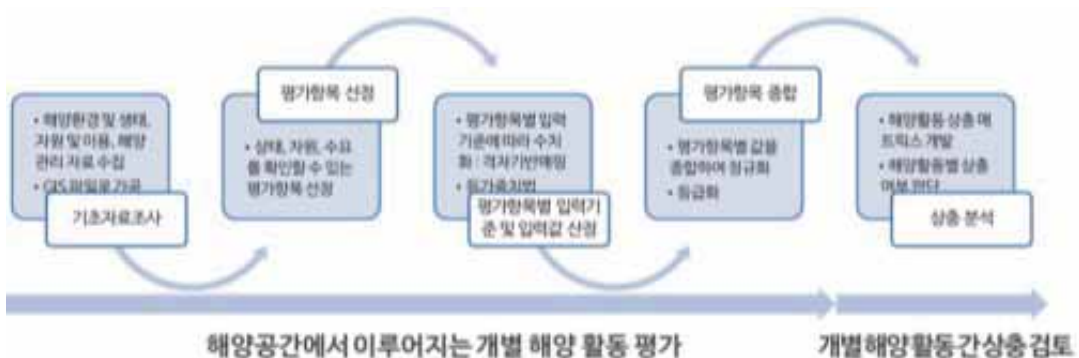
- 특성평가는 핵심 해양활동을 자료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 하는 과정임.

-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활동을 대표하는 해양공간정보를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평가단위인 격자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중첩 분석(overlay analysis) 하여 해양공간 특성을 등급화하고 핵심 활동 공간을 식별

- 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용도구역 간 상충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

* 「해양공간계획법」제5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제12조에 따라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13조 제2항에서는 해양공간특성평가에 대한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그림 3-1〉 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2) 기초자료 조사·수집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목록의 자료를 우선하여 조사·수집
-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관련 법정조사, 연구보고서, 해양공간정보, 행정통계 등을 검토

〈표 3-1〉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1. 기본 해양공간정보	가. 해도(海圖)	국립해양조사원
	나. 수집	
	다. 조위(潮位: 조수에 의한 해수면 높이) 변화	
	라. 조류·해류	
	마. 해역 경계	
	바. 인공·자연해안선	
	사. 약취저지조선	
	아. 지적 경계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 무인도서	해양수산부
	차. 해양환경관측 지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카.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조사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2. 해양환경·생태	가. 수온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나. 염분	
	다. 갯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라.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자료	
	마. 해양보호생물종	
	바. 해양생태도	국립수산과학원
	사. 이상해역환경 정보	
	아. 적조출현속보	
	자. 해파리출현 정보	
	차. 해역이용협의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타. 해양환경영향조사서	
	파.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문화재청	
너. 문화재 정보, 문화재유존정보 등		
3. 어업활동	가. 어항시설	해양수산부
	나. 어항개발계획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다.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허가·관리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라.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 자료	
	마. 산란·서식지 조사 자료	
	바. 수출패류생산해역위생조사 자료	
	사. 바다숲·바다목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 인공어초	
	자. 천연해조장·잘피(해수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식물) 조사 자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차. 연근해어획실적(소해구별·조업위치별)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선박패스(V-PASS) 장치 동적정보	해양경찰청
	타. 어선등록정보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파. 양식장 시설 자료(위성영상판독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 수산자원관리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 면허어업권(양식장 등)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4. 골재·광물	가. 골재자원 조사자료(부존량(賦存量) 등)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나. 골재유망단지분할도	
	다.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라. 해저광물개발구역	산업통상자원부
	마. 광업권(채굴권·탐사권)	
	바. 바다골재채취허가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5. 해양에너지	가. 조류에너지	해양수산부
	나. 조력에너지	
	다. 파력에너지	
	라. 온도차에너지	
	마. 해상풍력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바. 석유·천연가스·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자원 조사 자료	
	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산업통상자원부
	아. 전기사업허가구역	
6. 해양관광	가. 해수욕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 마리나 시설	해양수산부
	다. 낚시 활동 및 신고 정보	한국어촌어항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라. 어촌체험휴양마을	
	마. 여객선 항로 및 이용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구역	해양경찰청
	사.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	국토교통부
	아. 해양관광진흥지구	
7. 항만·항행	가. 항만시설	해양수산부
	나. 항만기본계획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다. 선박운항정보	
8. 군사활동	해상사격 훈련구역 등	국방부, 국립해양조사원
9. 해양안전·관리	가. 해양시설 자료	해양수산부
	나. 해상교통 안전진단 등 정보	
	다. 공유수면매립 예정지	
	라. 바닷가실태조사 자료	
	마. 해양사고 자료	해양경찰청
	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주 : 위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바다와 바닷가에 설정된 이용·개발 및 보전·보호 구역 정보 등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3)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선정

- 특성평가의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해양용도구역 분류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역별 해양활동을 확인하였음.
- 주요 해양활동을 확인하고, 개별 해양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자원의 부존 현황 및 가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 이에 따른 공간특성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격자별 입력기준	용도별 종합점수
어업활동	• 연근해 어획량(5년평균)	5개 등급(상위 3개)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연근해 어선밀집도(5년평균)	5개 등급(상위 3개)	
	• 어업 관련 보호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양식장(면허어업권)	존재유무(유=1, 무=0)	
	• 어항	존재유무(유=1, 무=0)	
	•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존재유무(유=1, 무=0)	
골재·광물 자원개발	• 광업권 등록(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골재유망단지(유망단지 및 부존량)	존재유무(유=1, 무=0)	
	• EEZ 광물자원	존재유무(유=1, 무=0)	

구분	평가항목	격자별 입력기준	용도별 종합점수
에너지개발	• 발전소(풍력실증단지, 조력)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
	•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해수온도차 등의 자원량 - 조류 : 평균유속 > 2m/s(1등급), 1.5m/s (2등급) - 조차 : 조차 5m 이상(1등급) - 파력 : 10년 평균 > 2m/s(1등급), 1m/s(2등급) - 해상풍력 : 50m 상공 > 6m/s(1등급) - 해수온도차 : 해수온도차에너지	1등급=1, 2등급=0.5	
항만·항행	• 발전단지 예정구역·사업 허가 구역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 ※ 항만 및 항행 활동과 관련한 평가항목은 법제도상 지정된 구역을 토대로 설정
	• 항만구역(무역항, 연안항)	존재유무(유=1, 무=0)	
	• 신항만예정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항로(항로 및 통항분리제도 등)	존재유무(유=1, 무=0)	
	• 정박지(정박지, 묘박지)	존재유무(유=1, 무=0)	
해양관광	• GICOMS 통항밀집구역	5개 등급(상위 3개)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해수욕장(해안)	존재유무(유=1, 무=0)	
	• 마리나항만(해안), 마리나항만 예정구역(해안)	존재유무(유=1, 무=0)	
	• 낚시포인트(갯바위, 선상, 유어장)	존재유무(유=1, 무=0)	
	• 레저구역	존재유무(유=1, 무=0)	
환경·생태계 관리	• V-PASS 기반 낚시어선 활동	5개 등급(상위 3개)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갯벌	존재유무(유=1, 무=0)	
	• 염생식물	존재유무(유=1, 무=0)	
	• 수중식물(잘피, 해조/해초류)	존재유무(유=1, 무=0)	
	• 보호대상해양생물종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생태도	1등급=1/2등급=0.5	
	• 해양생물다양성지수	5개 등급(상위 3개)	
연구·교육	• 연안·해양보호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보호도서(특정/절대보전 무인도서)	존재유무(유=1, 무=0)	
군사활동	• 영해기점 무인도서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관측 부이 등	존재유무(유=1, 무=0)	
안전관리	• 군사 관련 법정구역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해상 사격훈련구역 등)	존재유무(유=1, 무=0)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대형선박 및 낚시활동 상충구역	5개 등급(상위 3개)	
안전관리	• 해양시설주변구역(발전소 등)	존재유무(유=1, 무=0)	
	• 대형선박 및 낚시활동 상충구역	5개 등급(상위 3개)	

4)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 특성평가 대상해역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특성평가지도를 제작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해역 격자구성’,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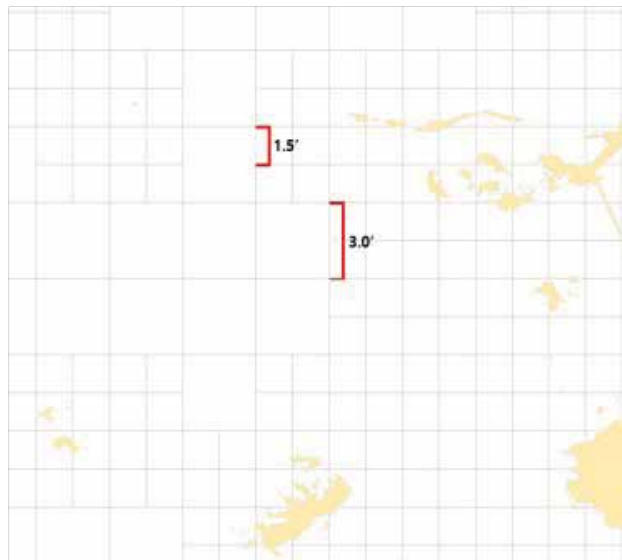
〈그림 3-2〉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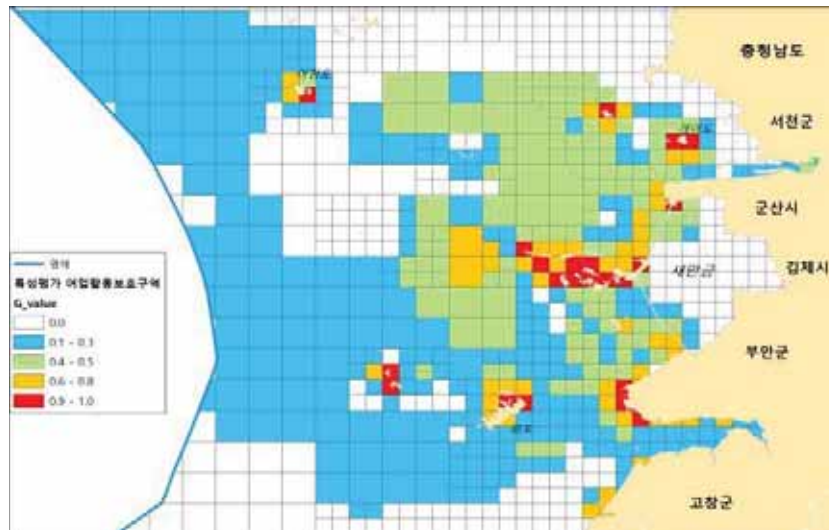
- (대상해역 격자 구성) 공간분석 및 특성평가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영해 내측은 3'×3'(약 5km) 격자, 영해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까지는 15'×15'(약 25km) 격자인 일반 격자를 적용한 격자망도 제작

〈그림 3-3〉 일반격자(연안:1.5'×1.5', 영해내측: 3'×3', 영해외측: 15'×15')만 적용한 격자 구성



-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에 관련된 해양공간정보를 개별 격자의 속성정보로 입력하는 공간정보 격자화 과정을 수행
 -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공간정보 격자화 결과로 입력된 속성정보의 통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기준을 정하되, 개별 평가항목별 점수는 0부터 1까지의 점수 이내에서 부여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각 용도구역별로 관련된 모든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통합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격자망도 공간정보의 속성정보로 입력
-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연근해 어획량(5년 평균어획량, 5개 주요어종 어획량, V-PASS밀집구역), 연근해 어선밀집(5년 평균어획실적), 양식장(면허어업권), 어항,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지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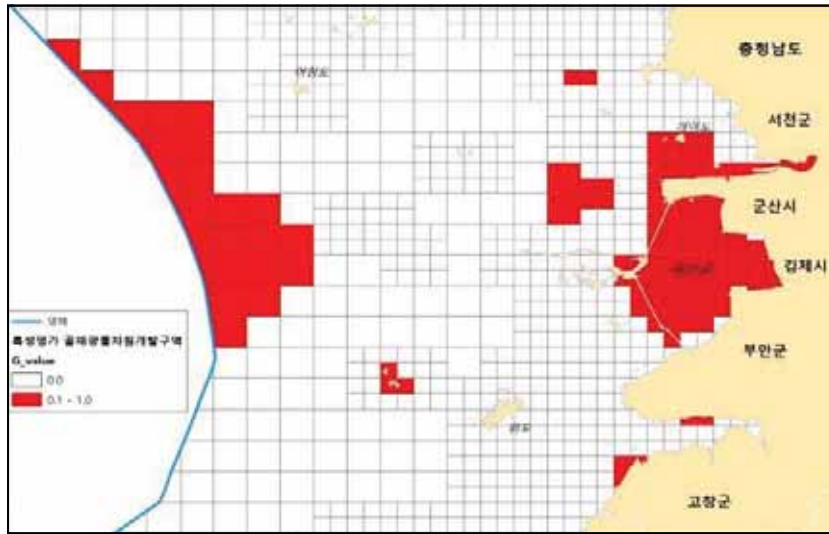
〈그림 3-4〉 전북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광업지적단위광구(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골재채취단지, 바다골재 부존량 등

〈그림 3-5〉 전북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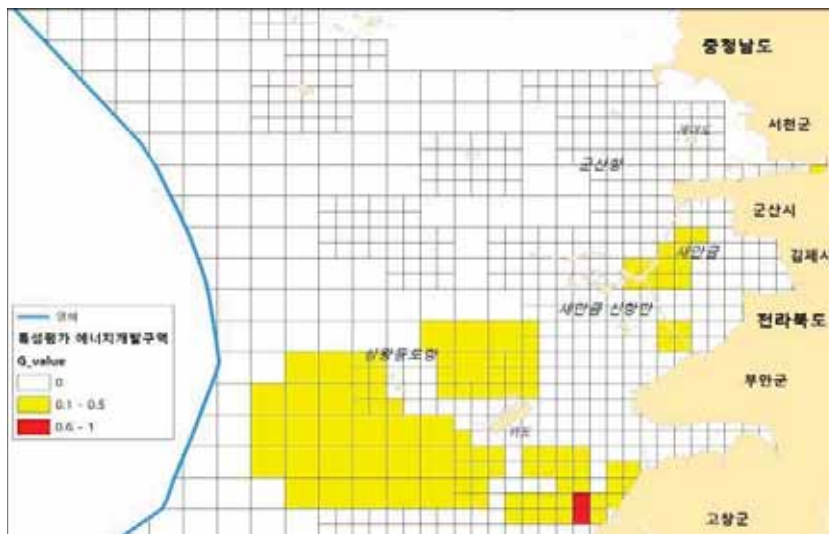
-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새만금 배수갑문, 해상풍력 예정단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해양에너지 자원 부존량*** 등

*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 설비용량 2,400MW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 1단계 풍력터빈 20기(60MW) 발전

*** 해양에너지 발전에 적당한 조건 : 조류는 평균유속 1.5m/s 이상, 조력은 조차 5m이상, 파력은 평균 1m/s 이상, 해상풍력은 풍속 6m/s 이상인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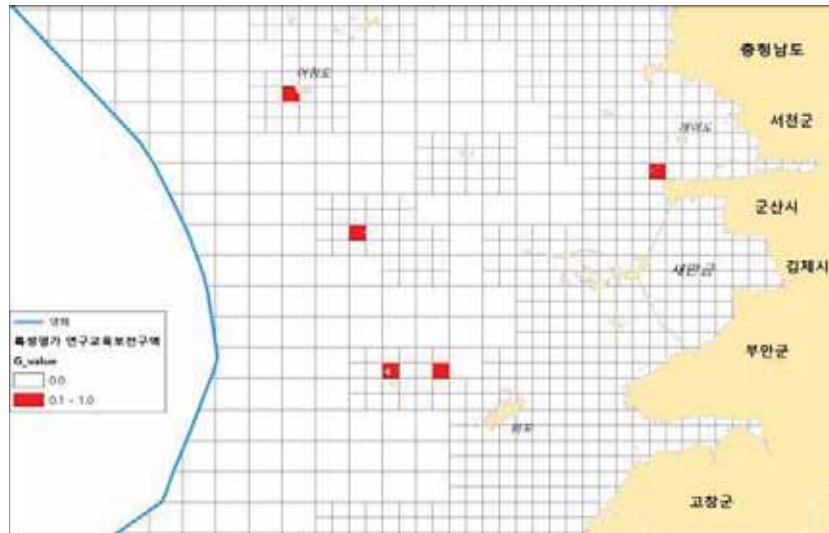
〈그림 3-6〉 전북 에너지개발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연구·교육보전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연구·교육보전구역 공간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목록: 해양관측 부이(국립해양조사원), 영해기점 무인도서(직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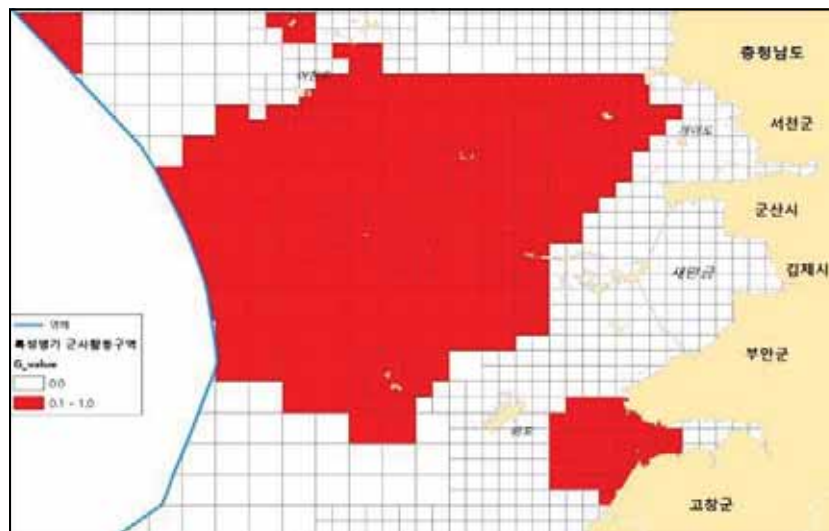
〈그림 3-7〉 전북 연구·교육보전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해상사격 훈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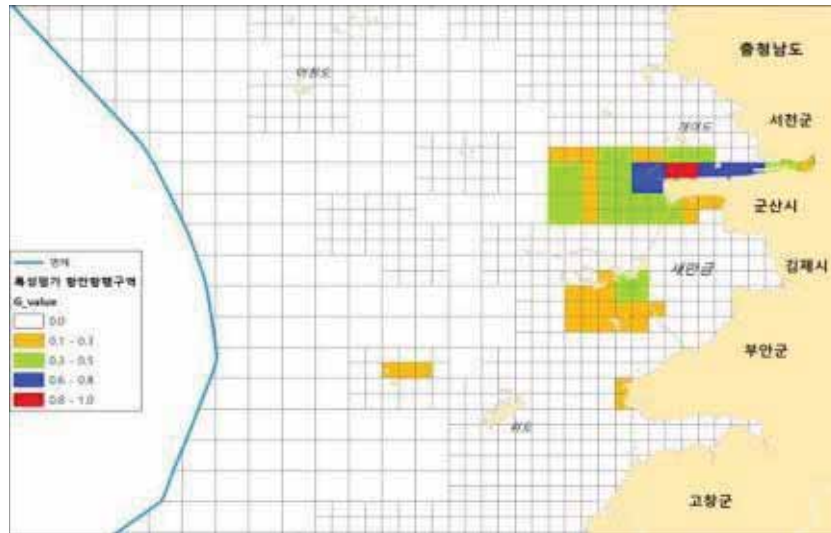
〈그림 3-8〉 전북 군사활동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무역항 및 연안항 항만구역, 신항만, 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정박지, AIS 통항밀집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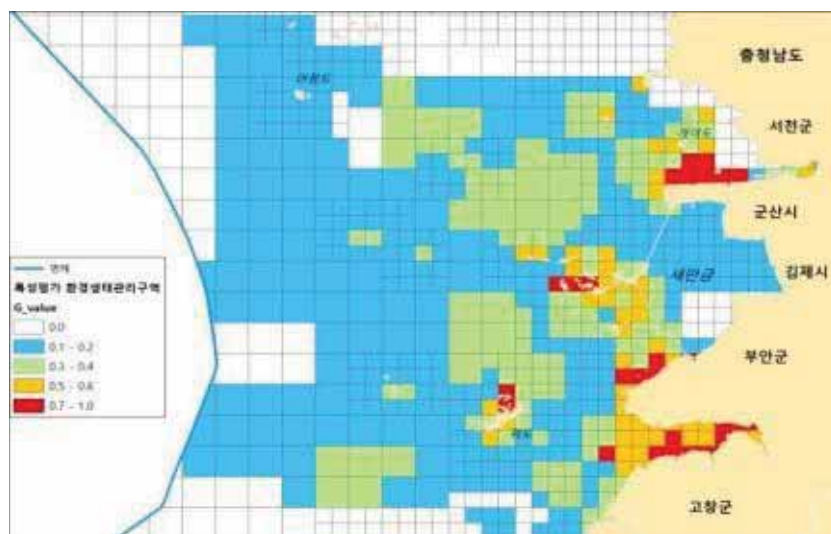
〈그림 3-9〉 전북 항만·항행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갯벌, 염생식물, 수중식물(잘피, 해조/해초류), 해양보호생물 출현 정보, 해양생태도, 해양생물다양성지수, 연안·해양보호구역, 보호도서(특정도서/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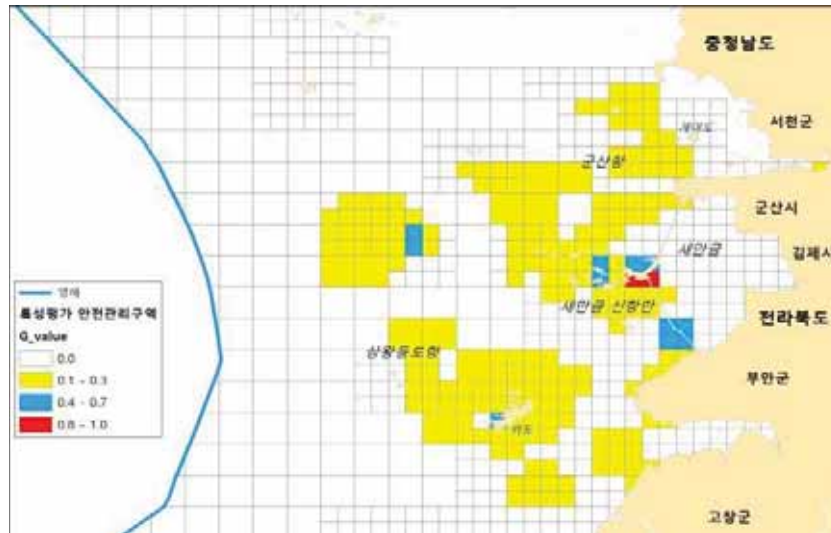
〈그림 3-10〉 전북 환경·생태계관리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대형선박 및 낚시활동상충 구역,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양시설 주변 해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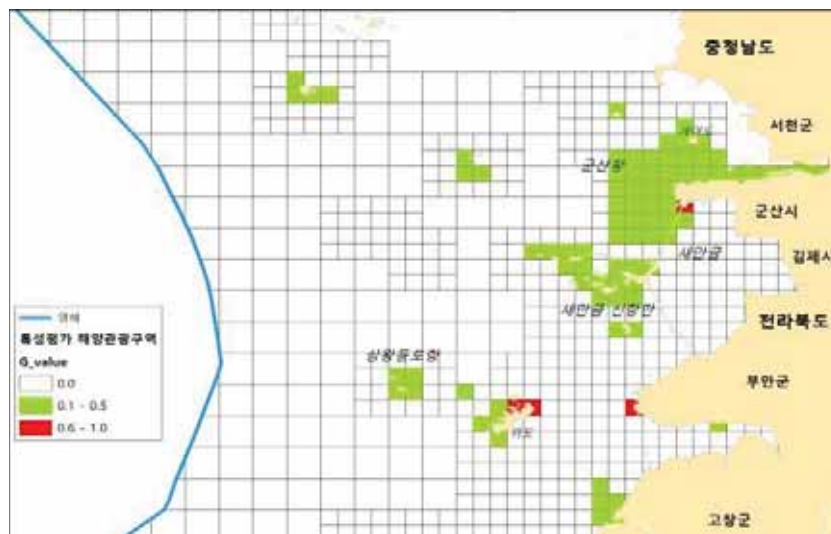
〈그림 3-11〉 전북 안전관리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시설, 낚시포인트 (갯바위, 선상, 유어장), V-PASS 기반 낚시활동 분석 정보 등

〈그림 3-12〉 전북 해양관광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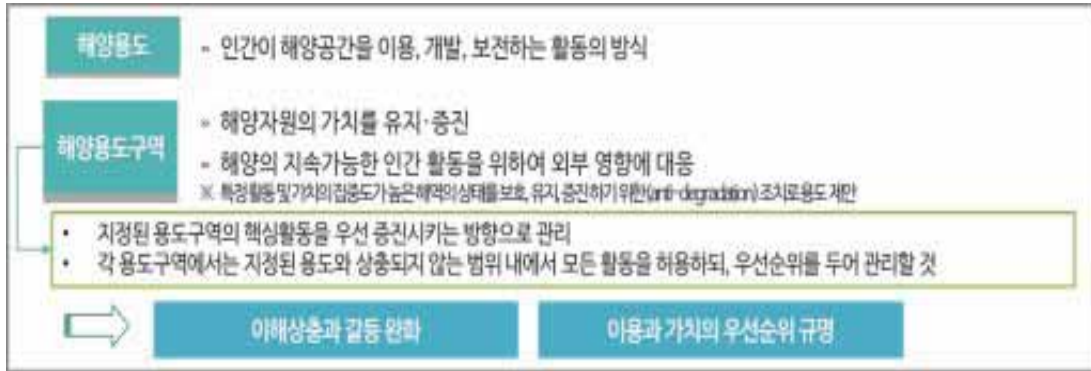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 해양용도구역 개요

-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구역
 - 해양에서 지속가능한 인간 활동을 위해 외부 영향에 대응하고, 해양자원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구역
 - 해양의 인간 활동 간 이해상충·갈등을 완화하고, 이용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규명

〈그림 3-13〉 해양용도구역 지정 목적



- (해양용도구역 구획·지정) 다양한 핵심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에 대해서 해양공간 특성 분석, 상충 분석 및 비교(생태연결성, 정책수요 및 계획 등)를 통해 구획
 - 9개 해양용도구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되어야 하나, 3차원적이고 유동적인 해양의 특성 상 안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은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 (해양용도구역 관리) 지정된 개별 용도구역의 용도를 우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관리
 - 해당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양활동을 허용
 - 현실에서 개별 용도구역 내 이용, 개발, 보전의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동일한 공간에 여러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용도구역 내의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

- 즉,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

* 「해양공간계획법」제12조제2항

□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현황(기존 구역 및 권한 설정), 해양 생태특성 및 해양자원 분포, 현재 이용·활동 상태, 미래 이용 수요를 통해서 설정되어야 함.
 - 현재 가용한 데이터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양공간의 상태 및 여건을 확인 하는 것이 우선임. 이 목적은 생태적/경제적 지역의 분포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이용 특성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임.
-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용도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임.
- (기존 구역 및 권한 설정) 현재 해양에서 일어나 이용·개발·보전 활동은 관련 개별 법률·제도에 따른 구역에서 이루어기 때문에 관련 설정 내용 검토
 - 기존 구역과 상호 호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 지정 혹은 고시된 구역을 고려
-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지속가능한 해양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근간이 되는 생물학적, 생태적 특성 파악이 중요
 - 해양생물·생태적 특성¹⁹⁾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서식지와 관련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해양학적 및 물리적 특성(수심, 해류, 퇴적물 등)을 함께 고려 가능
- (해양자원 분포) 개발·이용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하며, 이러한 자원이 위치한 공간과 분포를 확인
- (현재 이용·활동 상태) 어업, 해운 및 해상, 에너지 개발, 광물자원개발, 해양 관광·레저, 군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시·공간적 분포, 이용 강도, 환경영향 특성을 확인

19) CBD EBSA(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Area) 선정 기준 : 고유성 및 희귀성, 생물종 생애주기에 있어서 중요성, 멸종위기종·감소종·서식지 중요성, 취약성·민감성·낮은 회복력, 생물학적 생산성, 생물학적 다양성, 자연성

- (미래 이용 수요 및 상황 예측) 용도구역 설정을 미래지향적 활동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미래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입 없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때 미래 예측, 대안적 공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공간 변화예측 시나리오 분석 기술 필요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의미
해양공간 특성평가	해양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을 이용·보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핵심가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용도구역 지정,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 * (예) 어업활동, 해양레저·관광, 에너지 개발 등
법제적 현황	기존 법체계와의 상호 호환성 및 해양공간계획법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구역 고려 * (예) 각종 연안·해양보호구역, 법 시행 당시 법적 권한 설정이 이루어진 구역(「해양공간계획법」부칙 제3~4조) 등
해양생태계 특성	생태적 가치와 특정 생태학적 특성 고려 * (예) 해조류·조류 등 서식지, 산란지, 하구,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양공간(Delta+) 등
현재 이용·활동	현재 이용과 활동을 토대로 경제적 기회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 설정 * (예) 어선 어업, 양식, 해사채취, 항행, 관광 등
미래 이용 수요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하였거나 확정가능성이 높은 해양이용·개발계획,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의 용도와 위치 및 규모 등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된 사업, 잠재적 수요와 활동을 평가하여 미래 이용기회를 식별 * (예) 항만·어항 개발계획, 해양에너지 관련 입지, 관광·레저 관련계획 등

-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은 각 용도별 특성에 따라 필수적 고려사항*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지정기준**에 의한 지정 또는 준하는 구역으로 구분
 - *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 현재 데이터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항목이더라도(수산자원 분포, 해양에너지 분포 등) 향후 지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함.
 - **「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부칙 3조) 및 관련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부칙 4조), 해당 용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구역 등
- 現 수준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정 반영(시군구 설명회 및 지역협의회 등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어업활동 보호구역	가. 수산자원량 및 분포 나. 수산자원 산란지 및 서식지 다. 어업생산량 라. 면허어업구역 마. 인공어초 바. 조업 특성 및 분포	가.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나. 「수산업법」에 따른 기르는 어업(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어장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라.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마. 그 밖에 어업활동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골재·광물 자원 개발 구역	가. 골재채취허가 지역 및 광물자원개발 지역 나.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개발로 인한 해저지형의 변화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다. 골재자원의 부존량 및 분포	가.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4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다. 「광업법」제3조제3호의 광업권(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에 설정된 것을 말한다) 또는 「광업법」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라. 그 밖에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에너지 개발구역	가. 에너지의 탐사·개발 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나.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자원량과 분포 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현황 라. 전력망의 송·배전 등 개발이용의 현황 및 여건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제1호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라. 그 밖에 에너지 탐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해양관광 구역	가. 자연자원 : 경승지, 해수욕장 등 나. 문화자원 : 지역축제, 어촌체험마을, 유원지 등 다. 휴양·레저자원 : 캠핑장, 유람선터미널, 수상레저사업장, 바다 낚시공원 등	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나. 「어촌·어항법」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 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 마.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 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 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자. 그 밖에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나. 갯벌, 하구, 해중경관 등 해양서식지 및 경관 다.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라. 바닷새의 서식 현황 및 분포 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바. 해양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및 해저유물 분포	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지역, 습지개선지역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복원사업 지역 라.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 무인도서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의 그 주변해역 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갯벌관리구역 사.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의 주변해역 아. 「해양수신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중경관지구 자.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카. 그 밖에 환경 및 생태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연구·교육 보전구역	가. 해양과학기지 및 관측부이의 위치 및 분포 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기상관측 등 연구·교육활동 다.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등 영토 관리 현황 라. 해양보호생물의 이동경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연구·교육활동 마.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해역 다. 그 밖에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항만·항행 구역	가. 지정 항로의 위치 나. 어선·선박의 통항 특성 다. 선박 항행의 안전성	가.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라. 「해사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 분리수역 마.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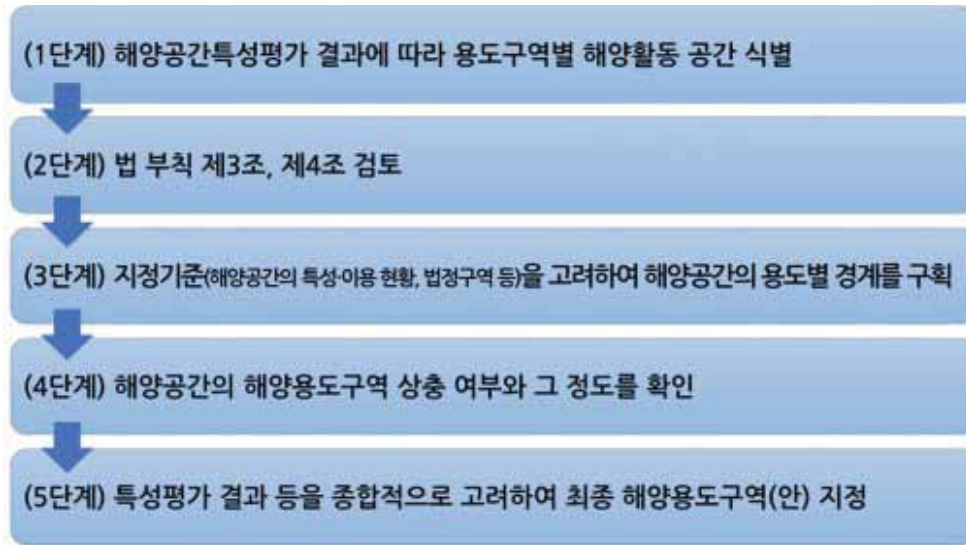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 사. 그 밖에 항만의 기능 유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군사활동 구역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나. 해상사격 등 군사 훈련 활동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군기지 및 항공작전기지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다. 그 밖에 군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안전관리 구역	가. 과거 지진·폭풍·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越流)하여 침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연안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 다. 항해 또는 정박 중 다른 선박·시설과 부딪히거나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해역 라. 조력 및 화력발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설치된 해역 및 그 주변 해역 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 및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	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 다.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라.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마. 그 밖에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64호)

□ 해양용도구역 구획 및 지정

- 해양용도구역 지정은 구획과 상충·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하는 것임.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은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한 이후 해양용도구역 상호 간의 양립 가능성 및 상충여부 등을 비교·분석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구역을 정하는 것임.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4〉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 (1단계) 특성평가 결과에 따라 용도구역별 해양활동 공간 식별
- (2단계)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구역을 우선 검토
- 법 시행 시점에 「연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 지정 구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개별 법률에 따른 구역이 해제되거나 구역에서 활동 허가 기간이 지나면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토대로 해양용도구역 변경
- (3단계) 해양공간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기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해 대상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 확인
- (4단계)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상충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²⁰⁾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거나 해양활동이 중첩된 경우, 특성평가 결과값이 높은 용도를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각 특성평가 결과값이 동일하여 해양용도구역 선택이 곤란한 경우 주변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 현황, 해양 활동 지속가능성, 지역협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할 수 있음.
- (5단계) 특성평가 결과와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현황 및 현안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해양용도구역(안) 지정

20)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6조(해양용도구역의 상충 및 조정)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근거	해양용도구역	연안해역기능구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3조 (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시화호매립),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 보호구(어업),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 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항만·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주 : 동 계획과 관련하여 전북연안의 해중문화시설구(없음), 해양수질관리구(시화호매립), 재해관리구(없음)는 없음. 수산
생물자원보호구는 수산자원 관리수면과 보호수면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반영하였음.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근거	해양용도구역	기존 법률에 따른 구역, 지역 등
「해양공간계획법」부칙 제4조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굴권 설정 구역(「광업법」제9조의2제2호) 골재채취 예정지(「골재채취법」제21조의2제1항) 골재채취단지(「골재채취법」제34조제1항) 채취권 설정 구역(「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5조)
	환경·생태계관리구역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항만·항행구역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구역(「항만법」제2조제4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신항만건설 촉진법」제5조제1항) 정박지·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7호, 제11호) 교통안전특정해역·항로·통항분리수역(「해사안전법」제10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68조제1항)
	군사활동구역(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

□ 용도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어 중첩되는 경우, 특성평가 결과, 법·제도적 기준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조장 사항 포함), 해양환경·생태 특성, 주변해역의 이용·

- 개발 현황과 미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를 선택
- 용도를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 지역협의회, 전문가 자문,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활용

*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방법과 절차는 정부에서 R&D 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음.

- 미지정 해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해양공간에 보전, 이용, 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밀 해양공간특성평가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
- 안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 될 수 있음. 이 3개 용도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시 조정이 필요 없음.
 - 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은 해양활동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개별 해양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한 것임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군사활동구역은 국가의 안보, 군사시설·중요시설의 보호, 군사 훈련을 위하여 설정한 해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연구·교육보전구역은 보전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환경으로 시험, 관찰, 샘플링 등 연구를 진행하며 향후 해양교육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말함. 주로 해양관측시설, 해양보호생물종의 이동경로 및 회유 경로, 산란지, 서식지 등이 이에 해당함.
- 9개 해양용도구역 중 3개 해양용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중복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공간의 조정 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7〉 항만·항행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항만·항행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항만·항행구역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항로 등	항만구역 (항계)	
어업활동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양식구역),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공간특성평가 (3등급), 정밀어 획량분석정보	항로(일반항로, 통항 분리제도), 교통안전 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		○		항만항행

항만·항행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항만·항행구역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항로 등	항만구역 (항계)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어업활동
		○		○	항만항행
환경·생태계관리 구역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 리구역, 특정도서, 절대 보전도서(무인도서), 연안해역기능구	공간특성평가3등 급	항로(일반항로,주요 항로,통항분리제도), 교통안전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환경생태
		○		○	항만항행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니라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 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 구, 해수욕장구 등)	공간특성평가(3등 급), 낚시활동구 역	항로(일반항로,주요 항로,통항분리제도), 교통안전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해양관광
		○		○	항만항행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	광업권, 골재채취예정지 등	공간특성평가 (부존량), 기 채취해역	항로(일반항로,통항 분리제도), 교통안전 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골재광물
		○		○	항만항행
에너지개발구역	해상에너지발전시설 및 LNG 시설 주변 해역	공간특성평가	항로(일반항로,통항 분리제도), 교통안전 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에너지
		○		○	항만항행

※ 한정면허어업구역의 경우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면허기간 종료 후 항만항행구역으로 용도변경 필요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환경·생태계관리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환경·생태계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어업활동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양식구역),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공간특성평가 (3등급), 정밀어획량분석정보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절대보전도서(무인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 3등급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	○		환경생태
	○			○	어업활동
		○		○	환경생태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니라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등)	공간특성평가(3등급), 낚시활동구역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절대보전도서(무인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 3등급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해양관광
		○	○		환경생태
	○			○	해양관광
		○		○	환경생태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예정지 등	공간특성평가 (부존량), 기 채취해역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절대보전도서(무인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 3등급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골재광물
		○	○		환경생태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해상에너지발전시설 및 LNG 시설 주변 해역	공간특성평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절대보전도서(무인도), 연안해역기능구	공간특성평가 3등급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환경생태
		○	○		환경생태
	○			○	에너지
		○		○	환경생태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어업활동보호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어업활동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니리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등) 등	공간특성평가(3등급), 낚시활동구역	면허어업(양식구역),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공간특성평가(3등급), 정밀어획량분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	○		어업활동
	○			○	해양관광
		○		○	어업활동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예정지 등	공간특성평가(부존량), 기 채취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양식구역),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공간특성평가(3등급), 정밀어획량분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경우만 해당)
		○	○		어업활동
	○			○	골재광물
		○		○	어업활동
에너지개발구역	해상에너지발전시설 및 LNG 시설 주변 해역	공간특성평가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양식구역),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공간특성평가(3등급)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에너지
		○	○		어업활동
	○			○	에너지
		○		○	어업활동 (특성평가결과비교·검토)

〈표 3-10〉 해양관광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해양관광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해양관광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 예정지 등	공간특성평가 (부존량), 기채취해역	해수욕장, 마나라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등)	공간특성평가(3등급), 낚시활동구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		골재광물
				○	해양관광
	○			○	골재광물
		○		○	해양관광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해상에너지발전 시설 및 LNG 시설 주변 해역	특성평가 결과	해수욕장, 마나라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등)	공간특성평가 (3등급), 낚시활동구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에너지
		○	○		해양관광
	○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비 교·검토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골재·광물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에너지개발구역	해상에너지발전 시설 및 LNG 시설 주변 해역	해양공간 특성평가	광업권, 골재채취예정지 등	공간특성평가 (부존량), 기채취해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에너지
		○	○		골재광물
	○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비 교·검토

□ 용도구역 관리

- 용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개별 용도구역에서 시·공간적으로 적절한 활동을 명시하거나 용도구역에 적합한 활동에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관리하는 방안 및 조치 사항 등임.
 - 용도구역 설정 이후에는 용도를 우선 증진시키는 방안 및 조치 사항
 - 해양용도구역 내 인간 활동의 수용 가능성 수준과 관리 조치 등
 - 해양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활동(해양시설²¹) 설치 및 고정적 활동)과 그 외 활동은 용도구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 적용
 - 각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양활동을 허용하되, 용도 중첩 시 관리의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 해당 공간은 별도의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현황, 해양공간 이용 밀집도, 해양공간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8조(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용도 중첩 시 중첩공간 도출 및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 중첩공간 확인) 용도구역 자료 특성별 분류 구분, 용도구역별 1:1 중첩 분석을 통한 중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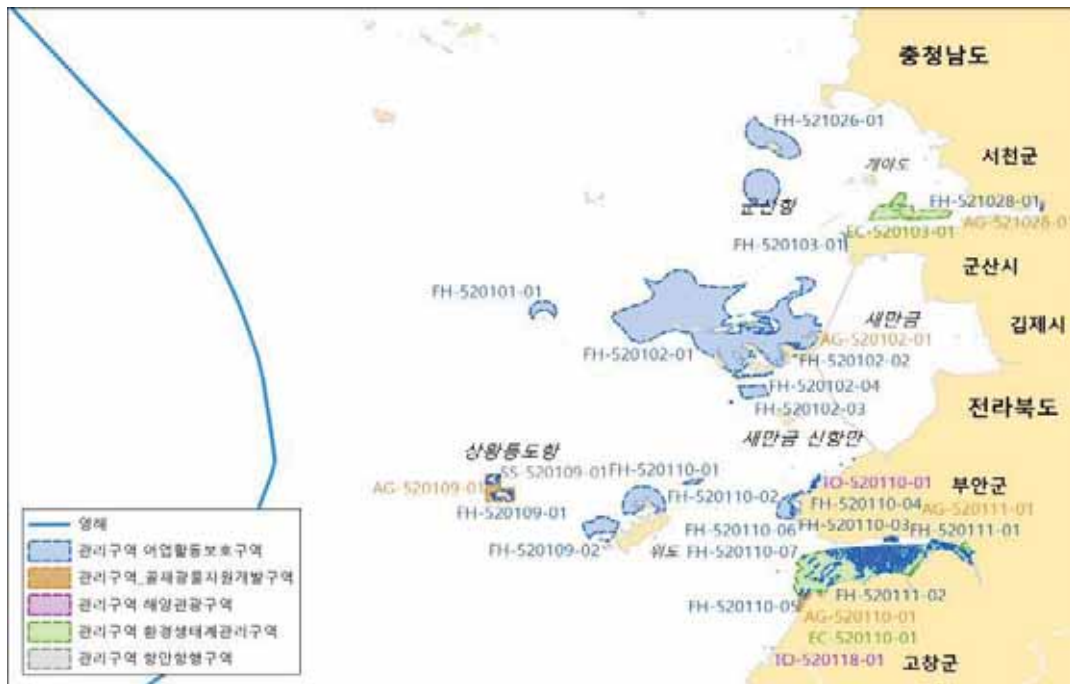
〈그림 3-15〉 용도구역별 1:1 공간분석을 통한 중첩공간



21) 「해사안전법」제2조 15.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을 말함.

- (2단계: 중첩 공간 중 관리가 필요한 공간 선정) 관리구역 도출
 - ① 공간의 지역성: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대상구역의 최종 결과 도출
 - ② 관리의 실효성: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코드 부여
 - ③ 정보의 신뢰성: 데이터 해상도 및 기술력

〈그림 3-16〉 용도구역별 관리구역 도출 결과



- (3단계: 중첩 공간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 순위 설정
 - ①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현황
 - ② 공간 이용의 밀집도: 특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우세한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③ 공간관리의 효율성: 용도구역 중 보전과 이용의 공간특성평가 값이 동일한 수준일 경우 보전의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 예)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어업활동보호구역의 공간특성평가 값이 같을 경우 환경·생태계 관리구역이 우선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해양용도구역 지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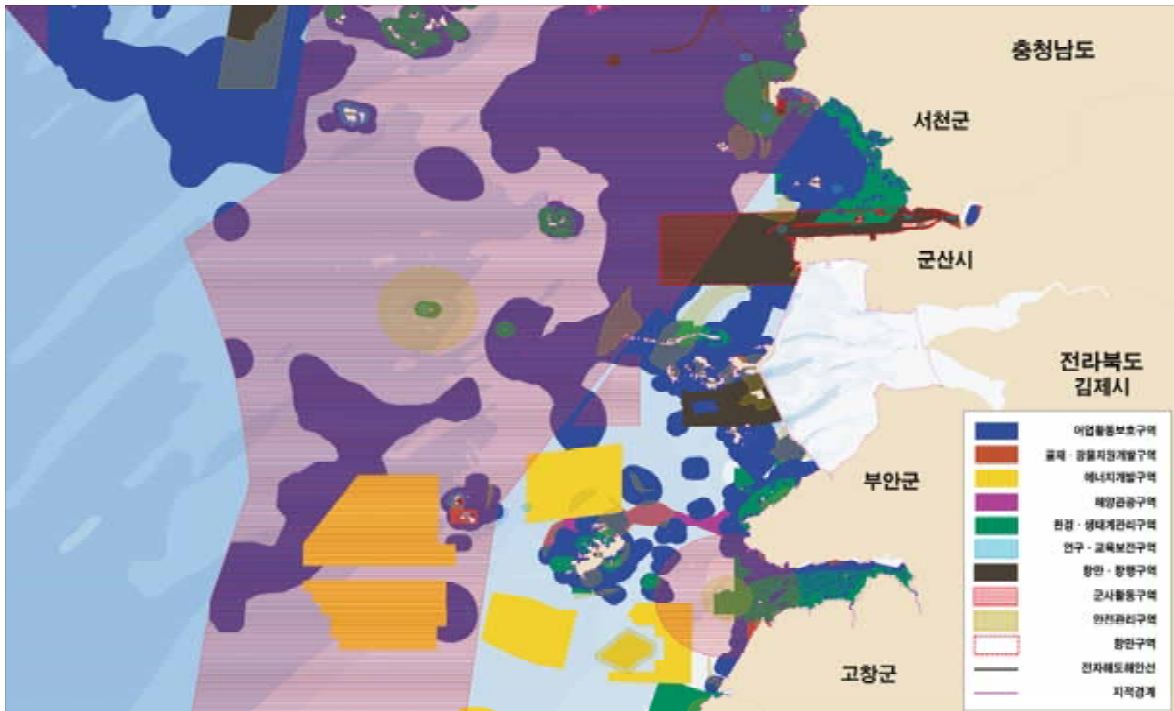
○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총 5,265.36km² (영해만 해당)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항만구역 등에 대한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변경하고, 그 외 해양공간(영해 내)은 시·도지사가 수립·변경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9개 용도구역으로 구분

* 유보해역 : 특성평가를 수행한 지역이라도 특정 해양이용행위의 활동 밀도가 낮거나, 해양환경, 생태, 사회, 경제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의 실익이 없는 공간(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7호)

전북		면적(km ²)	비율(%)	
합계		5,265.36	100.00	
해양용도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1,850.47	35.14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9.64	0.18	
	에너지개발구역	523.61	9.94	
	해양관광구역	27.42	0.52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46.71	2.79	
	항만·항행구역	224.26	4.26	
	용도중첩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10.56	0.20
		군사활동구역	3,381.68	64.23
		안전관리구역	334.24	6.35
	(중복)		(1,796.71)	(34.12)
소계		4,711.88	89.49	
유보해역		553.48	10.51	



* 항만구역 174.79km², 항만구역 제외 해양공간 5,090.57km²

1) 어업활동보호구역

□ (정의)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마을어업, 양식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해역
- 어업생산량이 많거나, 조업 활동이 활발하여 어업활동의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수산자원 조성, 수산생물의 산란지 혹은 서식지의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해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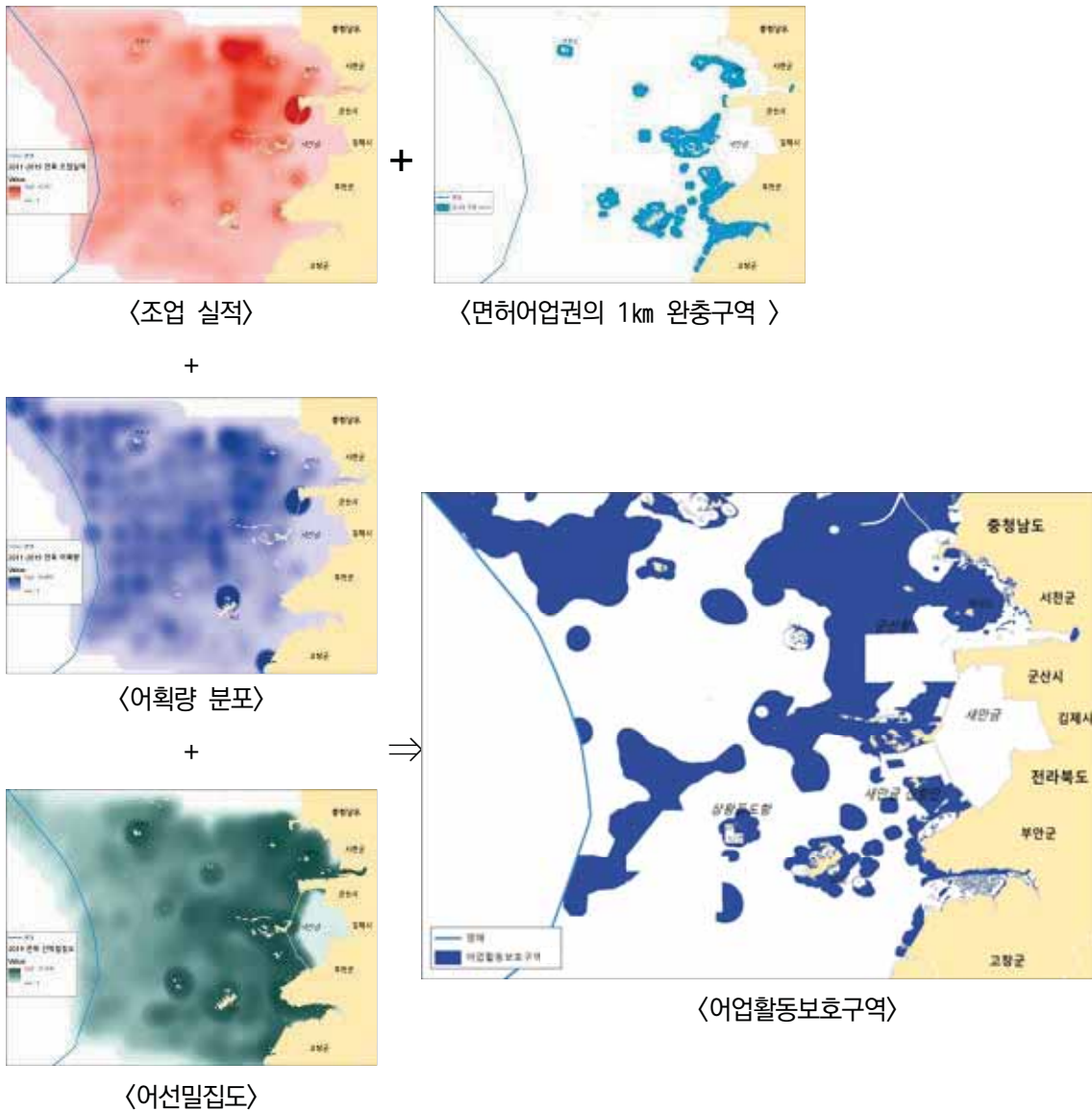
□ 수산자원 조성 및 산란지·서식지 보호, 수산자원 고갈 유발어법 금지 등을 통해 어업생산량 및 지역 경제적 이익 증진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지정 방법) 조업 위치 기반 연근해 어획량, 어업 밀집도(V-PASS), 마을어장 및 양식장(면허어업)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잡는 어업 활동 공간은 조업 위치에 기반한 어획량 분포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르는 어업 활동 공간은 양식 면허가 발급된 공간으로 확인

- 특성평가 결과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격자를 우선하여 포함
 - 잡는 어업활동 공간은 조업 위치에 기반한 어획량 분포와 어선 밀집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르는 어업 활동 공간은 면허어업권이 분포한 공간으로 확인
 - 마을어업 및 양식업 보호를 위해 면허시설 주변 해역 1km 버퍼를 포함하여 설정
- (상충 조정) 어업활동이 활발한 공간 내 해양관광 활동(해수욕장, 낚시활동 등) 및 환경·생태 특성(해양생물다양성 등)과 중첩하는 경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의 우선순위 부여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수산자원 산란·서식 환경 보호 및 복원과 수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 권장

- 다양한 식량의 공급원으로 역할 뿐만 대중성 어종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
 - 동 구역 내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산 활동을 지원

- 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하는 활동(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해양에너지 개발 등)은 제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

* 「해양용도구역관리지침」제5조제3항

- 수산자원 서식·산란지 등의 압력이나 위협 활동(채취·채굴,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 제한
-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연구·교육, 레저·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 양립 가능한 경우 허용하고,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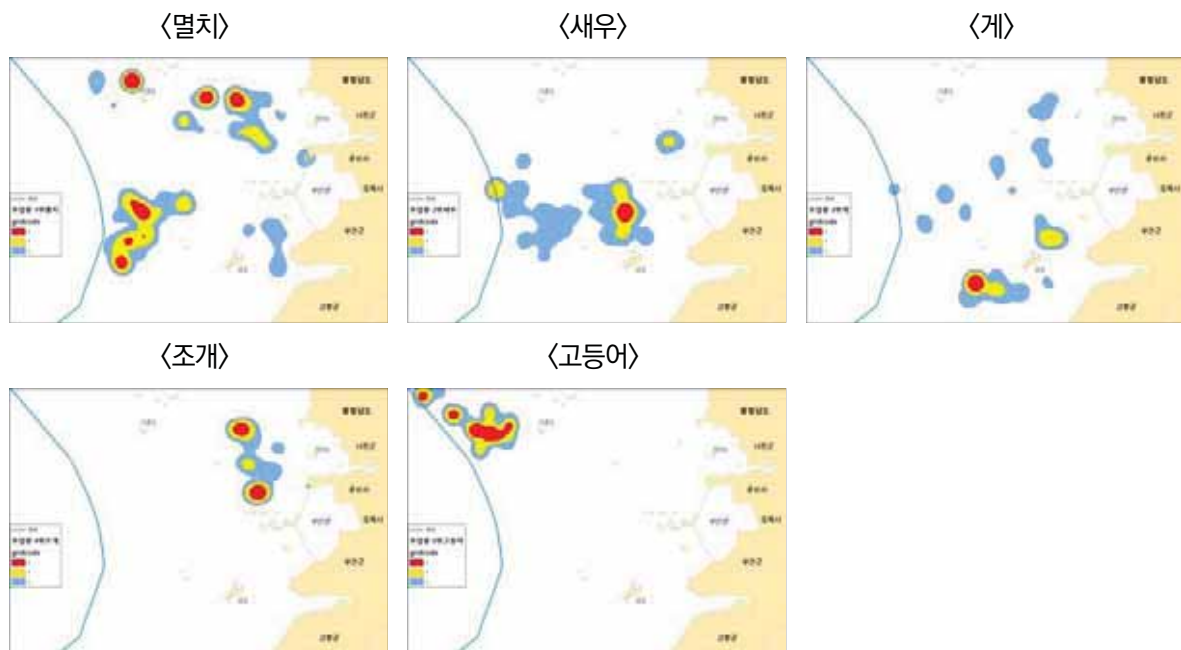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동 구역 대중성 어종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모니터링 및 위협 요인 분석

○ 산란 및 서식 환경 등 수산생물의 생애주기별, 어종별 공간 분포 조사

* 멸치, 새우, 게, 조개 등

〈그림 3-17〉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어종별 공간 분포 현황



주 :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의 지난 5년간 연근해조업실적 데이터로 분석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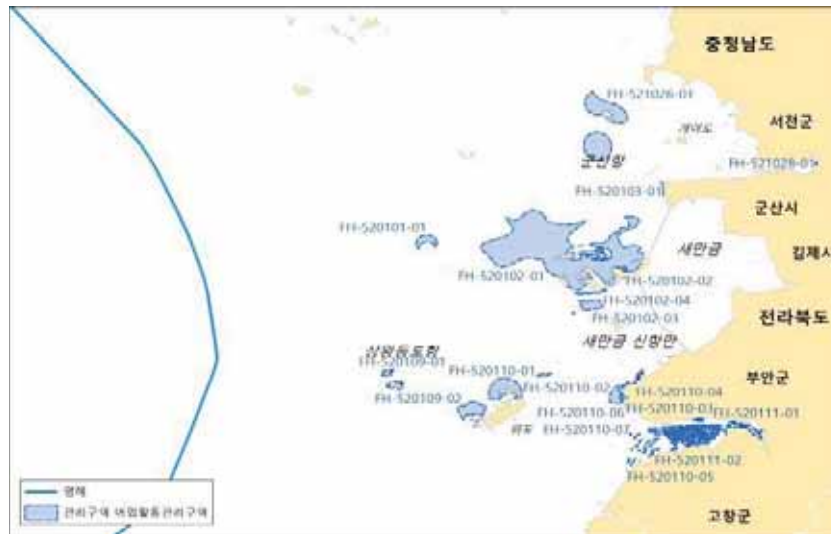
- 바다목장(인공어초 시설, 수산종자 방류 등), 바다숲 조성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 인공어초 시설 주변 해역 낚시활동 모니터링 및 공간관리 수단 마련
- 수산자원 조성 효과 사후 모니터링 수행과 정보 제공

- 어업활동과 상충하는 이용행위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진행
 - 국립공원과 중첩되는 어업활동 공간에서는 자연공원법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생태계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어업활동 허용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마리나 시설 설치 계획, 해수욕장 시설을 증설하거나 보완하여 관광공간 조성, 어항을 정비하여 관광자원화(어촌뉴딜 등)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관리의 우선순위 부여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는 경우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행위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공간을 관리

〈그림 3-18〉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2〉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역	구 분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관리코드	면적 (km ²)			
어업활동 보호구역	FH-520101-01	3.69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함
	FH-520102-01	138.43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함

구분		면적 (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FH-520102-02	0.36	골재광물 (광업권)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 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광업권(고령토)이 존재함
	FH-520102-03	5.61	항만항행 (신항만구역)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신항만구역이 존재함
	FH-520102-04	0.13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해양보호생물(흰발농게)의 서식지가 존재함
	FH-520103-01	0.27	항만항행 (무역항)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무역항(군산항)이 존재함
	FH-520109-01	1.03	골재광물 (채굴권) 항만항행 (연안항)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③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연안항(상왕등도)이 존재하며, 채굴권(철광)이 존재함
	FH-520109-02	6.68	해양관광 (낚시활동) 환경생태 (특정도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 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하며, 특정도서(내조도, 외조도) 가 존재함
	FH-520110-01	12.29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국가어항(위도항)이 존재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 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함
	FH-520110-02	4.11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 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함
	FH-520110-03	0.65	해양관광 (마리나예정 구역)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국가어항(격포항)이 존재하며, 양식 및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 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리나예정구역(격포마리나)이 존재함
	FH-520110-04	1.50	환경생태 (국립공원)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 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변산반도국립공원)이 존재하며 낚시활 동이 활발함
	FH-520110-05	0.12	골재광물 (채굴권)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 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석, 고령토)이 존재함
	FH-520110-06	0.35	해양관광 (낚시활동) 항만항행 (통항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 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하며 선박의 통항이 많음
	FH-520110-07	0.01	해양관광 (마리나예정구역)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 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리나예정구역(궁항마리나)이 존재함

구분		면적 (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FH-520110-08	0.07	해양관광 (낚시잔교)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잔교가 존재함
	FH-520111-01	0.43	골재광물 (채굴권)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고령토)이 존재함
	FH-520111-02	15.46	환경생태 (습지보호지역)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어항이 존재하며,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습지보호지역(고창갯벌)이 존재함
	FH-521026-01	30.53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함
	FH-521028-01	0.12	골재광물 (채굴권)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석)이 존재함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정의) 바다 골재 및 해저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바닷모래 및 해저광물 채취와 어업활동 간 갈등 완화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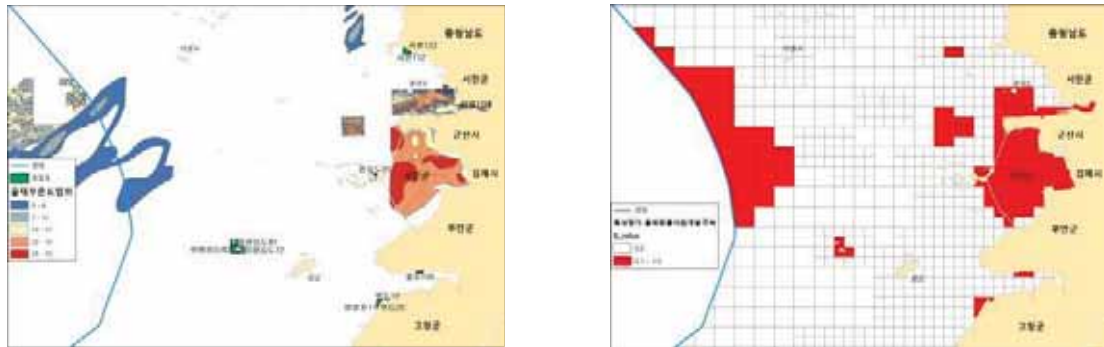
(지정 방법) 골재 및 광물자원 부존량, 바다골재채취예정지, 광업권 설정 현황 등을 기준으로 설정

○ 채굴권 설정 해역을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 광업권 설정된 광구가 해양에 있거나 인접한 경우는 총 9건 : 부안군 하왕등도 지적 및 군산시 장자도 지적, 고창군 위도 지적 등 광업권 5건, 채굴권 4건임.

(상충 조정)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 관광 및 레저활동(낚시), 어업활동(조업, 양식장)이 활발한 공간은 관리구역으로 지정

〈그림 3-19〉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골재채취 및 골재부존 현황〉

〈특성평가 결과〉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골재·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시 해양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 채취활동 이외 시간을 달리하여 공존 가능한 해양이용 행위(어업활동, 항행활동 등)는 허용
 - 광업권 설정 구역의 경우, 광업권 설정기간 만료 시* 용도구역 유지·변경 검토 후 조치
 - *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제14조(핵심활동 종료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채굴권 및 광업권 설정 구역의 경우 채취기간과 광업권 설정기간 만료 시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유지·변경 검토 후 조치

○ 채취 허가 해역에서 불법채취 행위 단속 방안과 동시에 친환경적 채취 활동 유도

□ 채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타 활동의 영향 최소화 및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검토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 어업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은 관리코드 부여

〈그림 3-20〉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3〉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분		면적 (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골재·광물 자원개발구역	AG-520102-01	0.78	어업활동 (양식장)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5085, 허가 기간 : 2005.11.22.. ~ 2025.11.2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AG-520109-01	5.80	어업활동 (어촌정 주어항)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철광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8941, 허가 기간 : 2010.10.07.. ~ 2030.10.06.)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구분		면적 (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8942, 허가 기간 : 2010.10.07. ~ 2030.10.06.)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8940, 허가 기간 : 2010.10.07. ~ 2030.10.06.)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어촌정주어항이 존재하며,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AG-520110-01	2.12	어업활동 (양식장) 환경생태 (습지보 호지역)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규석, 고령토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67373, 허가 기간 : 2019.02.01. ~ 2039.01.3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일부 습지보호지역이 존재함
	AG-520111-01	0.56	어업활동 (양식장)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176, 허가 기간 : 2015.06.16. ~ 2035.06.15.)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AG-521028-01	0.40	어업활동 (양식장)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규석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8924, 허가 기간 : 2010.09.30. ~ 2030.09.29.)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3) 해양관광구역

(정의)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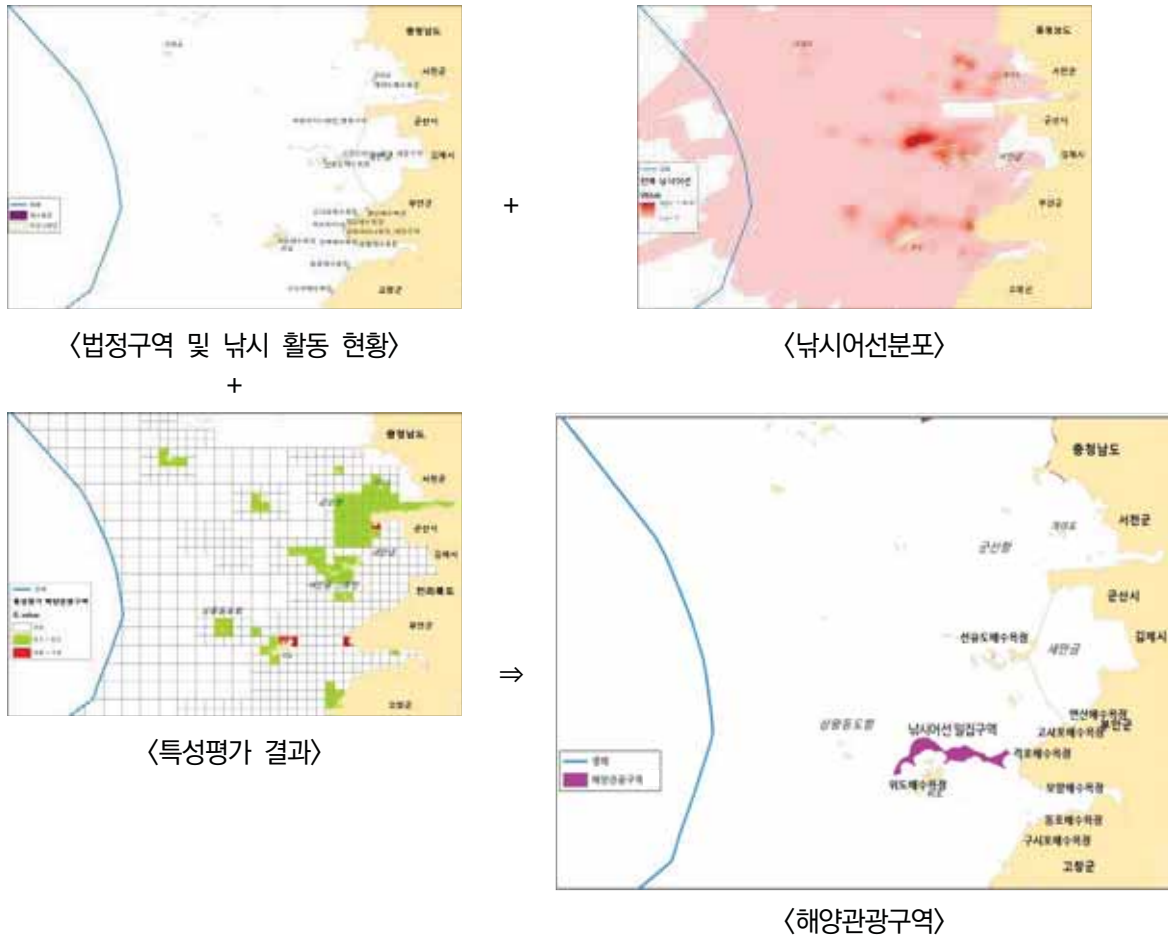
해양레저, 해양친수, 마리나 등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수요 충족 및 핵심 공간의 해양관광 활동 증진

(2) 용도구역 지정

(지정 방법) 해수욕장, 마리나 시설 및 항만, 마리나항만, 낚시(갯바위, 선상) 활동 분포 및 관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마리나 예정구역은 해양공간특성평가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용도구역 설정 시 미반영

* 속도 알고리즘(2knot 이하, 평균 유속 1m/s)을 통한 낚시활동 공간 추출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레저활동 및 어업의 잠재적 가치 창출 활동

○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행위 및 개발 허용

- 여가활동을 직접 즐길 수 있는 마리나 및 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하여, 연안 및 해양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해양과 바닷가 낚시 활동을 위한 시설, 레저보트 등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활동과 시설, 어촌 체험과 관광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유람선·잠수함·크루즈 등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생태관광에 적합한 시설물, 해수욕장 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적 투자 및 개발 공간 확보, 해양관광활동 공간분석(빅데이터 분석)과 정보 인프라 구축

□ 해양관광·레저 활동과 시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혹은 완화

- 이와 동시에 타 이용활동이 해양관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
-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는 해수욕장 내 취사·야영 등 무질서 행위 발생 시 관련 활동을 제한하고, 낚시 등 레저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해양이용 수요 충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레저 전략적 중심지 조성

□ 해양관광과 타 해양활동 간 상호작용 점검

- 해양관광의 잠재적 영향 분석 및 관리
- 동시에 해양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인위적 요인 및 상호 작용 검토
- 개발 이후 해양생태계 및 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마리나항만 개발 시 선박, 요트 등의 정박을 위한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준설 시 준설토사 처리 대책 필요

□ 동 구역에서 해양 이용·개발 시 해양관광과 레저활동에 미치는 영향 점검

- 해양이용·개발을 허가하는 지자체 혹은 관련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
 - 겨울철 이동성 조류 및 해양환경·생태계 미칠 영향
 - 소음 또는 빛의 교란 등으로 연안 어메니티에 대한 영향
 - 레저 보트, 유람선, 낚시 어선 노선의 영향
- 허가 기관은 해양관광과 레저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 결과, 합의된 조치를 필요시 확인
- 관광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개발 이후 해양생태계 및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발견 시 해양관광활동 제한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해양관광구역 내 환경생태 및 어업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은 관리코드 부여

공간은 관리구역으로 지정

○ 보농도의 무인도서 관리유형이 개발 가능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을 삭제함



〈기 지정된 보호구역 및 해양생물다양성 지수 등〉



〈특성평가 결과〉



〈그림 3-22〉 환경·생태관리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환경·생태계 보호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권장

- 용도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계획과 활동은 제한되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조치 제시 필요
 -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의 압력이나 위협 활동(채취·채굴,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 불가
 - 민감하거나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산물 공급, 연구·교육, 레저·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허용 /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주 및 활동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 및 복원, 해양보호생물 회복 사업 추진

-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흰발농게 서식(선유도, 부안줄포만 갯벌, 고창갯벌 등) 현황 모니터링
- 해양오염 및 서식지 훼손 상태 파악을 위한 주기적 점검과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분석·제거

□ 해양생태계 및 환경 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 갯벌 및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공간(고창갯벌, 곰소만 갯벌(복원 해역 포함), 줄포만 갯벌 등)의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동 구역의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시민 참여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시민 참여에 의한 해양생태 및 환경 자료 수집으로 주요 이슈 발견 및 해결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보완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환경생태관리구역 내 항만·항행 및 어업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은 관리코드 부여

〈그림 3-23〉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 분		면적 (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환경·생태 관리구역	EC-520103-01	12.92	항만항행 (무역항)	①환경생태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습지보호지역(서천갯벌)이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무역항(군산항)이 존재함
	EC-520110-01	51.77	어업활동 (양식장)	①환경생태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습지보호지역(고창갯벌)이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고려사항

-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이 환경·생태보호구역으로 반영된 경우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행위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생태보호구역을 관리

5) 연구·교육보전구역

(정의)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해양수산 및 해양보호생물 등의 연구·조사 활동 유지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지정 방법) 해양조사를 위한 해양관측시설, 영해기점 무인도서, 연안관리지역계획상 해양조사구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상왕등도(직선기점 19), 직도(직선기점 20), 어청도(직선기점 21)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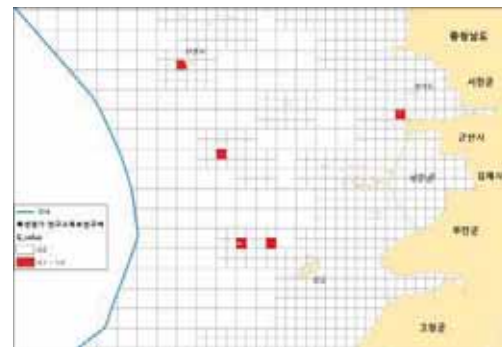
□ 서식 실태 및 해양관측 등 연구·조사 활동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해양활동 가능

○ 해양생물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활동 가능

○ 중요한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연구 활동 허용



〈해양관측부이 및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성평가 결과〉



〈그림 3-24〉 연구·교육보전구역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해양관측 등 연구·조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해양활동 가능
 - 해양생물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훼손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존이 가능한 해양이용 개발 활동 가능
-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실제적 관리 실현(연구조사, 주기적 점검 등)
- 해양수산의 환경·자원·생태에 관한 연구 및 교육 활동 추진

6) 항만·항행구역

- (정의)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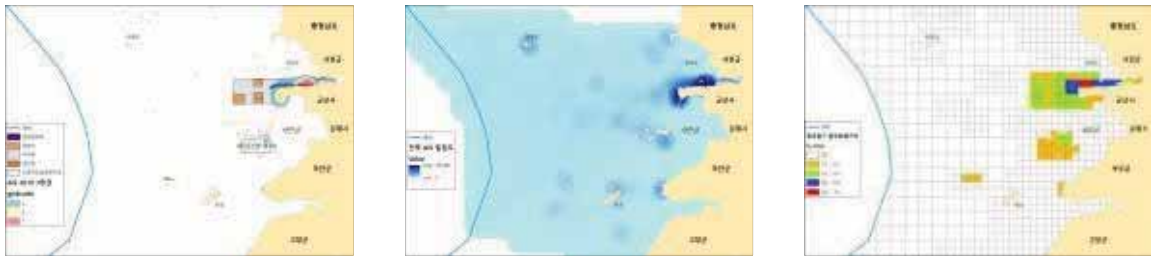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항만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원활한 항만 개발·운영을 도모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 항만·항행 기능 확대 과정에서 타 용도와의 상충발생 최소화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지정 방법) 항만구역(군산항, 새만금신항), 항로, 정박지, 해상교통 특성(항적 등)* 등을 고려한 구역설정

* 선박위치자료(GICOMS) 데이터를 통한 화물선 및 탱크선 이동 공간 추출 : 선박의 주 이동 경로 확인



〈지정항로, 정박지 등〉

〈화물선 및 탱크선 밀집 공간〉

〈특성평가 결과〉



〈그림 3-25〉 항만·항행구역

- (상충 조정) 항계 내 어업활동(양식장)이 활발한 공간은 관리구역으로 지정
 - 항계 내 면허어업권이 존재하는 공간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면허기간 만료 이후에 관리구역 제외 등 조정 필요

〈표 3-16〉 전북 항만구역 내 양식장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항계	면허번호	어업 종류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기간	면적	비고
1	상왕등도항	부안군 제3678호	양식어업	해삼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2020.1.8.~2030.1.7.	35.66	
2	군산항	군산시 제5317호	마을어업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	비응도 지선	2020.3.1.~2022.12.31.	35.96	
3	군산항	군산시 제5323호	마을어업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	소룡동 지선	2021.7.14.~2022.7.13.	36.0	
4	군산항	군산시 제5324호	마을어업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	소룡동 지선	2021.7.14.~2022.7.13.	35.97	

자료 : 전라북도, 2022, 내부자료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이용·활동

□ 항행활동 우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 가능한 경우만 허용

- 안전한 항만·항행 활동을 보장 및 보호를 위한 해저지형(수심) 변화를 주는 개발과 항로를 침범하는 해양기반시설 승인 불가
- 안전한 항행을 위한 항로 활동 보장 및 어업, 유어활동 안전 관리 강화
-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구역(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행위 관리 사항을 준수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항만구역과 항로 등은 항만의 기능과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항만과 해운의 입지를 위한 주기적 해저지형 등 특성 파악
 - 선박 입출항 추세, 선박규모 및 종류 등 항만 운영여건 변동 요인 점검
 - 항만시설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퇴적물 이동에 따른 수심 변화 등)의 영향을 점검하고 주기적 준설 및 조사
- 안전한 항행을 위해 항로 준수 및 어업, 유어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 항만이용 선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기존 구역(항로 등) 내의 활동 준수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항만·항행관리구역 내 어업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은 관리코드 부여

〈그림 3-26〉 항만·항행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7〉 항만·항행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 분		면적 (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항만항행	SS-520109-01	0.25	골재광물 (채굴권)	①항만항행 ②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연안항(상왕등도항)이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철광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8941, 허가 기간 : 2010.10.07. ~ 2030.10.06.)

7) 군사활동구역

(정의)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군사안보 차원의 영토관리 및 주민 안전 관리 강화

(2) 용도구역 지정방법

해군, 해경, 공군 해상사격 훈련구역 설정 공간

〈그림 3-27〉 군사활동구역



8) 안전관리구역

□ (정의)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안전한 해양이용 및 활동 지원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해양에너지 시설 등 산업 및 기간 시설, 선박 통항 및 사고 위험 분석 등을 고려 설정

○ 새만금 갑문 개폐는 항만운영, 선박운항, 해양관광 등 다른 해양활동에 영향

○ 안전관리 대상을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소형 선종과 일반 국민까지 확대·강화 필요

* 2019년 전북 낚시어선 이용객: 360,925명

○ 변산반도 국립공원구역 내 하섬 일원 갯벌의 사고 위험성이 높음

* 최근 5년간('18~'22) 조개채취 등 수중활동 시 15건의 고립 및 익사 사고 발생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해역 이용·활동의 영향 주기적 모니터링 및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사 및 정보 확보
- 사고 다발지역에 위험성 조사, 위험요소 지속 발굴을 통해 사고 예방
- 주기적 위험성 조사*, 위험요소 지속 발굴 등을 통해 사고 예방조치
 - * 사고발생 해역 및 선박·어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역을 대상
- 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한 안내·경고 등을 통해 해양이용자들이 미리 조심하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 예방 유도

9) 에너지개발구역

- (정의)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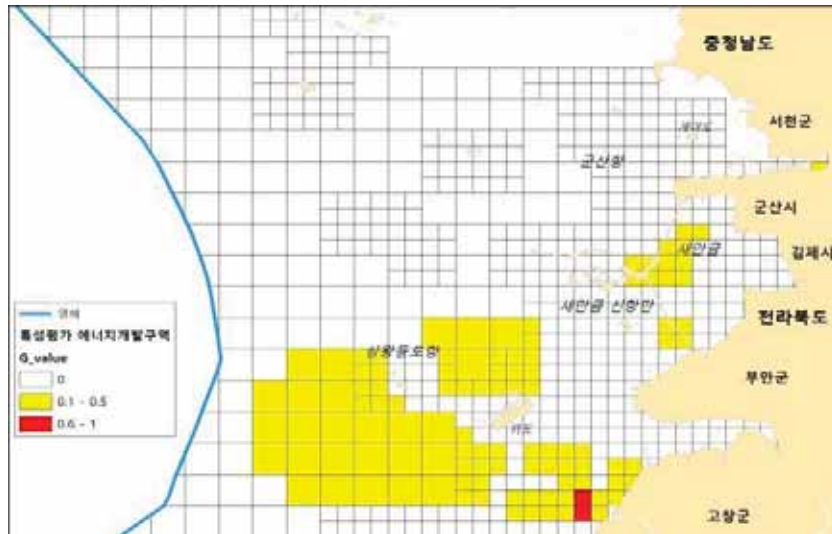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해양생태계와 균형을 이루는 해양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 에너지 시설 유지, 해양활동 영향·갈등 최소화

(2) 용도구역 지정 방법

- 풍력, 조석, 조류, 파랑, 온도차 등 해양에너지 환경과 입지조건·제약조건, 에너지 시설(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고려하여 설정
 - * 해양에너지별 자원량 분석 결과 해상풍력을 제외한 그 외 해양에너지 부존량 적음, 해상풍력의 경우, 평균 풍속이 초속 6m 이상(양호)으로 나타나는 공간은 외해임.
 - **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40MW를 초과한 신재생 발전사업이 해당

-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지역의 수용성 확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반영
 - 수요가 있는 해양공간에 대한 위치정보, 규모, 이용개발의 용도 등 구체적 이용개발 계획 또는 구상이 마련, 사회적 갈등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특성평가 결과〉



〈그림 3-29〉 에너지개발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해양에너지 개발 활동 가능. 이로 인한 해양생물·서식지, 경관·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른 이용 및 개발 활동과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영향 저감조치, 사후조치 등의 관리
- 해당 구역의 시설입지 및 주변 인프라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해양에너지 개발이나 해양관광, 어장 개발과의 복합이용 활동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해양에너지 개발이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확인, 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 해양에너지 개발 주변 해역의 수질, 생태, 지형 변화 조사 및 모니터링
 - 과학적인 객관적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상호 공유·활용 체계 구축
 - 현재 상황, 미래 시나리오, 잠재적 영향 분석 등의 정보가 구축되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를 이해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기반으로 역할
 - 관련 자료의 과학성과 객관성에 대한 검증 체계 구축
 - 해상풍력 발전의 성장을 유도하고, 공간에서 타 이용행위와 충돌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절차) 마련
-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해관계자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 * 개발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인접 지자체 간 협의 절차 마련
 -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 협의회'* 활성화
 - * 2019년 7월부터 구성 운영, 2020년 7월에 민·관이 함께 모여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합의
 - 우선, 다양한 해양활동 간 영역과 현안을 명확히 정의하고, 다차원 거버넌스 구조 이해
 - 이에 따른 해당 구역의 별도 해양공간관리 규정의 개발과 합의된 절차 마련
 - 수산업 공존, 지자체 주도형 사업에 따른 공급인증서(REC) 수익 활용방안, 주민 이익 공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해양 환경문제, 입지 후보지역 등을 논의
 -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비공식적 의사소통 지원 방안 마련
-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과 함께 주변지역 지역발전 사업 관리 체계 마련
 - 주민 소득증대사업,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해상풍력단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 

제4장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운영 배경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이행을 위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 구성·운영 필요
 - 특히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 계획의 실효성 제고

□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전북도청의 추천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주요 해양공간 이용, 보전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 (기능)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에 대한 현안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하여 검토²²⁾
 -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 법적 근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원칙(제3조) 및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2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참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제6조)은 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

*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 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 2019년~2021년 사전협의회, 시·군·구 설명회, 지역협의회 개최
 - 전북도 시·군 사전설명회('20.6.)
 - 제1차 지자체 설명 및 의견수렴('20.9.)
 - 제2차 지자체 설명 및 의견수렴('20.10.)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20.9~10.)
 - 전북도 시군구 의견 수렴('20.11~12.)
 - 전북-전남-해수부 공동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조정 협의('20.11.)
 - 전북-충남-해수부 공동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조정 협의('20.12.)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협의(팀장급)('21.4.27.)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협의(과장급)('21.6.1.)
 - 해양공간관리계획 추진에 관한 협약('21.6.)
 - 전북도 시·군 설명회('21.6.)
 - 제1차 전북 지역협의회 의견수렴('21.7.23~7.30.)
 - 제2차 전북 지역협의회 의견수렴('21.9.29.)

□ 전북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원칙
 - 분야별 공평한 참여 기회 제공 : 주요 이용·개발·보전 활동 관련 민관산학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되, 분야별 참여인원을 안배*
 - * 특히 상충행위 관련 이해관계자(예. 어민-골재업자)를 모두 포함
 - 합의에 기반한 협의회 구성으로 대표성 확보: 주요 이용·개발·보전 활동별 관련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의견 수렴 및 합의를 통해 협의회 위원을 추천하여 대표성을 확보

* 예: 복수의 어민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민 대표 협의회 위원을 추천

○ 구성 절차 및 현황

- 지역협의회 구성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광역지자체 업무협의
- 해당 지자체의 추천으로 위원 구성
-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위원 구성

〈표 4-1〉 전북 지역협의회 1차 구성(안)

구분	1차 구성(안)
전북 지역협의회	민(6), 관(10), 학(3), 연(5) 등 총 24명

〈표 4-2〉 전북 지역협의회 2차 구성(안)

구분	1차 구성(안)
전북 지역협의회	민(6), 관(10), 학(3), 연(5) 등 총 24명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 전북 시·군 사전설명회

□ 개요

- 일자 및 장소: '20. 6. 3.(수)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전북도청 및 시·군·구 담당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협회, KIOST 등

〈표 4-3〉 전북 시·군 사전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전북 시·군·구 사전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통합관리제도 설명 -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소개 -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 논의 - 전북 및 시·군 담당자 추가 설명회 관련 논의



2) 전북 시·군 설명회

□ 개요

- 일자 및 장소: '21. 6. 21.(월)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전북도청 및 시·군 담당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IOST 등

〈표 4-4〉 전북 시·군 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전북 시·군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통합관리제도 설명 -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설명 - 지역 현안 논의 및 질의응답

〈그림 4-1〉 전북 시·군 설명회 회의장면



3) 제1차 전북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 개요

- 일자 및 장소: '21. 7. 23. ~ 8. 3. (서면자문)
- 참석자 : 전북도청 및 시·군 담당자, 관할해경, 어촌계, 전북연구원, 대학교 등

〈표 4-5〉 제1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1차 전북 지역협의회	- 해양공간통합관리제도 및 추진현황 설명 - 용도구역 지정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지역 현안 논의 및 질의응답

〈그림 4-2〉 제1차 전북 지역협의회 회의장면(대면협의)



4) 제2차 전북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 개요

- 일자 및 장소: '21. 9. 29.(수) 스페이스코워 전주캠퍼스점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전북도청 및 시·군 담당자, 어촌계, 관할해경, 전북연구원,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등

〈표 4-6〉 제2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2차 전북 지역협의회	- 해양공간통합관리제도 및 추진현황 설명 - 용도구역 지정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지역 현안 논의 및 질의응답

〈그림 4-3〉 제2차 전북 지역협의회 회의장면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이후 첫 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주체임
-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함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구축방향】 해양공간 보전, 이용, 개발을 위한 해양공간의 계획관리 체계 개편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를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정·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는 해양공간관리계획 과정에서 과학과 참여에 의한 해양공간의 용도 파악을 통한 계획의 수립·이행을 보장하여야 함

□ 해양공간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 기반 구축

○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계획 수립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해양공간 이용·개발, 해양용도구역 지정·관리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

* 법률 시행 이전에 구성된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 준비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감시 기능 강화

○ 해양공간관리 필요성, 여건, 과제, 참여·협력 등에 해양공간관리 관련 홍보

□ 해양공간관리 정책 이행 조직 및 기반 마련

○ 시·도와 관련 연안 시·군은 해양공간계획 시행할 담당 조직 또는 인원을 지정·배치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둔

- 시·도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종합적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수행
- 해양공간계획과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에 적합

□ 해양공간관리 역량 강화 및 인식 증진

○ 해양공간관리가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공간정보체계*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및 보전 관련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

*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 중

-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 교육 및 연수 강화
 - 지역주민 등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 방향 등 상세한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자료 배포
 - 정규교육과정에 반영 및 해양공간관리 전문인력 양성
- *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과과정에 해양공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실천 사항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시킬 필요가 있음.

2) 해양공간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현황과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해양공간 관리에 대해 점검 필요
 - 이행점검 대상은 전북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타 법령에 따른 인가 및 허가 등 해양공간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 해양공간관리 능력 등임.
- 타 부서의 협조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조직 체계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는 해양공간계획체제 발전의 주춧돌
 - 해양공간계획체제의 도입은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과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정보의 분석, 관련 부서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공간계획체제의 발전을 위해 해양공간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 필요

〈표 4-7〉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이행점검 대상	세부 항목	방법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 이용·개발사업 현황과 정해진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 추진 현황 (2)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3) 공유수면 매립 계획 및 추진 현황 (4)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대장, 해양공간정보체계, 관련 담당 부서 자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 대상 해양공간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대상 해역 내 면허어업권, 골재채취허가 등 면허 및 인가·허가 실적 (2) 대상 해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 여부 (3) 위와 관련한 협의 및 조정 실적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관련 담당 부서 자료 등
대상 해양공간의 해양공간관리 능력	(1)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부 (2) 해양공간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3) 대상 해양공간의 현안 및 갈등 사례 (4) 해양공간계획체계 활용 여부 (5)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여부 (6)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담당 부서 자료, 관련 업무담당자 및 지역협의회 의견 등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3호)

-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시에 활용한 기초 정보,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해양용도구역 도면 등은 해양수산정보 공동플랫폼에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

□ 관리계획의 자체평가

-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공간 관리지역위원회의 검토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주기적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참조
 - 자체평가보고서는 해당 년도의 이행 실적 및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며, 앞서 설명한 주기적 점검 결과도 첨부되어야 함.

〈표 4-8〉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I. ○○○○년 자체평가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관리계획 추진경과
3. 평가대상 및 범위(요약)
II. ○○○○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현황
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사항
2. 해양용도구역별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
※ 각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은 미이행 /부분이행 / 완료로 제시
3.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
III. ○○○○년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
1. 총평
2. 평가대상 사업(업무)별 자체평가 결과
1) 평가결과
※ 자체평가 결과는 부적정, 적정, 평가유보로 제시
2) 평가결과 조치계획
- 자체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 방법
3. 기타 건의 사항
【참고】 ○○○○년 이행점검 결과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3호)



부 록

1. 전북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수요
2. 전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3.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4. 전북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5. 공청회 결과
6. 관계기관 협의결과
7. 전북 지역위원회 운영 결과
8.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결과



부록 1 : 전북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수요

1.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의 성격에 따른 특성분석

- 전라북도 지역의 전체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는 200개로 이중 군산시가 68건으로 가장 많고 관광사업이 96건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임.
 - 전라북도 지역의 전체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는 200건으로 그 중 68건이 군산시에 집중되어 위치하고, 부안군이 50건이고 고창군 27건, 새만금 지역 25건으로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 사업 성격에 따라 관광, 마리나, 수산, 에너지, 항만, 환경, 기타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라북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유형은 관광분야가 96건으로 가장 많지만 기반시설 20건, 어항 20건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수요면적은 약 51.9km²이고 새만금과 부안군 일원에 32.4km²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산 부문이 약 22km²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북 지역 수산 분야 이용개발수요 면적 22km² 중 군산시와 부안군 연안에서 20.2km² 집중되어 있음.
 - 수산 부분의 수요가 22km²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생태 9km², 관광 9.6km², 기반시설 6.6km² 어항 3.1km²로 나타남.
- 전체 사업비는 약 41.2조원으로 이중 새만금에 19조원으로 예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예산은 새만금이 19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안군이 14.4조원, 고창군이 1.3조원으로 나타남.
 - 전체 사업비 약 41.2조원 중 에너지 부문이 13.6조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보이고, 다음으로 기반시설 부문 12.3조원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특성이 뚜렷히 나타남.

〈부록표 1-1〉 전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1

구분		관광	기반시설	농지	마리나	보호구역	수산
고창군	개소	17	7			1	
	면적(㎡)	1,400,000					
	예산(백만원)	1,236,804	26,700			7,300	
군산시	개소	35	9		1		2
	면적(㎡)	1,261,412					
	예산(백만원)	481,373	51,375		100,000		300
김제시	개소	4	2		1		2
	면적(㎡)	130,000	6,640,000		82,000		
	예산(백만원)	169,800	1,213,600		18,700		10,092
부안군	개소	33	7		1		
	면적(㎡)	6,811,599			88,245		
	예산(백만원)	737,097	480,400		66,600		
새만금	개소	3	13	1			
	면적(㎡)						
	예산(백만원)	149,980	9,565,890	2,600,000			
부안군, 고창군	개소		1				
	면적(㎡)						
	예산(백만원)		780,000				
군산시, 부안군	개소						2
	면적(㎡)						20,240,000
	예산(백만원)						
전북	개소	4	1				4
	면적(㎡)						1,770,000
	예산(백만원)	88,500	160,500				28,200
전체	개소	96	40	1	3	1	10
	면적(㎡)	9,603,011	6,640,000		170,245		22,010,000
	예산(백만원)	2,863,554	12,278,465	2,600,000	185,300	7,300	38,592

〈부록표 1-2〉 전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2

구분		어항	에너지	항만	환경생태	기타	총합계
고창군	개소	2					27
	면적(㎡)	105,290					1,505,290
	예산(백만원)	31,565					1,302,369
군산시	개소	13	3	1	2	2	68
	면적(㎡)	36,361			8,200,000		9,497,773
	예산(백만원)	132,765	56,954	2,100	500	3,650	829,017
김제시	개소	1		4			14
	면적(㎡)						6,852,000
	예산(백만원)			2,974,200			4,386,392
부안군	개소	4	2		3		50

	면적(m ²)	3,000,000	1,322,314		810,000		12,032,158
	예산(백만원)	448,400	12,610,000		70,800		14,413,297
새만금	개소		3	3	2		25
	면적(m ²)						
	예산(백만원)		909,000	2,705,400	3,230,000		19,160,270
부안군, 고창군	개소						1
	면적(m ²)						
	예산(백만원)						780,000
군산시, 부안군	개소				1		3
	면적(m ²)						20,240,000
	예산(백만원)				3,125		3,125
전북	개소		3				12
	면적(m ²)						1,770,000
	예산(백만원)		34,680				311,880
전체	개소	20	11	8	8	2	200
	면적(m ²)	3,141,651	1,322,314		9,010,000		51,897,221
	예산(백만원)	612,730	13,610,634	5,681,700	3,304,425	3,650	41,186,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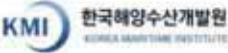
2.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의 해역용도별 구분에 따른 특성분석

- 용도해역 구분에 따른 연안해양 이용개발 수요는 해양관광 부문이 101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68건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임.
 - 전체 사업 수요 200건 중 해양관광 부분 101건을 제외하면 항만항행 부분이 36건, 기타 부분이 28건으로 많은 수요를 보이고 기타 지역은 20건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임.
- 수요면적은 어업활동 부문이 22km²로 가장 많고 군산과 부안군 연안 일원이 20.2km² 가장 많은 면적을 보임.
 - 어업활동 부문을 제외하면 해양관광 부문이 18.2km²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부문이 8.7km²로 많은 면적을 보임.
- 사업비는 기타 부문이 14.5조원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새만금 지역이 19.2조원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임.
 - 기타 부문을 제외하면 에너지 부문이 13.6조원으로 기타 부문의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보이고, 다음으로 항만항행 6.5조원, 해양관광 3.6조원, 환경생태 3조원으로 편차가 심한 특징을 보임.

〈부록표 1-3〉 전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구분		어업활동	에너지	해양 관광	환경· 생태	항만·항행	안전 관리	기타	합계
고창군	개소	1		16	2	4	2	2	27
	면적(m ²)				1,400,000	105,290			1,505,290
	예산(백만원)	150		1,164,104	80,000	32,515	15,000	10,600	1,302,369
군산시	개소	1	4	37		17	6	3	68
	면적(m ²)			8,201,000		35,361		1,261,412	9,497,773
	예산(백만원)	300	56,954	484,791		239,815	10,204	36,953	829,017
김제시	개소	2		5		6		1	14
	면적(m ²)			170,000		82,000		6,600,000	6,852,000
	예산(백만원)	10,092		276,800		2,992,900		1,106,600	4,386,392
부안군	개소		2	34	1	6		7	50
	면적(m ²)		1,322,314	9,811,599		88,245		810,000	12,032,158
	예산(백만원)		12,610,000	613,140	5,800	502,600		681,757	14,413,297
새만금	개소		3	5	1	3		13	25
	면적(m ²)								
	예산(백만원)		909,000	965,580	2,890,000	2,705,400		11,690,290	19,160,270
부안군, 고창군	개소							1	1
	면적(m ²)								
	예산(백만원)							780,000	780,000
군산시, 부안군	개소	3							3
	면적(m ²)	20,240,000							20,240,000
	예산(백만원)	3,125							3,125
전북	개소	4	3	4				1	12
	면적(m ²)	1,770,000							1,770,000
	예산(백만원)	28,200	34,680	88,500				160,500	311,880
전체	개소	11	12	101	4	36	8	28	200
	면적(m ²)	22,010,000	1,322,314	18,182,599	1,400,000	310,896		8,671,412	51,897,221
	예산(백만원)	41,867	13,610,634	3,592,915	2,975,800	6,473,230	25,204	14,466,700	41,186,350

부록 2 : 전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ID

전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2020110609-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전북-서해안 EEZ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전북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양공간 활용과 현안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문결과는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희정 부연구위원 외 연구진

문의사항 (주)리서치앤리서치(R&R) 실사 담당자 : 남소연 차장(02-3484-3094)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면접 일시	___월 ___일 ___시	어업인 여부		1) 어업인 2) 일반국민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 확인 _____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 만 19세 미만 설문중단
S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1) 군산시 2) 김제시 3) 부안군 4) 고창군 5) 그 외 지역 ▶ 조사 중단
SQ4	귀하의 거주 지역은 바다와 접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조사 중단

- 1 -

PART A. 전북 해양공간 인식

Q01. 전북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Q02. 현재 전북 바다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아래 보기 중 세 가지를 선택하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양식 및 수산업 등 어업활동을 위한 공간
- 2) 해수욕장, 마리나, 레저시설 등 관광·여가를 위한 공간
- 3) 산업단지, 조선소, 재생에너지(풍력발전, 태양광 등) 시설 등 산업공간
- 4) 항만의 기능과 선박의 운항 등을 위한 공간
- 5) 어촌마을, 해안인접 주거지역 등 정주공간
- 6) 기타()

Q03. 전북 바다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아래 보기 중 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1순위 () 2순위 ()

- 1) 항만, 산업단지, 조선소, 재생에너지 시설 등 산업자원
- 2) 어류 등 풍부한 수산자원
- 3) 어촌마을, 전통어구어법 등 해양역사·문화자원
- 4) 마리나, 해수욕장 등 해양레저관광자원
- 5) 해양 및 해안 생태·경관자원
- 6) 기타 ()

Q04. 전북 바다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정 2) 부정 3) 보통 4) 긍정 5) 매우 긍정

Q05. 당신의 삶은 전북 바다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습니까?

- 1) 전혀 무관 2) 무관 3) 보통 4) 관련 5) 매우 관련

Q06. 현재 전북 바다는 여러 방식으로 이용·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용·개발을 통해 바다 환경 및 생태계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변화 없음 2) 대체로 변화함 3) 변화함 4) 매우 변화함 5) 모르겠음

Q07. 다음은 전북 바다로부터 예상되는 혜택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혜택이 개인(당신)과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를 각각 0점에서 10점까지 표시하세요.

* 참고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중요도가 높음

< 설명 >

- (1) 수산물 생산: 바다에서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등
- (2) 광물자원 제공: 바닷모래나 여러 광물
- (3) 에너지 생산: 해상풍력발전 등 바다를 이용한 전기 생산
-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해양생물의 산란지 및 서식지
- (5) 오염 물질 정화: 육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정화
-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낚시, 수영 등 사람들의 휴식 및 레저 공간 제공
-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심리적 안정과 예술적 영감, 삶의 터전으로써 바다의 전통·문화적 혜택 (어구·어법, 문화재, 종교 등)
- (8) 기후 조절 기능 :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감소
- (9) 재해 및 위험 관리 : 자연재해(파도·해일 등)로부터 보호 기능
-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영양염 순환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생산 활동 지원
- (11) 해상 교통 및 운송 서비스 : 해상 교통과 물류 활동 지원

1) 개인의 중요도(각 항목별 점수 표시)

항 목	중요도 낮음	<<<<	보통	>>>>	중요도 높음						
(1) 수산물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2) 광물자원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3) 에너지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5) 오염 물질 정화	0	1	2	3	4	5	6	7	8	9	10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0	1	2	3	4	5	6	7	8	9	10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8) 기후 조절 기능	0	1	2	3	4	5	6	7	8	9	10
(9) 재해 및 위험 관리	0	1	2	3	4	5	6	7	8	9	10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11) 교통 및 운송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2) 지역의 중요도(각 항목별 점수 표시)

항 목	중요도 낮음	<<<<	보통	>>>>	중요도 높음						
(1) 수산물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2) 광물자원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3) 에너지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5) 오염 물질 정화	0	1	2	3	4	5	6	7	8	9	10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0	1	2	3	4	5	6	7	8	9	10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8) 기후 조절 기능	0	1	2	3	4	5	6	7	8	9	10
(9) 재해 및 위험 관리	0	1	2	3	4	5	6	7	8	9	10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11) 교통 및 운송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PART B. 전북의 주요 해양활동 간 갈등

주요 해양활동에 대한 설명

- ☞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해양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동시에 해양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서로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공간정보를 분석해서 바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요를 조정하고,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다음 설문에서는 주요 해양활동들(아래 설명)의 상충(相衝) 형태와 정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설명/사례
어업 활동	<p>우리 생활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산물을 바다에서 잡거나 기르는 활동</p> 
골재·해저광물 자원 채취	<p>골재·해저광물 채취는 해저의 표층 및 지질구조에 존재하는 모래, 자갈, 석유 및 천연가스, 해수에 녹아있는 소금, 마그네슘, 금, 은 등을 채취하는 활동</p> 
신재생에너지 개발	<p>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해양의 바람, 파도, 조석, 염도, 온도차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활동</p> 
해양관광	<p>해양관광 활동은 해수욕, 바다낚시, 해양레저 활동, 야생동식물 관찰 등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해양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 및 여가 활동</p> 

주요 활동	설명/사례
환경·생태	<p>해양환경과 생태 보호 활동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 해양서식지 복원, 오염 관리 등</p> 
연구·교육	<p>연구 및 교육 활동은 바다를 대상으로 해양조사, 학술적 연구 등을 통해 얻는 정보와 지식과 관련한 활동과 바다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활동</p> 
항만·항행	<p>항만·항행 활동은 항만의 개발, 유지, 운영하는 활동과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활동</p> 
군사활동	<p>군사 활동은 해양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과 관련한 활동</p> 
안전관리	<p>안전관리는 해양 시설을 보호하고,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 등을 위한 조치</p> 

Q08. 10년 전과 비교해 전북 바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게 2) 더 적게 3) 변화 없음 4) 더 많이 5) 매우 많이

Q09. 10년 전과 비교해 전북 바다를 이용하는 방식이 얼마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단순 2) 조금 단순 3) 변화 없음 4) 조금 복잡 5) 매우 복잡

Q10. 아래 표는 대표적인 해양활동을 세분화한 것이다. 각 활동(구분)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세부 활동들의 중요도(비중)를 작성하세요

* 예를 들어, 어업활동 중 어선어업과 양식업의 중요도가 같을 경우 50%, 50% 기입)

구분	세부 활동	비중(%)
1) 어업활동	(1) 어선어업	%
	(2) 양식	%
	합계	100%
2) 에너지 개발	(1) 풍력 및 조류 등	%
	(2) 조력발전	%
	합계	100%
3) 해양관광	(1) 해변관광	%
	(2) 낚시, 유람	%
	합계	100%
4) 환경생태	(1) 보호구역	%
	(2) 우수한 생태계	%
	합계	100%
5) 항만 항행	(1) 항만구역	%
	(2) 항로 등 항행구역	%
	합계	100%

Q11. 다음은 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 간 상충(相衝)의 여부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각 활동 간 상충 정도(갈호 안)를 1~5점으로 기입하세요. (5점은 상충 정도가 매우 높은 것)

구분	어업 활동	골재·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골재·광물	()점							
(3) 에너지개발	()점	()점						
(4) 해양관광	()점	()점	()점					
(5) 환경·생태	()점	()점	()점	()점				
(6) 연구·교육	()점	()점	()점	()점	()점			
(7) 항만·항행	()점	()점	()점	()점	()점	()점		
(8) 군사활동	()점	()점	()점	()점	()점	()점	()점	
(9) 안전관리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PART C. 해양공간계획제도 및 전북 해양공간관리 방향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한 설명

- 다양한 해양활동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자 해양공간계획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양공간계획제도는 토지이용계획과 유사하게 해양공간을 더욱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활동별로 사전에 해양공간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해양공간관리 여건 변화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해양공간의 특성 및 해양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설정·관리하는 등 우리나라 쏘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해양용도구역(9개)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 ** 지역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 ('16~'17) 경기만 시범해역 → ('18) 부산·경남 → ('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 ('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도·경북·동해안 EEZ

해양용도구역 어떤?



- 다음 설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전북 해양공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Q12.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1) 몰랐다 2) 들어 본적은 있다 3) 내용을 알고 있다

Q13.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공간을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제도가 해양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제도 (법제15조)

-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이행수단으로써 **해양공간적합성협의제도**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 및 구역 등을 지정 혹은 변경 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대상 : 해양관광단지 개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광물 골재자원 채취, 항만 및 어항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어장개발 등 해양의 이용개발에 관한 타부처 및 행정기관의 법정계획

- Q14.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 4) 알고 있다 5) 매우 잘 안다
- Q15.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가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Q16. 해양공간계획제도가 다양한 해양활동들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기여 못 함 2) 기여 못 함 3) 보통 4) 기여함 5) 매우 기여함
- Q17. 다음은 해양공간계획제도가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요소로, 각 요소별 중요도를 기입하세요.**

평가 항목	중요도				
	낮음	<<<	보통	>>>	높음
1) 해양공간계획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1	2	3	4	5
2) 행정 조직(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조직 정비 등)	1	2	3	4	5
3) 해양공간정보(해양공간정보의 수집·가공·관리 등)	1	2	3	4	5
4) 법률 및 제도의 정비(시행령 등 세부적인 규정 완비)	1	2	3	4	5
5)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주민 설명회, 지역협의회 등)	1	2	3	4	5
6) 관련 계획·제도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1	2	3	4	5

- Q18.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바다의 어떤 가치(아래 평가항목)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래 항목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기입하세요.**

- ☞ 보전 : 바다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
- ☞ 이용 : 바다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해양스포츠, 해상교통로, 어장으로 이용
- ☞ 개발 : 해양공간이나 자원을 유용하게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예로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관광 시설 개발, 해양광물자원 개발, 해양구조물 건설 등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일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1) 보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이용
2) 보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개발
3) 이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개발

Q19. 10년 전과 비교해 전북 바다를 이용하는 여러 활동 간 갈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감소 2) 조금 감소 3) 변화 없음 4) 조금 증가 5) 매우 증가

Q20. 향후에 전북 지역의 해양공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 필요

Q21. 미래 전북 바다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아래 항목 중 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1순위 () 2순위 ()

- 1) 아름답고 건강한 바다
- 2) 매력적인 해양관광·휴양 공간
- 3) 풍요로운 수산업 공간
- 4) 항만 및 해양 물류를 지원하는 공간
- 5) 해양에너지와 해양산업을 위한 공간
- 6) 기타 ()

Q22. 다음 전북 현안 중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아래 항목 중 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1순위 () 2순위 ()

- 1) 항만 건설, 재개발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추진
- 2)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 훼손
- 3) 해양레저활동 수요 증가와 공간 확대
- 4) 해양에너지 개발 수요에 따른 영향 및 갈등
- 5) 수산자원 고갈 및 조업구역 축소
- 6) 연근해 어선-레저선박 안전사고 증가 및 선박 통행에 따른 타 활동과 상충

Q22-1. 이외에 전북 해양활동과 관련한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Q23. 22번 문항에서 전북의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현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세요.

1순위 () 2순위 ()

- 1) 갈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
- 2) 바다 환경이나 생태계에 변화를 줄 우려가 있음
- 3) 이용 및 개발 수요가 집중
- 4)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안
- 5) 기타()

Q24. 귀하께서는 전북 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내용을 알고 있다

Q25.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찬성 2) 찬성 3) 의견 없음 4) 반대 5) 매우 반대

Q30.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위한 조직 혹은 기관은 어느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존 단일 부처 :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 2) 범부처 조정 또는 중재위원회
- 3) 법원
- 4) 기타()

PART D. 이해관계자 참여 · 협력 및 인식 증진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와 지역협의회 역할

- ☞ 해양공간의 갈등을 줄이고, 해양 가치를 유지 증진하기 위한 해양공간 통합관리제도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은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반입니다.
- ☞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마련
 - 특성평가→용도구역(안) 마련 →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및 검토
 - ②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 ③ 지역위원회 심의
 - ④ 승인 신청(사도지사→해수부)
 - 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해수부→사도지사)
 - ⑥ 고시 및 통보
- ☞ 「해양공간계획법」은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협의회: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회(시행령 제6조)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



Q31. 해양공간계획을 수립·이행하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Q31-1. 28번 문항에서 1, 2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길 것이다.
2) 지역협의회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3) 기타 ()

Q32. 지역협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래 항목 중 두 개를 표시해주세요.

- 1) 참여 시점 : 계획 수립 초기부터 구성하여 운영 ()
2) 참여 대상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3) 참여 방식 : 온-오프라인 참여, 설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프로세스 구축 ()
4) 참여 결과 피드백 : 개선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는 방안 ()

PART E. 응답자 특성 문항

DQ1. 귀하께서는 전북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다습니까?

- 1) 5년 미만 2) 5~10년 미만 3) 10~20년 미만 4) 20~30년 미만 5) 30년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업/임업/어업 2) 자영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기능/숙련직
5) 생산/노무직 6) 사무직 7) 전문/자유직 8) 가정주부
9) 학생 10) 무직/퇴직 11) 기타

DQ3.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재학 포함)

-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 졸업 4) 대학원 졸업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기준 : 2020년 9월)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분야	
1	관	김호덕	전라북도 해양항만과	과장	계획관리
2	관	최재현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지원팀장	계획관리
3	관	한상봉	군산시 항만해양과	과장	계획관리
4	관	유정현	고창군 해양수산과	팀장	계획관리
5	관	박금남	김제시 새만금해양과	과장	계획관리
6	관	이호성	부안군 해양수산과	과장	계획관리
7	연	임승현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계획관리
8	관	송현경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항무담당	항만항행
9	연	나정호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	부연구위원	항만항행
10	관	김장근	군산해양경찰서	과장(경정)	안 전
11	관	연홍석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경정)	안 전
12	연	송재희	갯벌연구센터	선임연구사	연구교육
13	민	조현철	군산시 하제어촌계	어촌계장	수산어업
14	민	노경호	김제시 안하어촌계	어촌계장	수산어업
15	민	권영주	고창군 하전어촌계	어촌계장	수산어업
16	민	김성호	부안군 도청어촌계	어촌계장	수산어업
17	민	김인배	부안군 대리어촌계	어촌계장	수산어업
18	민	심명수	자율관리어업 전라북도연합회	연합회장	수산어업
19	학	김형섭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환경생태
20	학	강순화	우석대학교	교수	해양관광
21	학	송귀봉	군장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에너지
22	관	권영우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작전계획과장(소령)	국방
23	연	차정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에너지
24	연	명금옥	한국생태연구원(주)	책임연구원	골재광물

부록 4 : 전북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 제1차 전북 지역협의회 의견제출 현황 및 검토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1	최재현 전북도 신재생 에너지과	○ 2021.8.9.일자로 산업부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신청함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수립에 참고 및 집적화단지 지정 시 반영 요청	○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수립에 참고 하며 집적화단지 지정 시 반영 예정	수용
2	한상봉 군산시 항만 해양과	○ 방축도, 명·말도 인근 환경·생태 계관리구역 해제 - 마을어장 개발 등 어민들의 원활한 조업구역 및 생계유지를 위해 어업활동 보호 필요	○ 방축도, 명·말도 인근 보농도의 무인도서 관리유형이 개발 가능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삭제	수용
		○ 양식장 주변 공간의 어업활동보호 구역 지정 - 양식장 반경 4km 범위	○ 양식장 반경 4km 기준은 낙도 연접된 수면의 마을어업 면허가 가능한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북도 해역의 모든 낙도 주변 해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 - 「수산업법 시행령」제9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참조 ※ 참고 : 양식장 주변 1km 반경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불수용
		○ 개야도 인근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제 - 습지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 불 필요	○ 공간계획법에 따라 기존 법정 구역(습지보호지역 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습지보호지역이라 하더라도 면허를 받은 양식장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함.	불수용
		○ 군산시 연안해역의 골재·광물자원 개발구역 추가 지정 - 공간특성평가 시 EEZ 접경해역의 골재부존도 반영 - 골재채취예정지 및 채취단지 미지정 지역이라도 향후 자원개발가능성	○ EEZ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에서 수립하며, 골재·광물자원 특성평가 시 광업권 설정 현황, 골재채취예정지, 광물자원 부존량 등을 고려함 ○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4조 1항에 근거해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일부 수용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중복 지정 필요	○ 해양용도구역의 중첩 지정은 불가하며, 핵심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는 공간은 용도구역 내 관리구역으로 지정 가능	불수용
4	임승현 전북연구원	○ 전북 해역의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재검토 - 대상 해역 면적의 약30%, 특성 평가 1.7 이하로 어업활동보호구역 면적의 축소 필요 - 향후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미래 갈등요소 잠재	○ 공간특성평가 값은 해당 공간 해역의 특성을 점수로 나타낸 것이며, 동일 격자의 용도 간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함. ○ 다만 격자의 통계적인 수치 값으로 전북해역의 어업특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음	불수용
		○ 전북 해역의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확대 - 십이등파도·상왕등도,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해역에 대한 추가 용도구역 지정 필요 - 지정면적 규모(대상해역의 5~10%)와 위치 선정(생태자원과 서식지 주변 완충공간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필요 - 곰소만 진입 해역에 대한 용도구역 지정으로 해양생태계축 형성	○ 용도구역은 해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상호 상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선순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정됨에 따라 전체용도 중 특정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해역이 상이할 수 있음 ○ 해양공간계획제도 개선사항*으로 추후 검토하겠음 * 특정용도 지정 시 최소한의 규모 기준 설정 여부	불수용
5	나정호 전북연구원	○ 주민인식조사 결과 해석방법에 대한 부연 필요 ※ 자료집 31쪽	○ 관리계획 상에 주민인식조사 결과의 해석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겠음.	수용
		○ 전북바다 향후 지향발전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 (자료집 33쪽) 조사대상이 어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으로 한정되어 군산항, 새만금신항의 항만물류 거점을 어업병해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봄	○ 주민인식조사는 전문가(공무원)와 주민(어업인 포함)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참고하겠음	일부 수용
		○ 자료 최신화 필요(자료집 35쪽)	○ 관련 자료 제공 시 최신 자료 반영 예정(새만금 내측은 제외)	일부 수용
		○ 항만·항행구역과 어업활동보호구역이 접하는 지점에 대한 안전관리	○ 통항패턴, 어업활동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일부 수용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p>구역 지정 검토</p> <p>- 비응항 부근은 낚시어선의 출입이 많고, 어업활동보호구역이 위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 필요</p>	<p>○ 비응항 부근에 위치하는 양식장(2개)*의 한정면허 및 면허기간을 확인하여 변경 조치</p> <p>* 마을어업 - 비응동지선 군산시 제5324호(20.07.14 ~ 21.07.13)</p> <p>* 마을어업 - 비응동지선 군산시 제5317호(20.03.01 ~ 22.12.31)</p>	
		<p>○ 관리방안 중 “항만시설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문구 수정 요청</p> <p>- 금강하구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토사퇴적 및 주기적 준설이 필요</p> <p>※ 자료집 70쪽</p>	○ 관리방안 해당 문구 수정하였음	수용
		○ 군산항 항로 및 정박지를 고려해 관리구역(SS-520103-01) 재검토 필요	○ 군산항 인근 항만시설을 고려하여 중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 활동 삭제	수용
			- 관리구역(SS-520103-01) 삭제	
6	송재희 국립수산 과학원 갯벌연구 센터	○ 정부(전북도, 국가) 차원에서 '전북 해양의 자연 생태계 조사'를 정기적(5년)으로 실시하는 것을 해양공간 계획의 일부로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 제안	○ 현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 중으로 정기적인 조사 실시 및 공간계획 반영여부는 전북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수용
		○ 금강하구역-개야도로 이어지는 해역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은 골재채취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되거나 채굴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반영	수용
		○ 군산시 유부도 갯벌복원사업(폐염전)을 최근에 추진한 바 있고, 서천습지 보호지역과 생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어 용도구역 지정 시 서천군·해수부(해양생태과)의 갯벌(습지)관리계획과 상충 가능성 고려	○ 유부도 주변 해역은 환경·생태계 관리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음.	
		○ 고군산군도 인근 해양관광구역 확대 요청	○ 구체적인 위치 정보 등 자료 제공 시 검토 예정	불수용
		- 새만금방조제와 최근에 개설한 연육도로, 신시도 수목원의 개장 등으로 관광수요 증가	○ 현재 고군산군도 인근의 해양관광 구역은 해수욕장, 낚시어선 밀집 구역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7	연홍석 부안해양 경찰서	○ 새만금 배수갑문 내·외측(반경 2km) 안전관리구역 지정 - 배수갑문 개방 확대에 따른 조업 및 선박 항행을 위한 안전 조치 필요	○ 새만금 배수갑문 외측 2곳(신시도, 가력도) 안전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반경 2km 설정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 요청함.	수용
8	김인배 부안군 대리 어촌계	○ 어업 활동을 위해 곰소만·위도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축소 요청	○ 곰소만·위도 주변 지역은 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생태계관리 구역으로 지정 -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생물종 다양성 등을 고려함 ○ 용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어업 활동 등 행위제한이 없음	일부 수용
		○ 해상풍력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요청	○ 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 상생발전 방안('20.7.17.)에 따라 - 해상풍력 사업지는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거나 발전사업 허가 후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경우에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	불수용
		○ 위도면 부근 해역의 해양관광구역 확대 요청 - 거륵도~벌금항 사이, 위도·왕등 도로부터 5km 이격	○ 위도면 부근 해수욕장과 낚시 밀 집공간에 해양관광구역이 기 지정 되어 있으며, 나머지 어업활동 보호구역(면허를 받은 양식장 존재)으로 인해 중복 지정이 불가함.	불수용
9	김형섭 군산 대학교	○ 곰소만 입구, 섬 주변 어업활동보호 구역 확대 요청 * 일부 조간대 해역은 마을어장, 양식장이 있더라도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확대 필요	○ 곰소만 입구, 섬 주변의 양식장, 어획량, 어업밀집도 등을 고려한 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어업활동 구역을 지정함 - 곰소만은 타법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설정되어 용도구역 중복 지정이 불가함	불수용
		○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시 특성평가 결과와 불일치 재검토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에 한정하여 지정 필요	○ 자료 제공 시 반영 여부 검토 * 관련 자료 요청	검토 중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 고군산도 부근 해양관광구역 지정 검토 - 말도 주변 낚시어선 밀집지역	○ 고군산도 부근에 낚시어선 활동이 밀집하나 어업활동도 활발한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활동 밀집지역은 관리구역(차 우선순위)으로 해양관광으로 부여하였음 * 참고: 관리구역(FH-520110-01)	일부 수용
		○ 하왕등도 연구·교육보전구역 지정 검토 - 외해역의 특징을 보이는 공간	○ 자료 제공 시 반영 여부 검토 * 관련 자료 요청	검토 중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어업인 의견 반영 -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필요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절차상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수용
10	차정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표기와 향후 일정 제시	○ 해당 내용을 자료집에 표기함. - 자료집 마지막(83쪽)에 향후 추진 일정 포함	수용
11	명금옥 한국생태연구원(주)	○ 새만금 내측 공유수면관리계획과 연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 새만금 내측은 해수유통과 공유수면 관리 중이며, 미래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 활용방안 도출을 위해서 계획 간 연계 필요	○ 새만금 내측은 '새만금사업법' 제2조에 따라 호소로 정의되어 있어 해양공간계획 수립 대상해역이 아님 - 다만, 새만금 내측은 내륙공유수면에 해당될 수 있음	불수용
12	송귀봉 군장 대학교	○ 용도구역 내 용도가 중첩될 경우 우선순위 설정	○ 현재 용도구역 내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이용행위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반영하고 있음	수용
		○ 해양에너지개발 촉진을 위한 해양공간 이용자 간 거버넌스 마련으로 개발 투명성 확보	○ 전북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 운영 중(산업부, 해수부 포함)	일부 수용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수산생물 조사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최대 지속적 생산량 실현 -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산자원의 자율갱신력 유지할 수 있는 어업 방안 마련	○ 수산자원의 자율갱신성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관련 제도(수산자원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겠음.	-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13	조현철 군산시 하제 어촌계	○ 새만금 내측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요청 - 수질 개선을 위한 바지락 채취 등 한정면허 허용	○ 새만금 내측은 '새만금사업법' 제2조에 따라 호소로 정의되어 있어 해양공간계획 수립 대상해역이 아님 * 어업면허 등 허가는 지자체 소관 사항임	불수용
14	권영주 고창군 하전 어촌계	○ 곰소만 내측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축소 요구 - 새로운 어업권 개발을 위한 조치	○ 곰소만 갯벌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반영하였으며, 갯벌 주변의 양식장 등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반영함	불수용
15	김성호 부안군 도청 어촌계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신규 어업면허 취득 시 제약사항에 대한 확대 요구	○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어업활동에 대한 제한이 규제사항은 없음 *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타 법률에 따름	수용
16	심명수 군산시 비용도 어촌계	○ 에너지개발구역 내 어선출입 가능 여부와 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설명 필요	○ 해양공간계획상 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타 행위의 제약사항은 없음. 다만 에너지개발구역(해상풍력단지 등) 어선출입 가능여부는 단지 설계, 안전성 등 고려하여 공유수면 권리권자 또는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수용

2) 제2차 전북 지역협의회 의견제출 현황 및 검토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1	고창군 하전어촌 계장	○ 해역 내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설정으로 어업행위 등 타 이용을 제약 우려됨	○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어업행위가 밀집된 공간에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이 설정된 공간이라도 신규 면허가 가능하므로 어업행위를 제한하지 않음. ○ 에너지개발구역은 현재 운영 중인	수용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해상풍력발전시설에 한해 용도구역으로 설정하였음.	
2	부안군 대리어촌 계장	○ 위도 부근 7km 이내, 위도와 왕 등도 사이를 어업활동보호구역으 로 지정 요구. 해상풍력개발 민관 협약을 통해 해당 공간은 해상풍 력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협약	○ 현재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어업행 위(VPASS, 어획량) 관련 데이터 에 근거해 설정함. ○ 협약의 내용(해양공간·활동의 제한 등)을 검토하여 관리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수용
		○ 위도의 관광 이용·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거륵도 부근의 해양관 광구역 지정 요구	○ 거륵도 부근에 위치하는 절대보전 무인도서(오조도, 내조도)는 규정* 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1km를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구획함. ○ 거륵도 부근의 현재 낚시활동 등 을 반영하여 관리구역으로 반영 가능함.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일부 수용
3	군산시 하제어촌 계장	○ 어촌계 발전을 위해 인근 해역 유희지의 공유수면 접사용 허가 가 용이하도록 해수부 검토 요청	○ 공유수면 허가 관련 권한은 대상 에 따라 담당기관(중앙정부, 지자체) 이 상이함. 공유수면 관련 담 당자에게 의견 전달하겠음.	불수용
4	송귀봉 군장 대학교	○ 「해양공간계획법」제정 취지를 고 려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및 이동 경로 등 고려한 어민 생계를 위한 대안이 필요함	○ 「해양공간계획법」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에 제시된 관련 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직접 관련 없음

부록 5 : 공청회 결과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주민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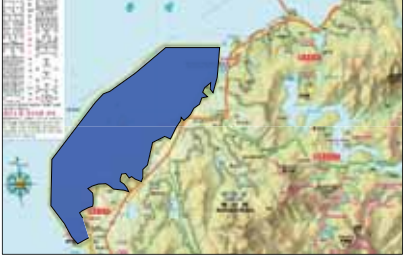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1	전북자율 관리어업 회장 (심명수)	○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통한 어업 활동 제약 우려	○ 공간계획에 따른 어업활동에 제약 은 없으며, 어업활동이 많은 공간 을 우선 용도로 지정함으로써 어 업활동 보호 효과 기대	불수용
2	위도 대리 어촌계장 (김인배)	○ 해상사격훈련구역 축소 건의, 일 관성 있는 해양공간계획 제도 정 착을 위해 정부 부서간 협력 필 요	○ 공군, 해군 등 개별 훈련구역의 통합 및 축소가 필요함에 공감, 지역에서 협력하여 지속 건의하여 포탄 수거 등 환경정화 함께 추 진 필요	일부 수용
3	군장대 교수 (송귀봉)	○ 어족자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 여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필요, 해양생태계 보전과 이용개발의 균형 유지	○ 향후 제도개선 사항	직접 관련 없음
4	해양레저 관계자	○ 직도가 수중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레저활동이 제한, 금지구역 해제 요청	○ 공군사격훈련구역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다이버 안전을 위해 지 정됨	불수용

부록 6 : 관계기관 협의결과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관계기관 제출 의견 및 검토결과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1	군산시 수산 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간 이행충돌 발생의 여지가 있어 계획 전문의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pp. 46-54)와 부록 1 내용 삭제 요청 ○ 수요현황을 시군별로 구분하여 반영된 수치(면적)자료의 법률적 근거 등에 대한 합리적 설명(제시) 없이 해양공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 부적합(p.49-54, p.143-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현황을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면 근거 없이 시군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라북도 연안관리해역을 기준으로 계획서에 연안해역 기능구(안)를 반영함이 적합. ○ 특성분석 자료(수치)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인용 자료로서의 타당성·합리성·적정성·인정성·논리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p.143-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부분은 관리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전북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지자체 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의 지자체별 이용 및 개발 수요에 대한 인용 자료의 출처와 근거 추가하고, 부록 1 삭제하겠음. 	일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내 면허어업은 항만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 어업활동(마을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으로 계획(안)〈표 3-16〉전북항만구역 내 양식장 현황에 표기된 면허기간을 적용하여 기간만료일 이후에는 항만·항계구역내 상충조정 관리구역에서 제외되어 어업활동이 제한받는 구역으로 이해될 수 있어 어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p.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운영 방식에 따라 항만·항행 구역은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구역으로, 면허어업의 경우 면허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며 기간 만료 후에는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4조(핵심활동 종료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 해당 부분은 그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원안대로 유지 	불수용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내 어업활동(양식장)이 활발한 공간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면허기간 만료이후에 관리구역 제외 등 조정 필요” → “항계내 “중간생략”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문구 수정 		
2	고창군 해양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용도구역 지정 후 지정된 용도 이외의 다른 활동을 금지하거나 별도의 행위제한 등 규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9개 구역 중 특히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어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구간이므로 추후 제한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p.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타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어업 활동에 대한 제한이 규제사항은 없음. -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타 법률에 따름. 	수용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평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구역(군산항, 새만금신항), 항로, 정박지, 해상교통특성(항적) 등을 고려하여 항만·항행구역(안)을 지정하였으나, 군산항, 새만금신항 진입부근 일대 수역 및 연안항(상왕등도항)에 대해서만 일부 반영됨(p.120) - 남북방향의 국제항해 선박 외해 통항로(분홍색) 및 내항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연안 통항로(청색), 군산항으로 진출입하는 동서방향의 통항로(녹색)에 대해 항만·항행구역 추가 반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항행구역 지정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항만구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정박지 및 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분리수역 등으로 이를 모두 반영하였음. - 관습적 통항로를 항만·항행구역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선박 항행 활동을 저해하지 않음. ○ 관습적 통항로는 전북도의 항만·항행구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으며, 타 용도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영하기 어려움. 	불수용
		 <p><전북 연안해역 관습적 통항로 현황></p>		
4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생태보호구역을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상경계에 맞춰 확대 (p.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반영 	수용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p>- 전북 해양공간계획에 따르면 국립공원구역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에 포함(아래 도면 중 국립공원 구역 누락)</p>  <p>〈환경·생태계관리구역(녹색)〉</p>  <p>〈국립공원구역(하늘색)〉</p>		
		<p>○ 어업활동구역 내 국립공원과 중첩되는 공간에서 자연공원법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조치 필요(p.107)</p> <p>- 공간 관리 방안(“어업활동과 상충하는 이용행위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진행”) 아래에 “국립공원과 중첩되는 어업활동공간에서는 자연공원법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생태계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어업활동 허용” 세부 문구 추가</p>	<p>○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반영</p>	<p>수용</p>
		<p>○ ‘마을어업’ 및 ‘정치망어업’(수산업법), ‘양식업’(양식산업발전법)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필요(p.109)</p>	<p>○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반영</p>	<p>수용</p>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항목("법정구역으로 지정된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고려사항")에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반영된 경우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행위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을 관리" 문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구역 내 격포, 고사포 해변(해수욕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지역 내 취사·야영 등 위법행위 방지 및 낚시 등 레저 활동에 대한 제한 필요(p.114) - 공간 관리 방안("해양관광·레저 활동과 시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혹은 완화")에 "「자연공원법」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는 해수욕장 내 취사·야영 등 무질서행위 발생 시 관련 활동을 제한하고, 낚시 등 레저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세부 문구 추가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반영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 방지(p.114) - 공간 관리 방안("동 구역에서 해양 이용·개발 시 해양관광과 레저 활동에 미치는 영향 점검")에 "관광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개발 이후 해양 생태계 및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발견시 해양관광활동 제한" 세부 문구 추가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반영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농도는 '03년 특정도서 105번 지정으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설정되어야함(p.115) - "보농도의 무인도서 관리유형이 	○ 현재, 위도면 인근 보농도의 무인도서 주변 해역의 관리유형은 개발 가능으로 설정되었음. 이를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을 조정하였음.	불수용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개발가능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생태계관리구역설정을 삭제함” 문구 삭제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정보조회 결과(2019.11.27.일 고시) 참고 : ‘개발가능’(「무인도서법 제 10조」):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법정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고려사항 추가 필요(p.117) - 신규 항목(“법정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고려사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이 환경·생태보호구역으로 반영된 경우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행위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생태보호구역을 관리” 문구 추가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반영	수용																			
		○ 표 내용(수치) 수정(p.16) <표 6-1> 전북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 해당 수치를 수정하였음.	수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명칭</th> <th>위치</th> <th>지정 년도</th> <th>면적 (km²)</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습지 보호 지역</td> <td>부안 썰포만 갯벌</td> <td>부안군</td> <td>2006</td> <td>4.9</td> </tr> <tr> <td>고창 갯벌</td> <td>고창군</td> <td>2007</td> <td>64.66</td> </tr> <tr> <td>국립 공원</td> <td>변산 반도 국립 공원</td> <td>부안군</td> <td>1988</td> <td>총 153.9 (육상 136.71, 해면 17.23)</td> </tr> </tbody> </table>	구분	명칭	위치	지정 년도	면적 (km ²)	습지 보호 지역	부안 썰포만 갯벌	부안군	2006	4.9	고창 갯벌	고창군	2007	64.66	국립 공원	변산 반도 국립 공원	부안군	1988	총 153.9 (육상 136.71, 해면 17.23)		
구분	명칭	위치	지정 년도	면적 (km ²)																			
습지 보호 지역	부안 썰포만 갯벌	부안군	2006	4.9																			
	고창 갯벌	고창군	2007	64.66																			
국립 공원	변산 반도 국립 공원	부안군	1988	총 153.9 (육상 136.71, 해면 17.23)																			
		○ 2011년 이후 변산반도국립공원 공원구역 반영 필요(양식장 현황도 현행화 필요)(총도) - 2010년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해역의 공원구역이 변경되었으며 양식장 구획도가 수시로 달라지고 있음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반영	수용																			
	국방부	○ 협의 지역은 월 2회 이상 해상측 각조치 사격을 실시하는 사격장	○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군사활동구역	일부 수용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p>으로 도비탄에 의한 해상활동 선박의 피탄 가능성 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격 전 사격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해경과 협조하여 선박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군사활동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아 군사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고창군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고창군 구시포 해수욕장(비재) 일대에 대한 군사활동구역(소총의 사거리 고려 최소 2km 범위 내 구역 설정) 추가 지정 <p>※ 사격장 위치: 위도(126°25'56"), 경도(35°26'21")</p> <p>※ 관할부대: 육군 35사단 작전참모처(063-640-9307)</p>	<p>으로 설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군사시설구)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상사격 훈련구역 등을 군사활동구역으로 반영 <p>○ 현재 의견은 법적 근거 부재, 지역 주민의 협의 과정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제공자료의 검토 후 반영하겠음.</p>	
		<p>○ 현 계획으로는 군 작전활동에 영향을 주는 건축 및 시설물 등의 위치, 고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작전성 검토가 제한되어 세부계획 수립시 관할부대 재협의 필요</p> <p>※ 관할부대: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070-8896-6311)</p>	<p>○ 현 관리계획(안)은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것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이용행위 및 현황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육지부의 시설물(위치, 고도)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님.</p>	직접 관련 없음
		<p>○ 직도 공군 공대지 사격장 훈련시 5마일 이내에 접근된 배, 수상 부유장비, 해양관측장비 등 파손 및 손상의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중 사격(미사일 발사)은 더 먼거리(상기 좌표 5마일 밖)에서 시작되므로 직도로부터 10마일 이상 이격 필요 <p>※ 관할부대: 공군 38전투비행전대(063-470-2026)</p>	<p>○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을 군사활동구역으로 설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군사시설구)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상사격 훈련구역 등을 군사활동구역으로 반영 <p>○ 현재 의견은 법적 근거 부재, 지역주민의 협의 과정에 관한 내용</p>	일부 수용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이 명확치 않아 상세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제공자료의 검토 후 반영하겠음.	
		○ 향후 풍력발전단지 등 군사작전에 제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및 공유수면 점·사용시, 본 해양용도구역 결정 협의와는 별개로 반드시 관할부대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풍력발전단지 등 군사작전 지역내 시설물 설치 및 공유수면 점·사용시 관할부대와 사전 협의 하도록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겠음.	직접 관련 없음
	전라북도 해양 항만과	○ 에너지개발구역에 「서남권 해상 풍력 집적화단지」 반영 요청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 고시(2021.12.16.) ※ 사업명: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 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지도 참조) ※ 설비용량/계통전압: 2,400MW/345kV  〈서남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위치도〉	○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반영 ※ 전북도 해양항만과 자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문,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요	수용

부록 7 : 전북 지역위원회 운영 결과

□ 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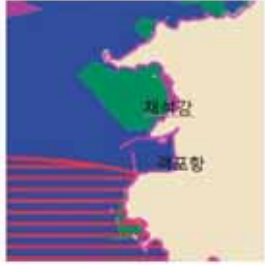

- 기간 : 2022. 5. 2.(월) ~ 5. 6.(수)
- 위원 : 전북 해양공간관리지원위원회 위원 14명(위원장 도지사님)
- 안건 :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심의
- 방법 : 서면심의

□ 심의 결과

- 참여위원 : 14명(전원 참여)
- 심의결과 : 가결*(동의 14명)
 - *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회의)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전북도 추가의견
 - 가. 전라북도 군사활동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총 5,265.36km² 중 3,381.68km²)로 전국에서 가장 넓게 지정됨
 - 공군, 해군, 해경 사격장 등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해당 공간 축소 조정 필요
 - 나.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위치가 전라남도해역에 일부 중첩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상생 방안 마련
 - 해양공간 관리계획이 해상경계 구분 없이 수립하도록 시·도간 협의되었으므로,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동일하게 반영 필요

부록 8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결과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제출 의견 및 검토결과

번호	구분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고
1	환경부	○ 어업활동보호구역(격포항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관리코드(FH-520110-04) 중 채석강 일원은 경관이 우수한 국립공원 및 국가지질공원으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변경 지정 필요	○ 채석강 일원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반영하였으나, 일부 격포항 국가어항 구역과 중첩되는 구역에 한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반영  〈격포항 주변 용도구역 지정 현황〉	미수용
		○ 변산반도 국립공원구역내 하섬 일원 갯벌은 최근 5년간 조개채취 등 수중활동시 15건의 고립·익사 사고가 발생, 안전관리구역으로 중복 지정·관리 필요	○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용도구역 지정 반영  〈하섬 주변 안전관리구역 지정〉	수용
2	민간위원	○ 에너지개발구역, 특히 해상풍력단지 지정은 지역 어민들과의 협력, 인근 통항 선박과 관련한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관광, 고압전류에 의한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해상풍력단지의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은 주민수용성, 환경영향성 검토 후에 지정하도록 시행 중.	기반영
	민간위원	○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시행 바람.	○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시행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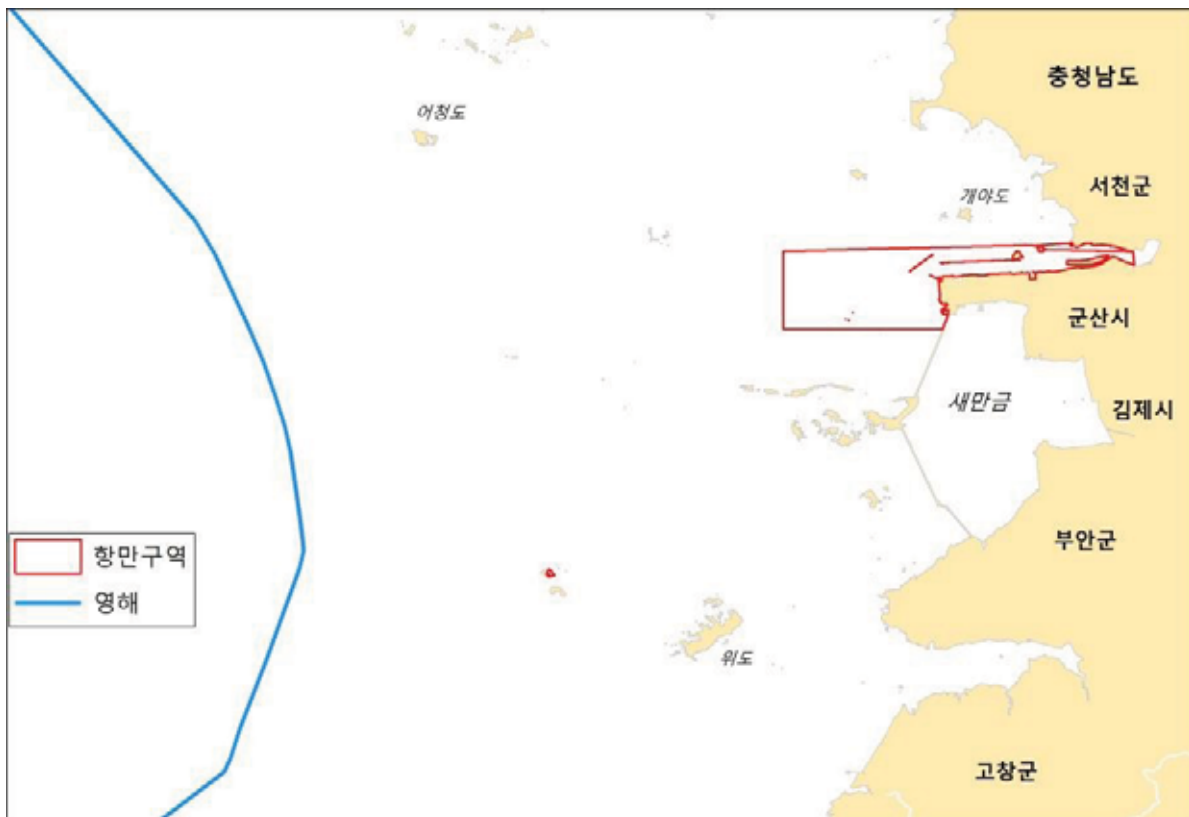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설명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계획설명서

1. 해양공간관리계획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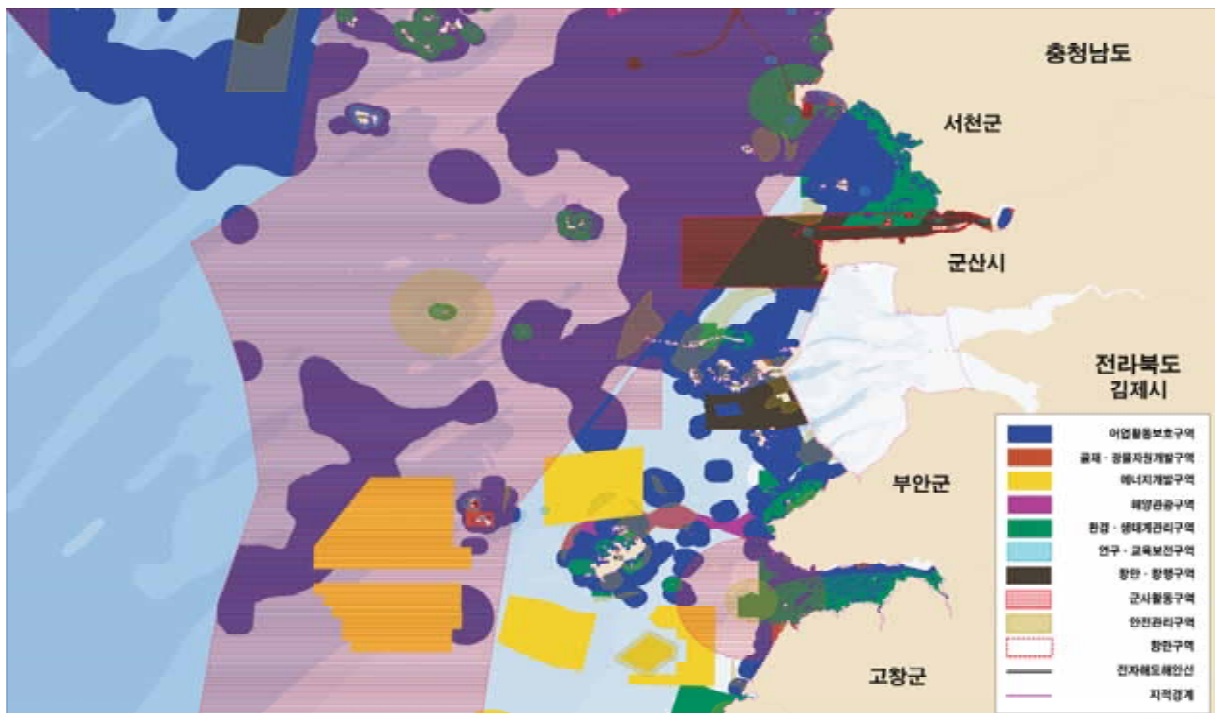
○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5,265.36km²(항만구역 174.79km², 항만구역 외 5,090.57km²)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범위는 해양용도구역을 효율적으로 표기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2. 해양용도구역 결정(변경) 설명서

구 분		면적(km ²)	비율(%)	
합 계		5,265.36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1,850.47	35.14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9.64	0.18	
	에너지개발구역	523.61	9.94	
	해양관광구역	27.42	0.52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46.71	2.79	
	항만·항행구역	224.26	4.26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10.56	0.20
		군사활동구역	3,381.68	64.23
		안전관리구역	334.24	6.35
		(중복*)	(1,796.71)	(34.12)
	소계	4,711.88	89.49	
유보 해역		553.48	1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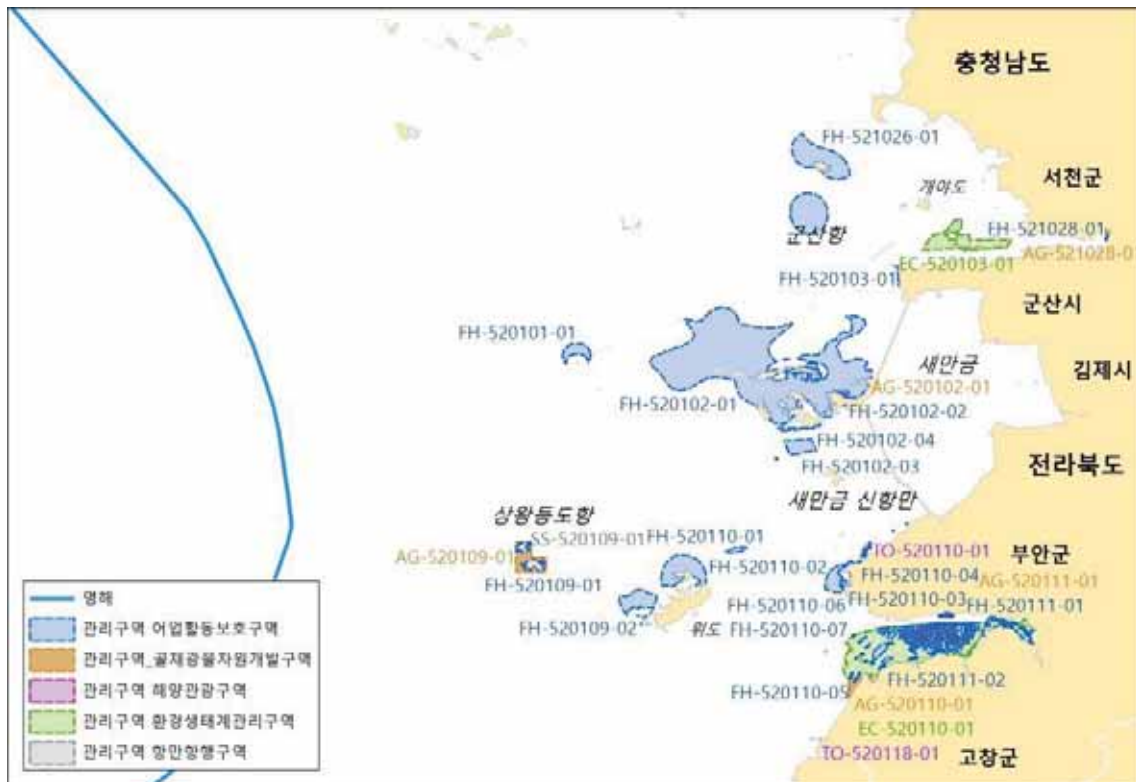


<전북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3.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설명서

○ 해양용도구역 내 관리구역 : 30개소

- 어업활동보호구역(20개소),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5개소), 해양관광구역(2개소), 환경·생태계관리구역(2개소), 항만·항행구역(1개소)



<전북 해양용도구역 내 관리구역 현황>

구 분		면적 (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어업활동 보호구역	FH-520101-01	3.69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함
	FH-520102-01	138.43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 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함
	FH-520102-02	0.36	골재광물 (광업권)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광업권(고령토)이 존재함
	FH-520102-03	5.61	항만항행 (신항만구역)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신항만구역이 존재함
	FH-520102-04	0.13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해양보호생물(흰발농게)의 서식지가 존재함
	FH-520103-01	0.27	항만항행 (무역항)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무역항(군산항)이 존재함
	FH-520109-01	1.03	골재광물 (채굴권) 항만항행 (연안항)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③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연안항(상왕등도)이 존재하며, 채굴권(철광)이 존재함
	FH-520109-02	6.68	해양관광 (낚시활동) 환경생태 (특정도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하며, 특정도서(내조도, 외조도)가 존재함
	FH-520110-01	12.29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국가어항(위도항)이 존재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함
	FH-520110-02	4.11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 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함
	FH-520110-03	0.65	해양관광 (마리나예정 구역)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국가어항(격포항)이 존재하며, 양식 및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리나예정구역(격포마리나)이 존재함
	FH-520110-04	1.50	환경생태 (국립공원)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 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변산반도국립공원)이 존재하며 낚시활동이 활발함
	FH-520110-05	0.12	골재광물 (채굴권)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석, 고령토)이 존재함
	FH-520110-06	0.35	해양관광 (낚시활동) 항만항행 (통항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 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하며 선박의 통항이 많음

구 분		면적 (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FH-520110-07	0.01	해양관광 (마리나예정 구역)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리나예정구역(공항마리나)이 존재함
	FH-520110-08	0.07	해양관광 (뉘시잔교)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뉘시잔교가 존재함
	FH-520111-01	0.43	골재광물 (채굴권)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고령토)이 존재함
	FH-520111-02	15.46	환경생태 (습지보호지역)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어항이 존재하며,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습지보호지역(고창갯벌)이 존재함
	FH-521026-01	30.53	해양관광 (뉘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뉘시활동이 활발함
	FH-521028-01	0.12	골재광물 (채굴권)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석)이 존재함
골재·광물 자원개발 구역	AG-520102-01	0.78	어업활동 (양식장)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5085, 허가 기간 : 2005.11.22.. ~ 2025.11.21.) 골재·광물자원개발구 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AG-520109-01	5.80	어업활동 (어촌정주어항)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철광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8941, 허가 기간 : 2010.10.07.. ~ 2030.10.06.)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8942, 허가 기간 : 2010.10.07.. ~ 2030.10.06.)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8940, 허가 기간 : 2010.10.07.. ~ 2030.10.06.)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어촌정주어항이 존재하며,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AG-520110-01	2.12	어업활동 (양식장) 환경생태 (습지보호지역)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규석, 고령토의 채굴권 설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67373, 허가 기간 : 2019.02.01. ~ 2039.01.31.)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일부 습지보호 지역이 존재함
	AG-520111-01	0.56	어업활동 (양식장)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176, 허가 기간 : 2015.06.16. ~ 2035.06.15.)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구분		면적 (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AG-521028-01	0.40	어업활동 (양식장)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규석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8924, 허가 기간 : 2010.09.30. ~ 2030.09.29.)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해양관광 구역	TO-520110-01	0.07	환경생태 (국립공원)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격포해수욕장이 존재함 <input type="checkbox"/>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존재함
	TO-520118-01	0.01	어업활동 (국가어항)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구시포해수욕장이 존재함 <input type="checkbox"/> 국가어항(구시포항)이 존재함
환경·생태 관리구역	EC-520103-01	12.92	항만항행 (무역항)	①환경생태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습지보호지역(서천갯벌)이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무역항(군산항)이 존재함
	EC-520110-01	51.77	어업활동 (양식장)	①환경생태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습지보호지역(고창갯벌)이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항만항행	SS-520109-01	0.25	골재광물 (채굴권)	①항만항행 ②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연안항(상왕등도항)이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철광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78941, 허가 기간 : 2010.10.07. ~ 2030.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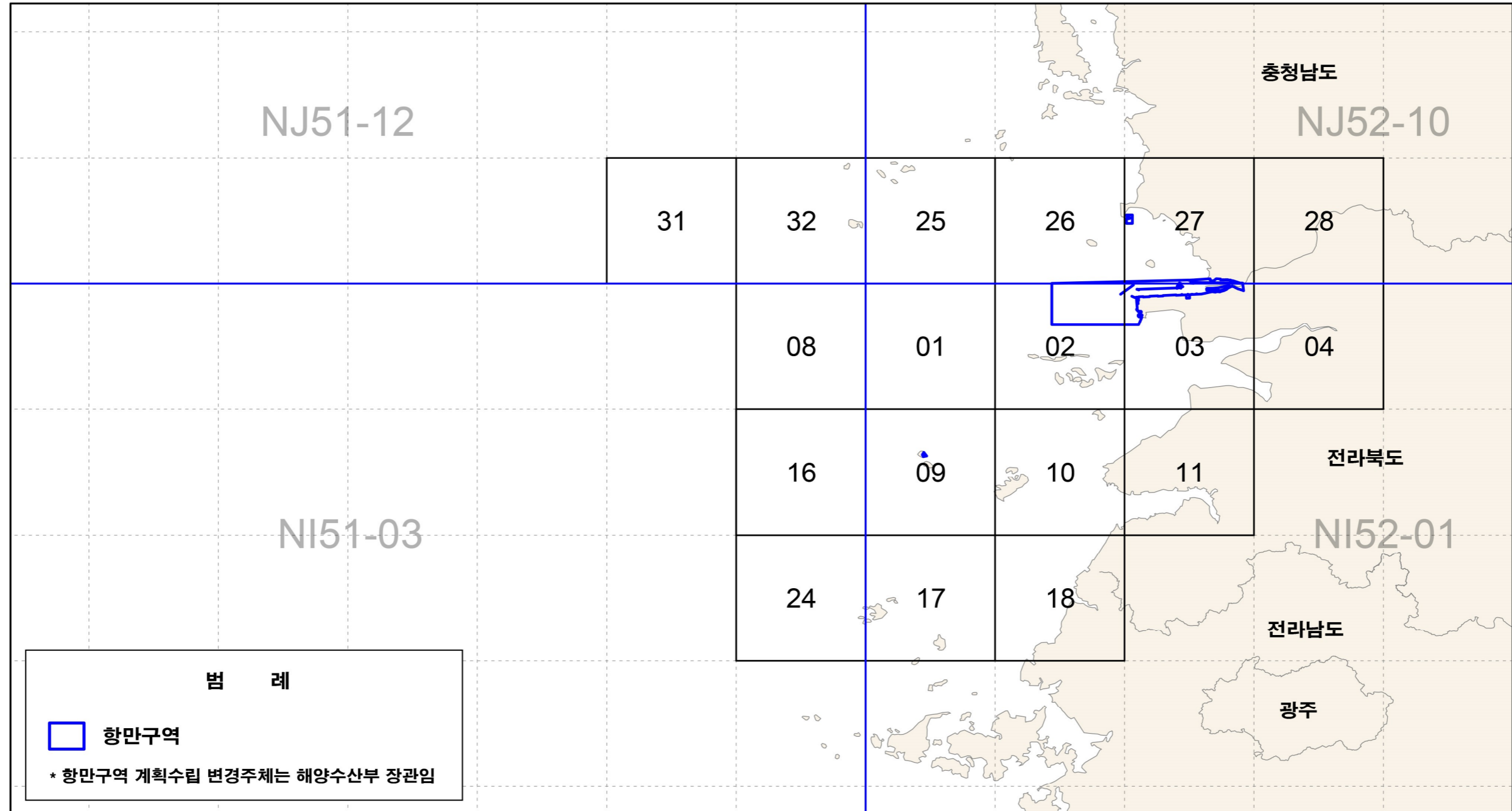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도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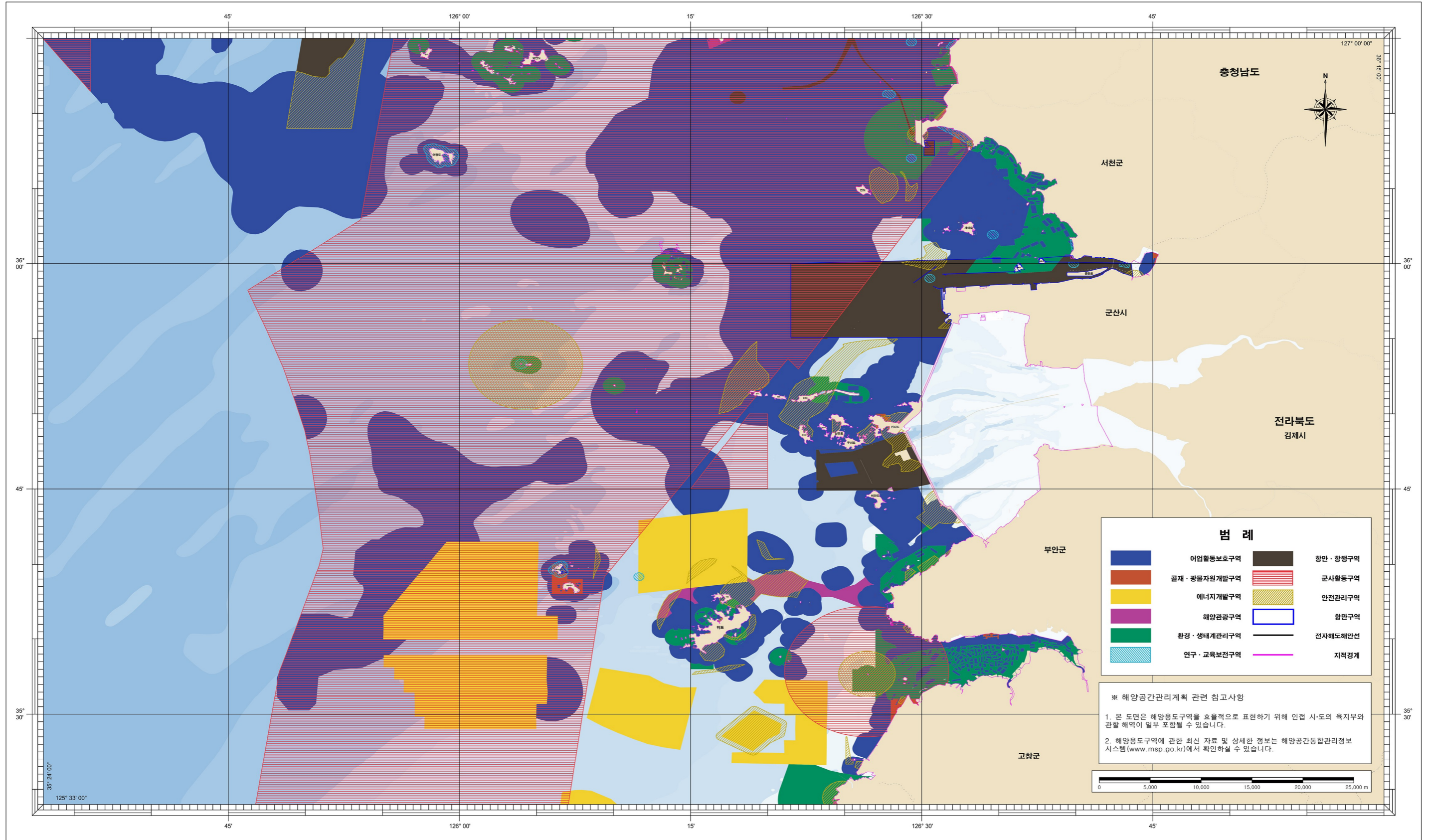
전북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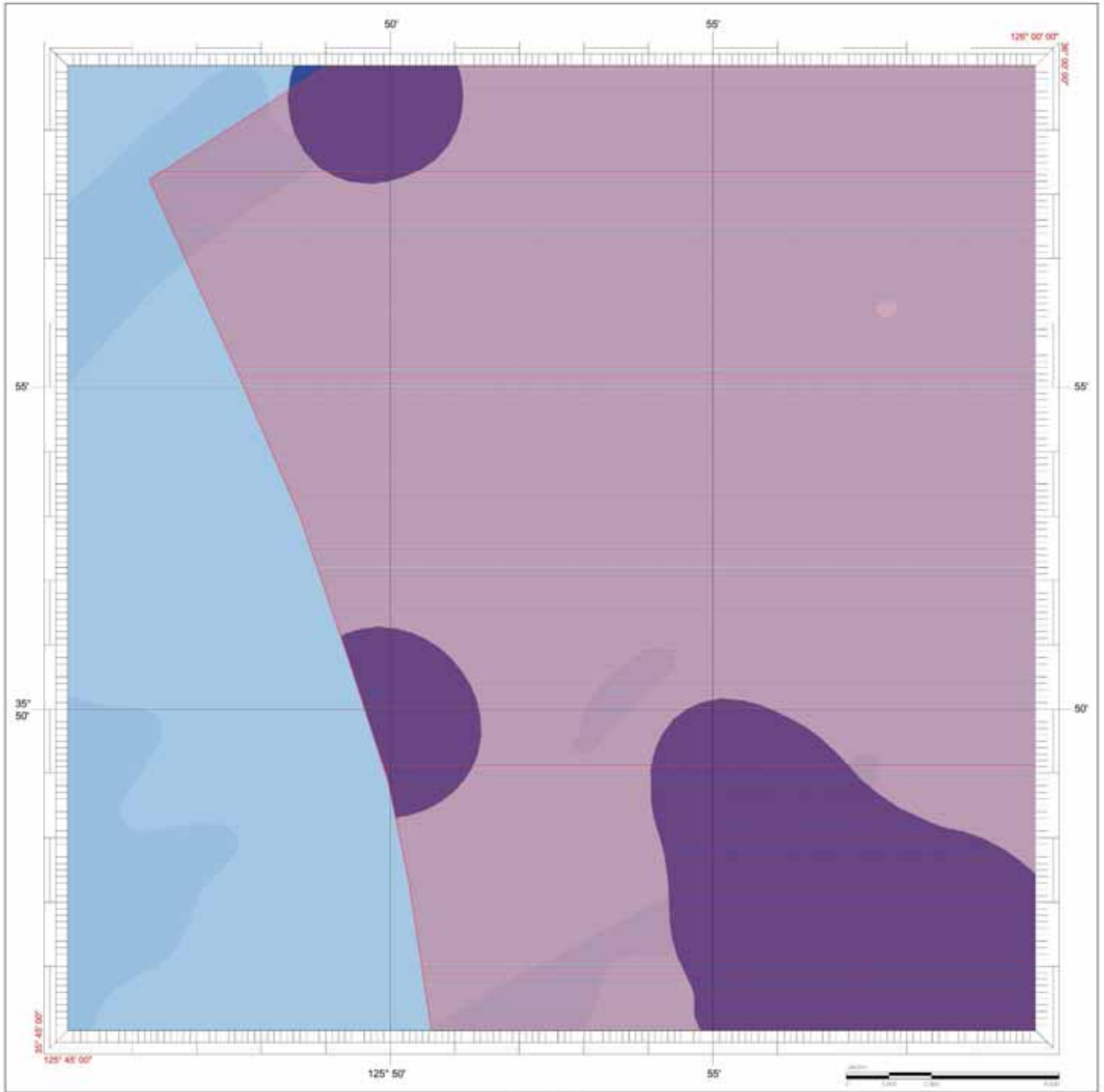
※ 해양공간관리계획 관련 참고사항

1. 본 도면은 해양용도구역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 해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최신 자료 및 상세한 정보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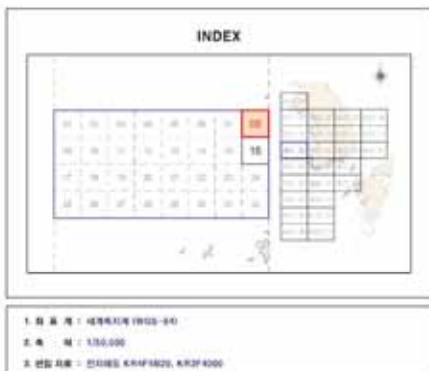


해양용도구역



범례

[Blue Box]	연안특별관리구역
[Orange Box]	북서-남동방향관리구역
[Yellow Box]	북서-남동방향관리구역
[Purple Box]	북서-남동방향관리구역
[Green Box]	북서-남동방향관리구역
[Light Blue Box]	연안-해양관리구역
[Dark Blue Box]	연안-해양관리구역
[Pink Box]	연안-해양관리구역
[Light Purple Box]	연안-해양관리구역
[Dark Purple Box]	연안-해양관리구역
[Black Line]	연안-해양관리구역
[Red Line]	연안-해양관리구역
[Dashed Line]	연안-해양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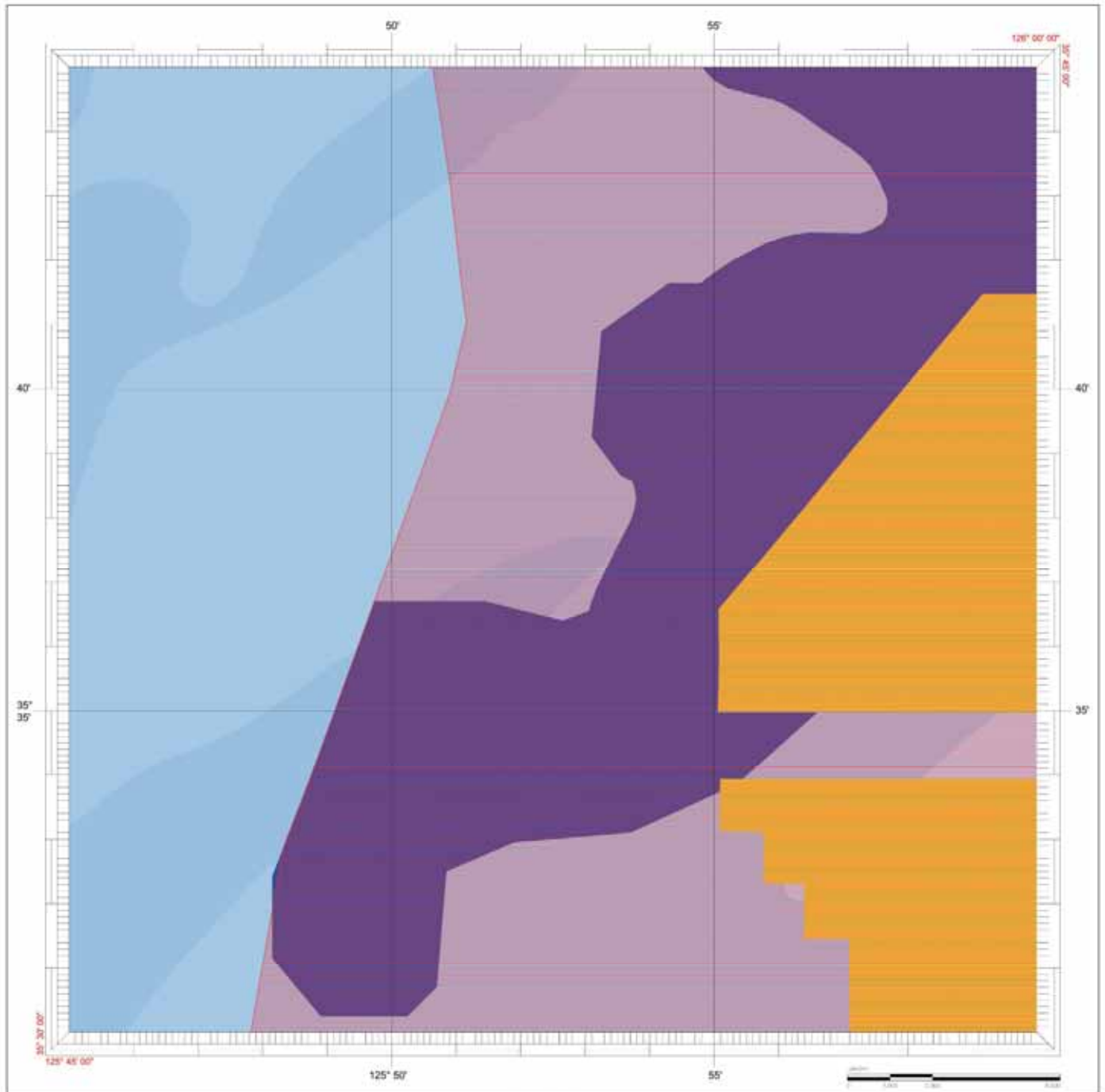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연안특별관리구역	북서-남동방향관리구역	연안-해양관리구역	연안-해양관리구역	연안-해양관리구역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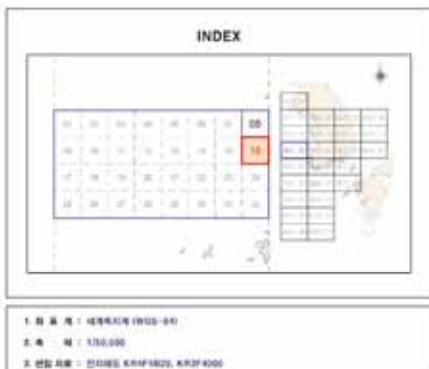
해양수산부(해양수산정책기획과)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도면입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정책기획과)는 제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해양수산정책기획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용도구역



범례

[Blue]	연안해양보호구역
[Orange]	북서-남동방향해양구역
[Yellow]	북서-남동방향해양구역
[Purple]	북서-남동방향해양구역
[Green]	북서-남동방향해양구역
[Light Blue]	연안-해양보호구역
[Dark Blue]	연안-해양보호구역
[Pink]	연안-해양보호구역
[Light Green]	연안-해양보호구역
[Light Purple]	연안-해양보호구역
[Black]	연안-해양보호구역
[Red]	연안-해양보호구역
[Dashed]	연안-해양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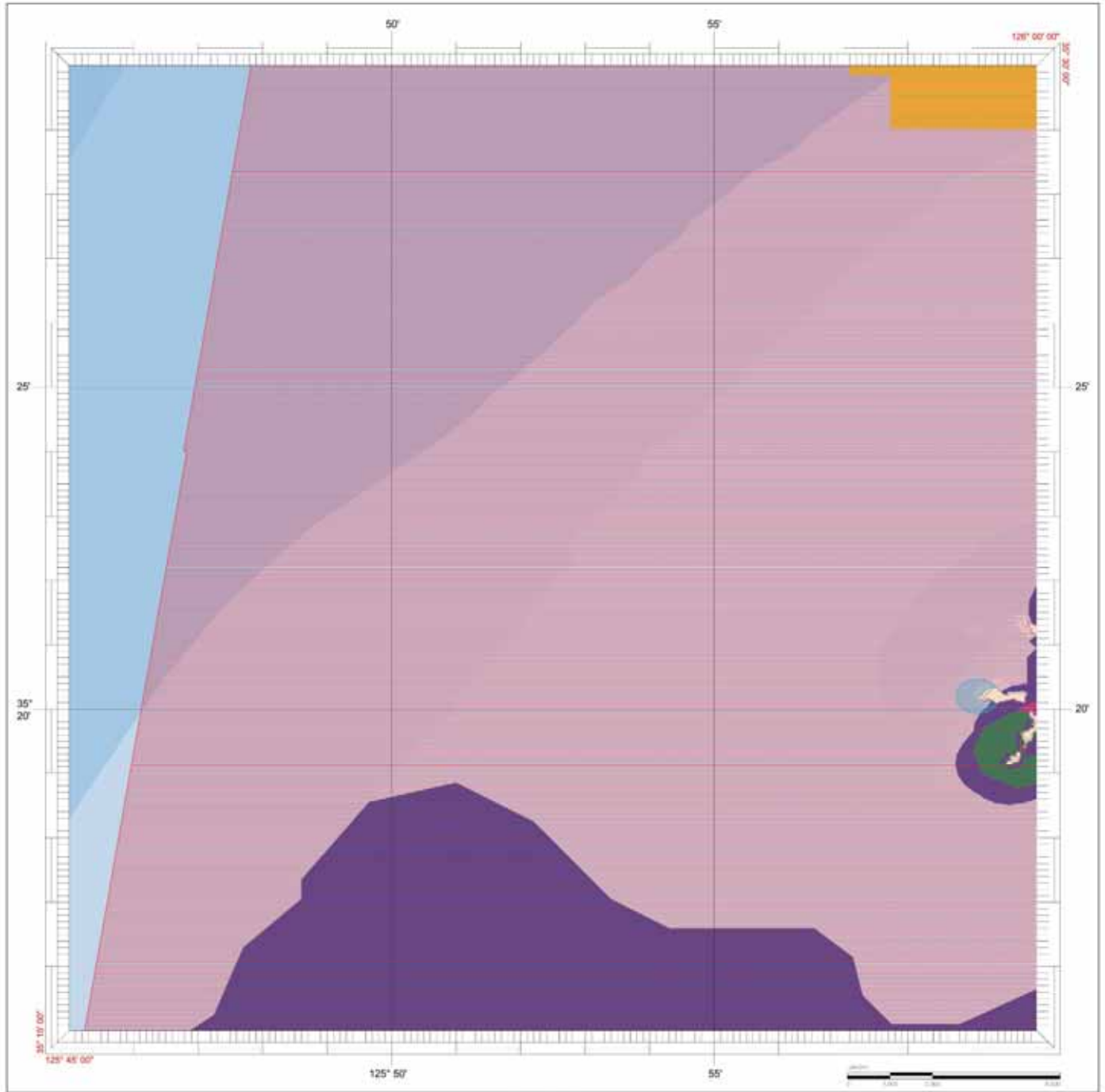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구역명	면적(㎡)	주요용도	비고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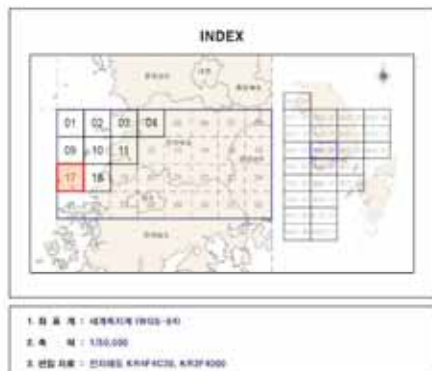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도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작한 도면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후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해양용도구역의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후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양용도구역



범례

	연안특별관리구역
	북서-남동방향관리구역
	북서-남동방향관리구역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관리구역
	연안-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구역
	연안-해양관광구역
	연안-해양관광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관리경계
	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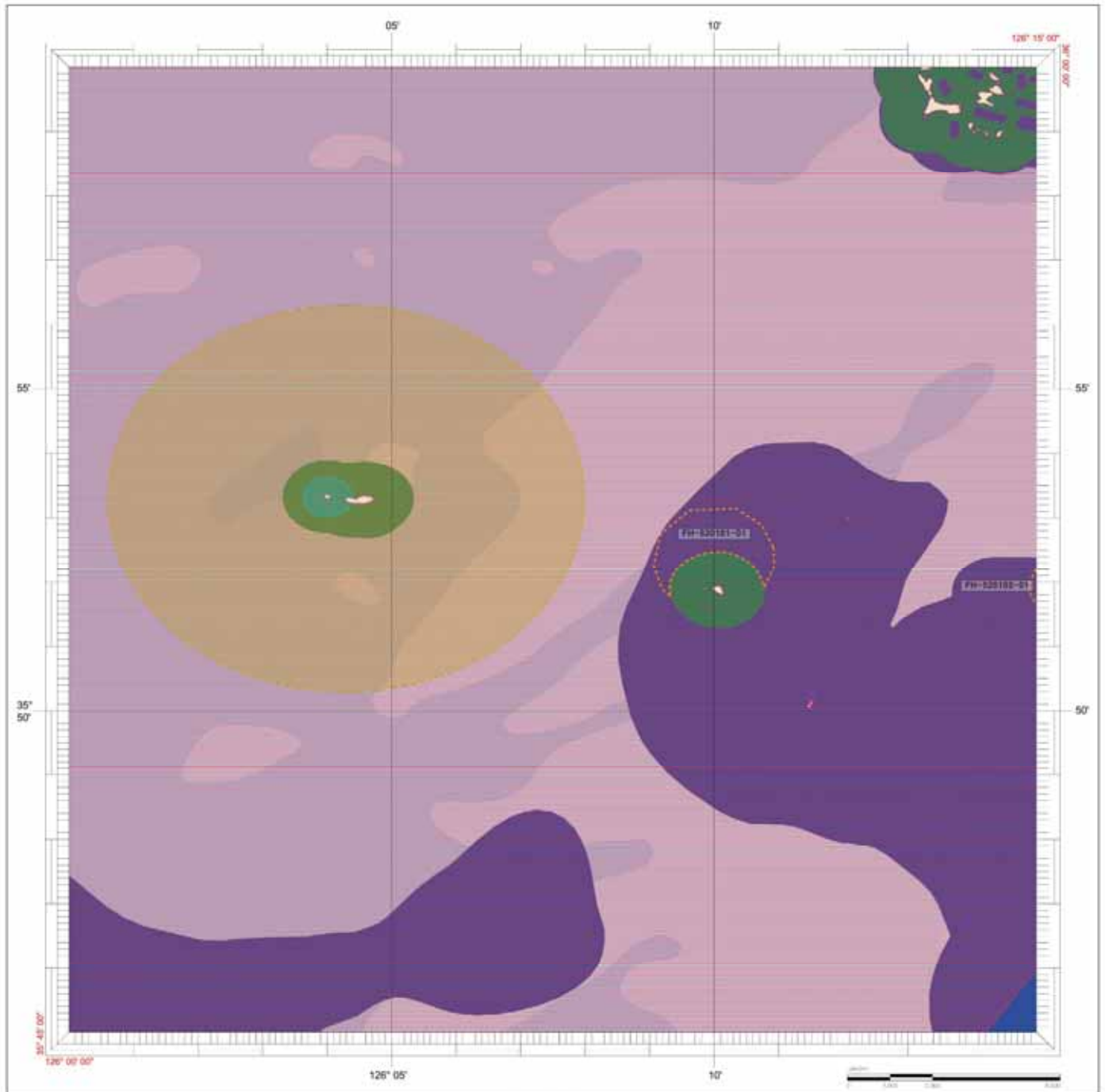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구역명	면적(㎡)	면적(ha)	주요목적	비고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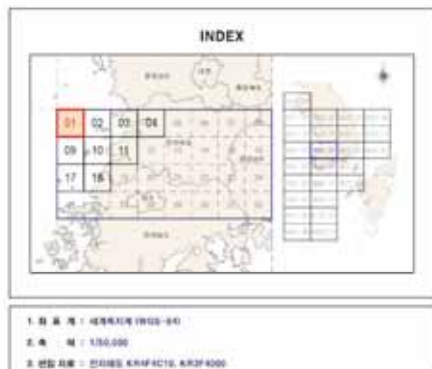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도면입니다.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당에서 추출된 해안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도상의 해안선의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범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양용도구역



범례

	연안특별관리구역
	북서 연안특별관리구역
	북서 연안관리구역
	북서 연안관리구역
	북서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 관리관리구역
	연안 관리구역
	연안 관리구역
	연안 관리구역
	연안관리선
	관리선
	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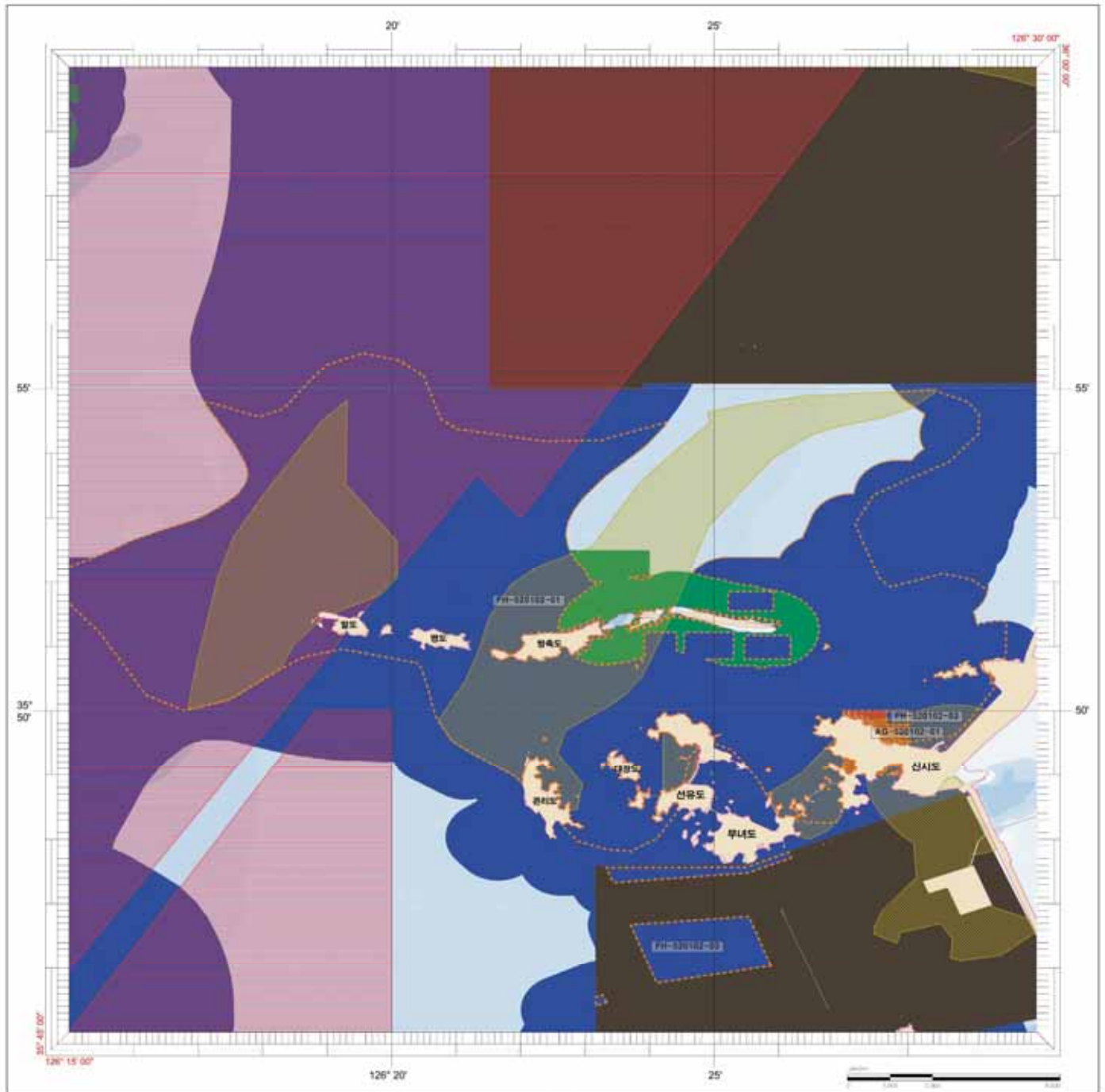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연안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연안특별관리구역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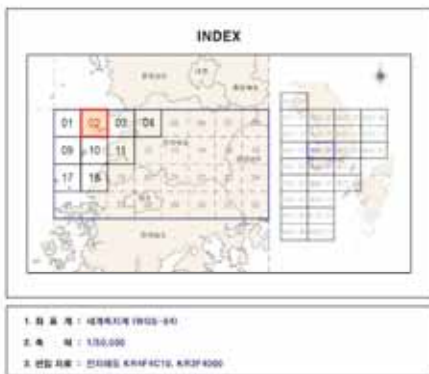
해양용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용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적용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당에서 우측은 해안선과 일치하였으나, 좌측은 지적도의 해안선과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적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범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양용도구역



범례

	연안해양용도구역
	북서 연안해양용도구역
	북서 연안해양용도구역
	해안해양용도구역
	해양해양용도구역
	연안 해양해양용도구역
	해양 해양용도구역
	연안 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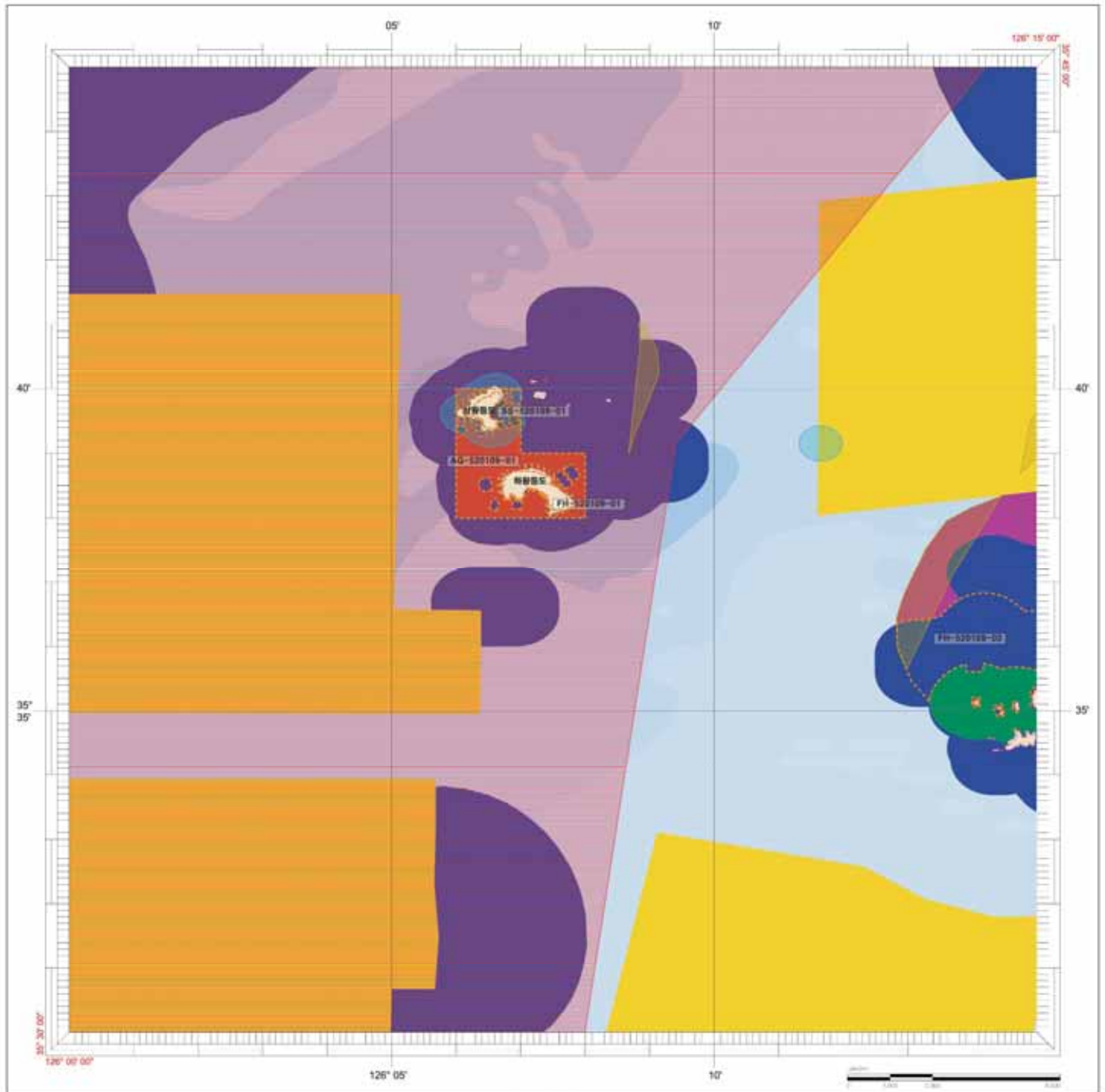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번호	면적(㎡)	종류	관리종류	주요내용	비고
1	PH-20102-13	1,234,567	해양	해양해양용도구역	해양해양용도구역	
2	AD-20102-11	876,543	연안	연안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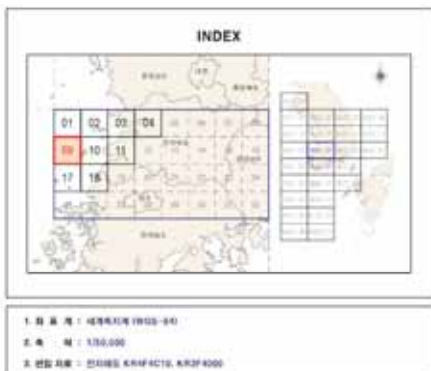
해양해양용도구역은 해양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해양용도구역 상 해양해양용도구역은 지역별을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당에서 후술한 제한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제한선의 일치여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해양용도구역의 범위가 제한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양용도구역



범례

Blue	연안해양용도구역
Orange	부서 해양해양용도구역
Yellow	해상해양용도구역
Purple	해안해양용도구역
Green	별도 해양해양용도구역
Light Blue	간부 해양해양용도구역
Dark Blue	항만 해양용도구역
Pink	간척해양용도구역
Light Green	간척해양용도구역
Black	간척해양용도구역
Red	사적경계
Dashed	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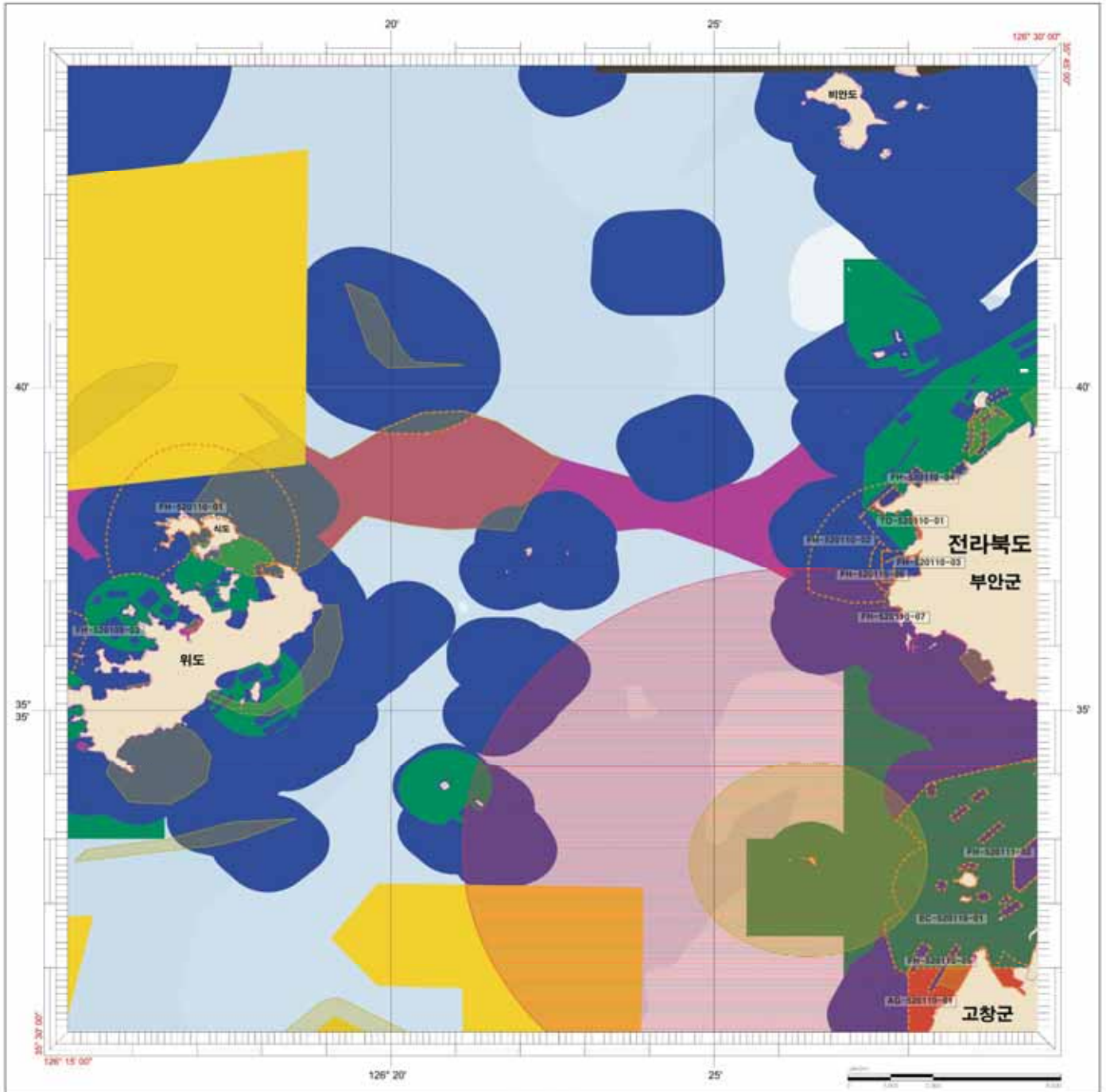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번호	면적(㎡)	종류	관리대상	주요내용	비고
14	AG-120104-01	1,000	해양용도	해양용도	해양용도	
15	PH-120104-01	1,000	해양용도	해양용도	해양용도	
16	AG-120104-02	1,000	해양용도	해양용도	해양용도	
17	PH-120104-02	1,000	해양용도	해양용도	해양용도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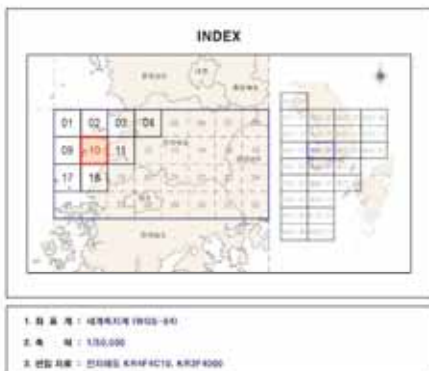
해양수산부(해양수산정책기획과)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도면입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정책기획과)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해당에서 후술한 제한선과 일치하지 않는 관측도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범위가 제한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양용도구역



범례

- 어업활동용도구역
- 복합·선형시설개발구역
- 해안개발용도구역
- 해안관광용도구역
- 분지·해양레저용도구역
- 갯두·갯벌개발용도구역
- 갯만·갯벌구역
- 갯내습지구역
- 갯외습지구역
- 갯외습지경계선
- 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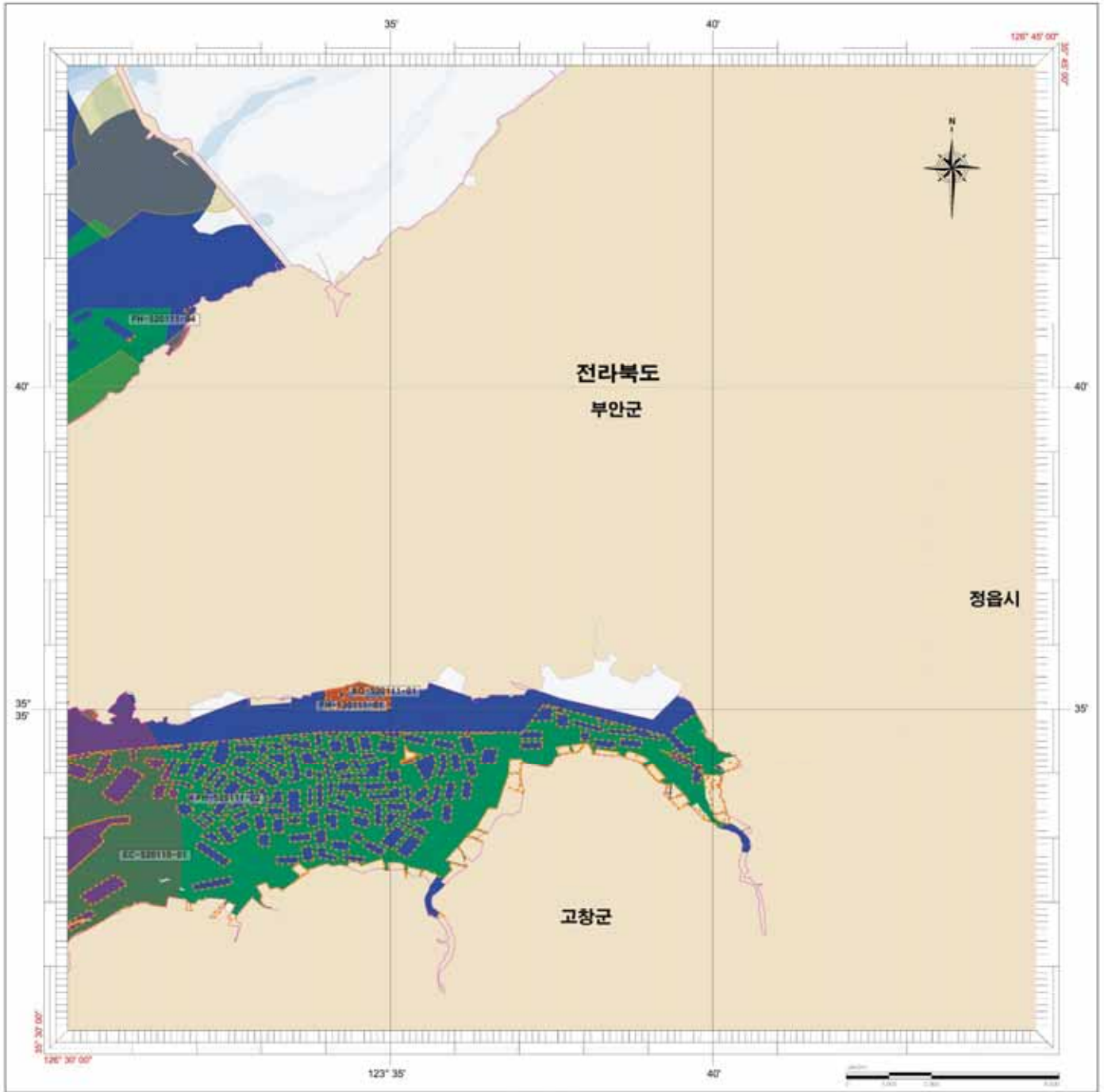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번호	면적(㎡)	종류	관리대상	관리내용	비고
1	01	1,234	어업활동	어업활동용도구역	어업활동용도구역	
2	02	5,678	복합·선형시설개발	복합·선형시설개발용도구역	복합·선형시설개발용도구역	
3	03	9,012	해안개발	해안개발용도구역	해안개발용도구역	
4	04	3,456	해안관광	해안관광용도구역	해안관광용도구역	
5	05	7,890	분지·해양레저	분지·해양레저용도구역	분지·해양레저용도구역	
6	06	2,345	갯두·갯벌개발	갯두·갯벌개발용도구역	갯두·갯벌개발용도구역	
7	07	6,789	갯만·갯벌	갯만·갯벌구역	갯만·갯벌구역	
8	08	1,012	갯내습지	갯내습지구역	갯내습지구역	
9	09	4,567	갯외습지	갯외습지구역	갯외습지구역	
10	10	8,901	갯외습지경계선	갯외습지경계선	갯외습지경계선	
11	11	3,210	관리구역	관리구역	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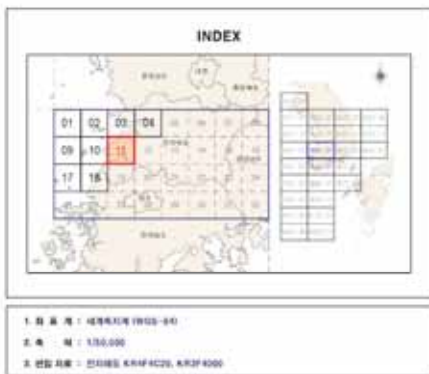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적분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당에서 후출된 해안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적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양용도구역



범례

[Blue]	연안해양용도구역
[Orange]	북해안해양용도구역
[Yellow]	해안해양용도구역
[Purple]	내안해양용도구역
[Green]	본안 해양용도구역
[Light Blue]	강우·교역해양용도구역
[Brown]	습안·강변구역
[Pink]	강내해양용도구역
[Light Green]	강원내해양용도구역
[Black]	경계선(국경선)
[Red]	지방경계
[Dashed]	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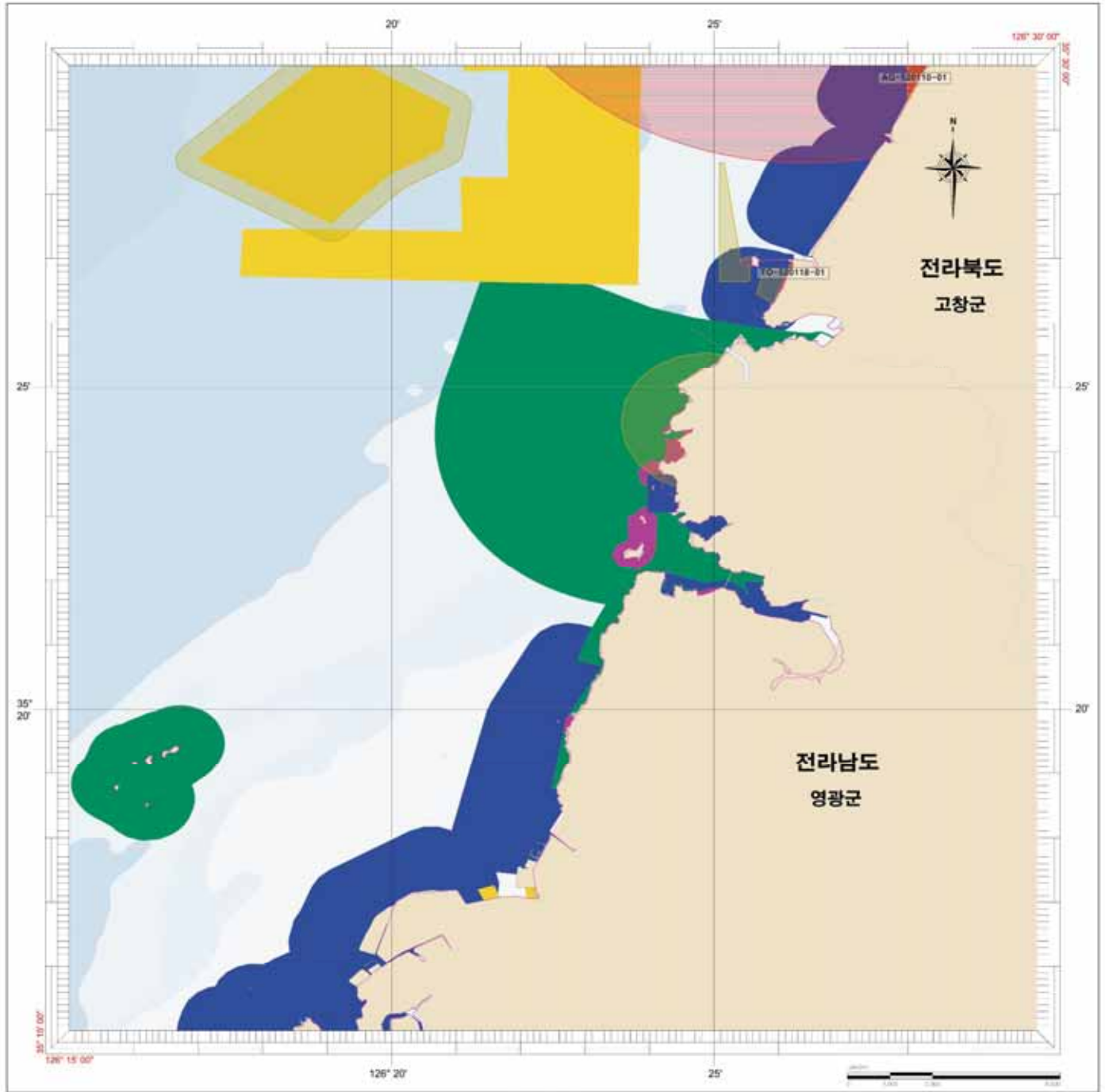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구역	면적(㎡)	종류	관리구역명	구체명	비고
연안해양용도구역	123° 35' 00" ~ 123° 40' 00" E, 35° 30' 00" ~ 35° 40' 00" N	1,234,567	연안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북해안해양용도구역	123° 35' 00" ~ 123° 40' 00" E, 35° 30' 00" ~ 35° 35' 00" N	1,234,567	북해안해양용도구역	북해안해양용도구역	북해안해양용도구역	
해안해양용도구역	123° 35' 00" ~ 123° 40' 00" E, 35° 35' 00" ~ 35° 40' 00" N	1,234,567	해안해양용도구역	해안해양용도구역	해안해양용도구역	
내안해양용도구역	123° 35' 00" ~ 123° 40' 00" E, 35° 40' 00" ~ 35° 45' 00" N	1,234,567	내안해양용도구역	내안해양용도구역	내안해양용도구역	
본안 해양용도구역	123° 35' 00" ~ 123° 40' 00" E, 35° 45' 00" ~ 35° 50' 00" N	1,234,567	본안 해양용도구역	본안 해양용도구역	본안 해양용도구역	
강우·교역해양용도구역	123° 35' 00" ~ 123° 40' 00" E, 35° 50' 00" ~ 35° 55' 00" N	1,234,567	강우·교역해양용도구역	강우·교역해양용도구역	강우·교역해양용도구역	
습안·강변구역	123° 35' 00" ~ 123° 40' 00" E, 35° 55' 00" ~ 35° 58' 00" N	1,234,567	습안·강변구역	습안·강변구역	습안·강변구역	
강내해양용도구역	123° 35' 00" ~ 123° 40' 00" E, 35° 58' 00" ~ 35° 59' 00" N	1,234,567	강내해양용도구역	강내해양용도구역	강내해양용도구역	
강원내해양용도구역	123° 35' 00" ~ 123° 40' 00" E, 35° 59' 00" ~ 36° 00' 00" N	1,234,567	강원내해양용도구역	강원내해양용도구역	강원내해양용도구역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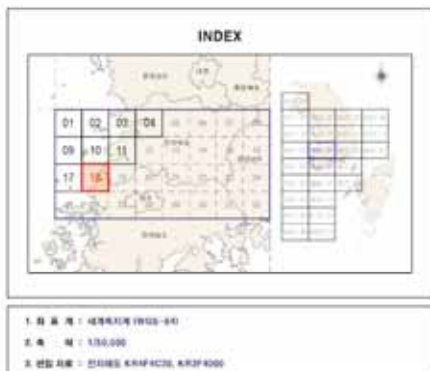
해양용도구역은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당에서 후술한 제한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제한선의 성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성격과 제한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양용도구역



범례

	연안해양용도구역
	북서 연안해양용도구역
	북서연안해양용도구역
	해안해양용도구역
	본지 연안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해양-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연안해양용도구역
	지역경계
	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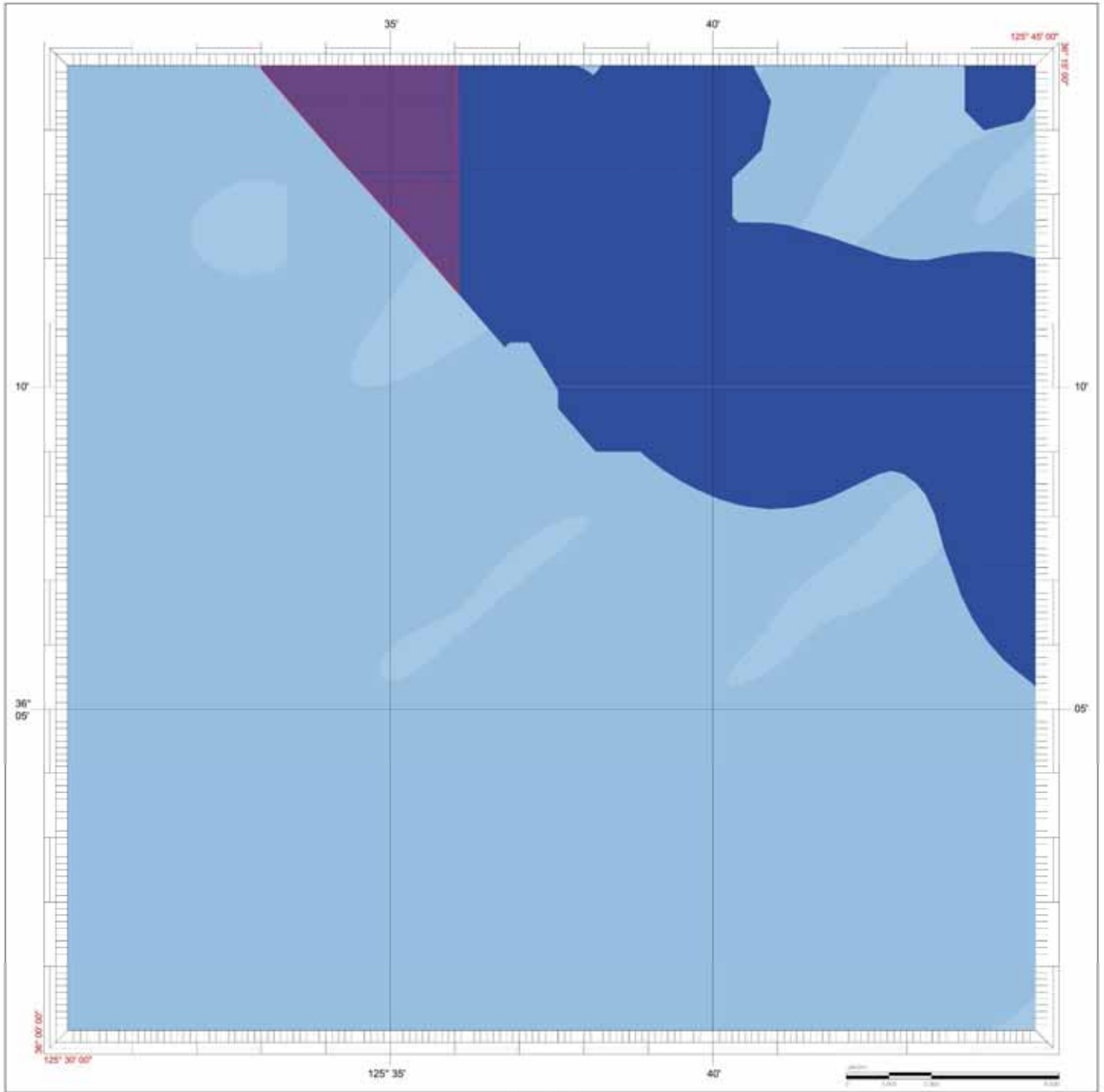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구역명	면적(㎡)	관리구역종류	관리구역상세정보	공적명명	비고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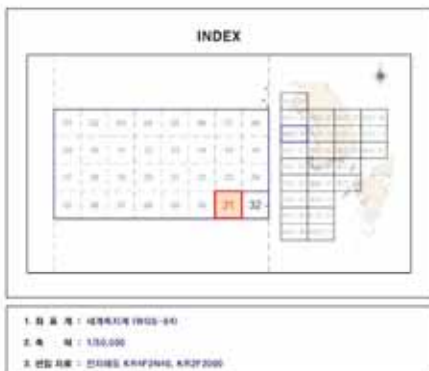
해양용도구역은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용도구역은 지역별용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당에서 후술한 제한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제한선의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명칭과 제한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양용도구역



범례

[Dark Blue]	연안해양용도구역
[Orange]	북서-남동방향해양용도구역
[Yellow]	북서-남동방향해양용도구역
[Purple]	북서-남동방향해양용도구역
[Green]	북서-남동방향해양용도구역
[Light Blue]	연안-해양용도구역
[Dark Blue]	연안-해양용도구역
[Pink]	연안-해양용도구역
[Light Green]	연안-해양용도구역
[Light Blue]	연안-해양용도구역
[Black]	연안-해양용도구역
[Red]	연안-해양용도구역
[Dashed Line]	연안-해양용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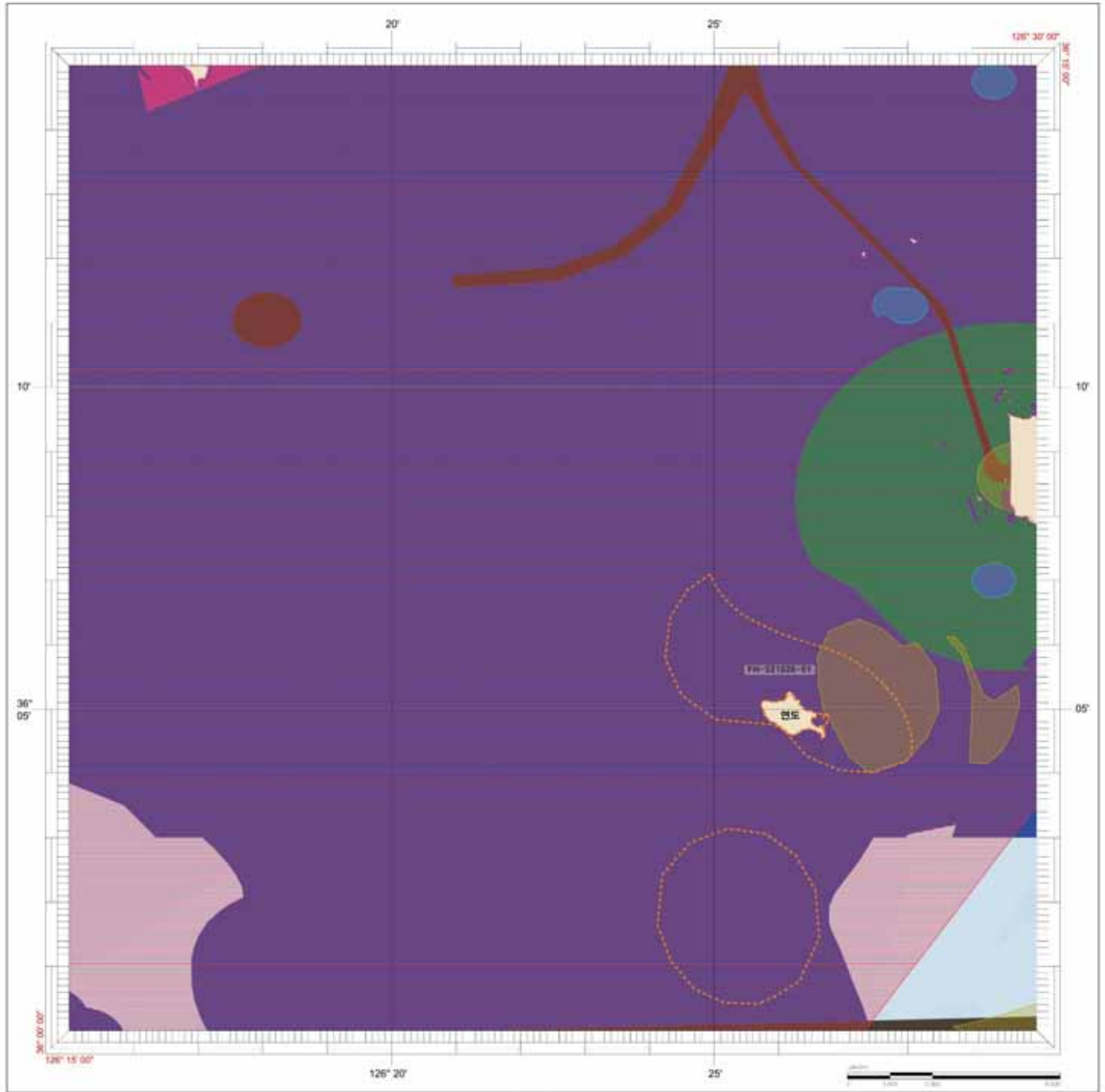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구역명	면적(㎡)	연면적(㎡)	주요용도	비고

***참고사항**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도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해양용도구역은 지적용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당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적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양용도구역



범례

	일반해양용도구역
	특수 해양이용해양구역
	해양자연유산구역
	해양관광구역
	해양문화유산구역
	해양과학연구구역
	해양생태구역
	해양생물구역
	해양문화유산구역
	경계선(국경선)
	시계경계
	관리구역

INDEX

1. 범례 : 해양용도구역 (NUO-NU)
 2. 축척 : 1:50,000
 3. 연도 : 2024년 KMAP2024, KR20200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구역명	면적(㎡)	관리구역종류	관리구역번호	관리구역설명	비고

* 참고사항

해양수산부(해양수산정책기획과)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도면입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정책기획과)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제작하였고, 해당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의 해안선의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적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범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